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7

현안분석

- 정부지출과 복지지출 수준의 국제 비교에 관한 일고
-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방안
- 추경편성에 대한 쟁점분석

정책토론 리포트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

정책연구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외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앞서가는 홍콩 세제(稅制) 외

정책흐름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외

재정통계

증여세 I 편

C · O · N · T · E · N · T · S

견두칼럼	2	경기를 살리려면 / 홍순영
연안분석	6	정부지출과 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에 관한 일고 / 박노욱
	22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방안 / 원중학
	38	추경편성에 대한 쟁점 분석 / 박형수
정책토론포트	55	「한국형 ETC」 도입타당성 검토
정책연구	80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 김형준·현진권
	82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 노영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86	앞서가는 홍콩 세제(稅制) 외
정책흐름	96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133	'05. 6월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37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재정통계	142	증여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51	집값 대책, 보유세제부터 바로잡아라 외

경기를 살리려면

홍순영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달 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에서 4%대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국책사업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규제완화와 기업도시 건설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외에도 내수 및 투자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경제정책을 확장 기조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은 결코 쓰지 않겠다던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보면서 정부와 정책에 대한 두 가지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게 된다. 첫째는,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정책은 왜, 그리고 언제 필요인가 하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시장은 완벽하지가 않다. 불완전한 정보, 외부성, 공공재 등 때문에 시장에는 결함이 존재한다. 이 같은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 때 정부 개입의 범위와 정도는 그 나라 경제의 성장단계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1960년대의 우리 경제와 같이 규모가 작고, 저성장 단계에 있으며, 축적된 자본이 없는 등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보다 직접적이고 깊숙한 시장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역량 및 정보의 양과 질에서 다른 경제주체들에 비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성숙단계에 이르면 정부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급격히 줄어든다. 민



간경제주체들이 많은 영역에서 역량과 정보의 우위를 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가설에서는 소위 '정책 무력성(policy ineffectiveness)'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부가 각종 경제변수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경제의 환경과 규모는 이미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특히 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는 정부가 정책으로 목표성장률을 정해 놓는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과 그 주체들이 이루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는 여전히 공공재 및 외부성의 존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 중소기업과 같이 역량과 정보획득에서 열위에 있는 부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정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는 분명하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다고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모든 투자에 나서고, 가계를 대신해서 모든 재화를 사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도 뒤따른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내서 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규제가 문제라면 규제를 제거해 주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문제라면 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경기를 살어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쏟아내는 말과 정책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의지와 행동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기를 살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시키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다. 자금부족이 문제라면 자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과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중에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는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다.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사실 경제주체들이 더 원하는 것은 경제논리만으로 경제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제시하려는 정부의 자세와, 경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행이다.

경제주체들의 투자 및 소비활동은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예상금리, 예상환율, 예상물가, 예상판매, 예상수익 등이 이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 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이와 같은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들의 활동은 달라진다. 그래서 정책운용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확실성, 시의성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금년과 같이 목표성장률을 5%로 발표했다가 갑자기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 경제주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되고, 이후 어떤 정책도 효과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통화정책, 물가정책, 환율정책 등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규모나 성장단계로 보았을 때 정부가 목표성장률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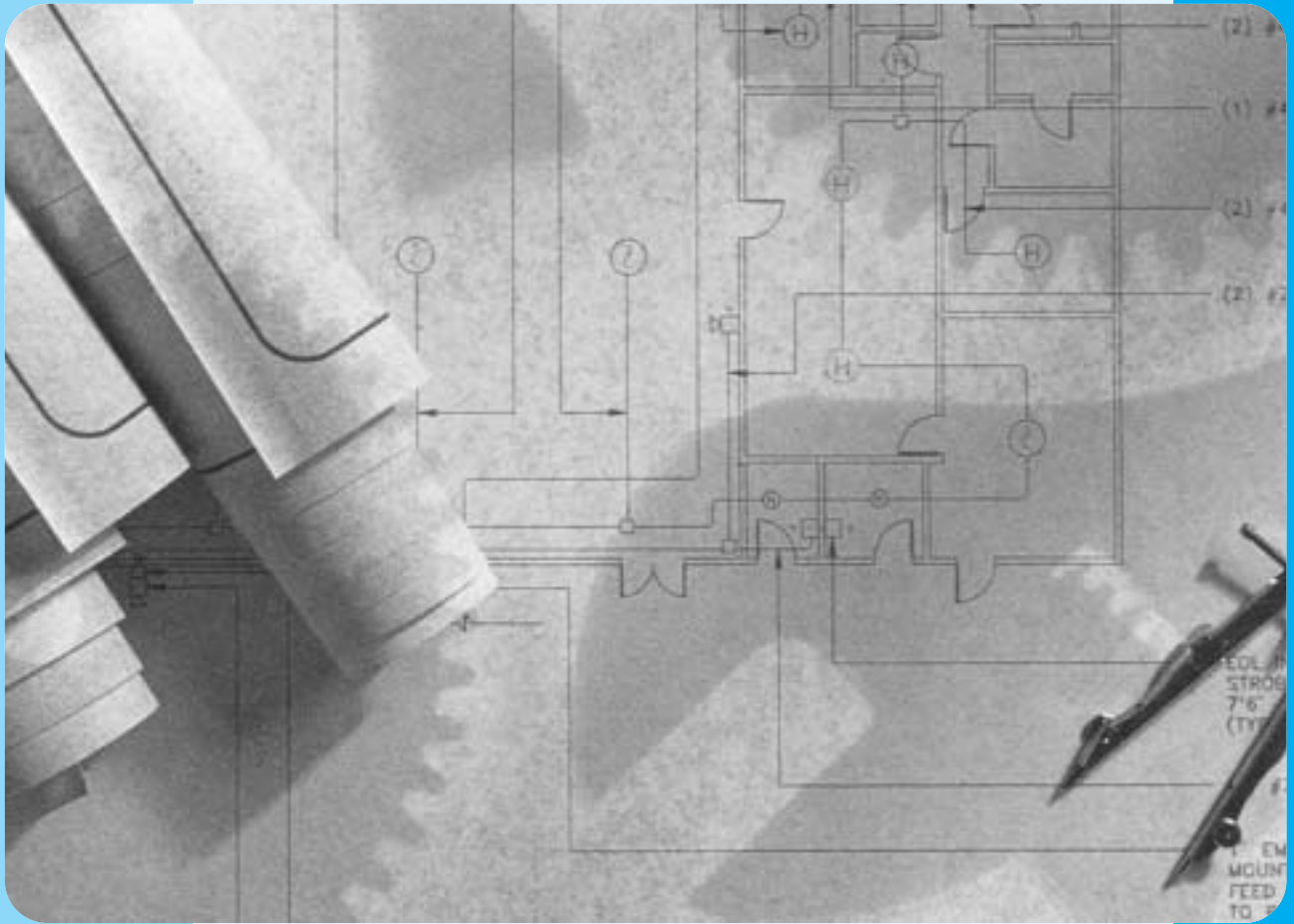
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각종 경제변수들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경기변동의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과 같이 환율이나 유가가 널뛰기 하듯이 급격히 오르거나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기업은 투자에 나설 수 없으며, 가계도 소비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정책은 또 시의성이 있어야 한다. 뒷북을 치는 정책은 경제주체에게 한탄만 안겨줄 뿐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말을 단정적으로 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된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등의 말들은 시장에 좌절과 불안감만을 증폭시켜 줄 뿐이다. 특히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정책과 시장의 불안정성이 크면 클수록 기업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경기를 살어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쏟아내는 말과 정책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의지와 행동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기를 살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시키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다시 말해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당당하고 활기차게 경쟁을 하며 뛰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저절로 활성화되는 길일 것이다. 



TEOL IN
STROB
7'6"
(TY
f.
EM
MOUNT
FEED
TO F

현안분석



정부지출과 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에 관한 일고

- 정치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비교 -

박 노 욱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방안

원 중 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추경편성에 대한 쟁점 분석

박 형 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지출과 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에 관한 일고

- 정치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비교 -



박 노 옥 전문연구위원(npark@kipf.re.kr)

I. 시작하는 말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에 진행중인 일련의 재정개혁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의 틀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영계획의 수립에서나, 정부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해지는 하향식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부지출의 규모나 부문별 적정 재정소요의 추산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정부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지, 특히 고령화에 대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비 지출의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10월에 발표한 '2002~200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경제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교육, 복지, 국방, 지방재정 분야는 정부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향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정부지출이 2004~2008년중 연평균 6.3% 증가하고, 경제사업 지출은 2.9%, 일반행정 분야는 2.0%에 그치는 반면, 교육 분야는 7.9%,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분야는 9.5%, 국방 분야는 9.9%, 지방재정지원 분야는 8.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서 가장 흔히 거론되는 것이 국제비교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정부지출 규모나 복지비 지출 비중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비교 자체가 적정 지출수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손쉬운 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제비교가 논의의 유용한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에 대한 중요한 논거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경제사업비에 치중되어 있으며 복지부문에는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OECD 평균치가 정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준거로 거론되어 왔다. 국제비교 자체가 적정 지출수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손쉬운 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제비교가 논의의 유용한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비교가 과연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어 왔지만 이론적으로 구체적인 점검을 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최근에 박형수(2005)의 연구에서는 국제비교시 국가간 재정통계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된 국제비교를 기술 통계치를 통해 보여준 바 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중 경제개발비 비중이 크고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이 낮다는 기존의 논의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통계의 일관성이라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국의 정부지출 규모나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에서의 국제비교는 국가간 소득수준과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이런 경제적·인구학적인 요인 자체를 제대로 고려한 분석은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각국의 재정지출 수준은 경제적인 변수뿐 아니라 정치제도의 영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정치경제학의 문제 인식과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경제 및 인구학적인 변수와 정치제도 변수를 모두 포함한 국제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주요 조세·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정치적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각국의 정치제도 특성이 조세·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최근의 비교정치경제학의 연구성과는 정치제도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존재함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재정지출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치제도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 중 많은 국가가 의원내각제인데, 이들 국가의 재정지출 수준이 인구구성이나 경제적 변수의 영향 이외에 의원내각제의 영향을 받았다면,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차이를 감안한 비교를 해야만 한다. 의원내각제라는 정치제도의 특성이 만들어 낸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비교를 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규모나 사회복지비 지출이 국제수준으로 볼 때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국제비교를 할 때의 암묵적인 가정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인구·사회적 특성은 물론 정치적인 특성까지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부지출이나 사회복지비 지출이 국제수준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저개발 국가나 독재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은 의미가 없듯이, 다른 나라의 경제·정치·사회·인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비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약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자료와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1990~1998년까지의 자료만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정치적·사회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수준과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은 국제 수준에 비해 낮으나, 정치적·사회적 변수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지출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국제 수준과의 격차가 상당히 감소한다. 특히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경우 그 격차가 확연히 감소한다. 단순 경제변수만 고려했을 경우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이 국제 수준에서 78%(5.8%포인트) 이상 작으나, 정치·사회적인 변수를 고려하면 16%(0.31%포인트)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각국의 정치·사회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이나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작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라는 정치제도와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특성들이 정부지출이나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지출 수준이 결정되는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이 단지 전문가나 관료들의 전문지식만을 기반으로 한 기능적인 최적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듯이, 다른 나라의 재정지출 수준도 다양한 경제·사회·정치·인구의 특성이 작용한 결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지출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에 대한 논의를 한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각국의 재정지출과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에 기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을 기능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이 단지 전문가나 관료들의 전문지식만을 기반으로 한 기능적인 최적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듯이, 다른 나라의 재정지출 수준도 다양한 경제·사회·정치·인구의 특성이 작용한 결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초하여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논한다. 부록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II. 정치제도와 재정지출과의 관계

미국의 저명한 재정학자인 Alan Blinder(1997)는 *Foreign Affairs*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재정정책이 너무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Alan Blinder는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정치적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당연시되고 있는 반면,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을 줄이려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다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왜 통화정책은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재정정책의 경우는 정치적 영향 아래 놓여 있는가? 여기에 대해 Alesina와 Tabellini(2004)는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을 결정할 여지가 작은 반면에, 재정정책을 통해서는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영향하에 두려고 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세운 바 있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을 통해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재정정책을 통해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가치가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이런 논의가 아니라도, 재정정책이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득실의 계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정치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이 정치제도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경제학 중에서도 가장 생산적인 분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발전이 시사하는 바를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제도가 정부지출의 규모나 사회복지비 지출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Persson and Tabellini(2004)의 연구결과를 이용하고자 한다. 정치제도는 사회에 흠어져 있는 유권자들

의원내각제하에서는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을 위한 지출이 확대될 경우 의회의 다수의 연합과 행정부가 동시에 투표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높은 세금과 정부지출로 인해 생기는 잉여 재원에 대한 통제권도 의회의 다수의 연합이 가지므로 높은 세금과 정부지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제하에서 광범위한 사회보장성 지출이 높을 가능성이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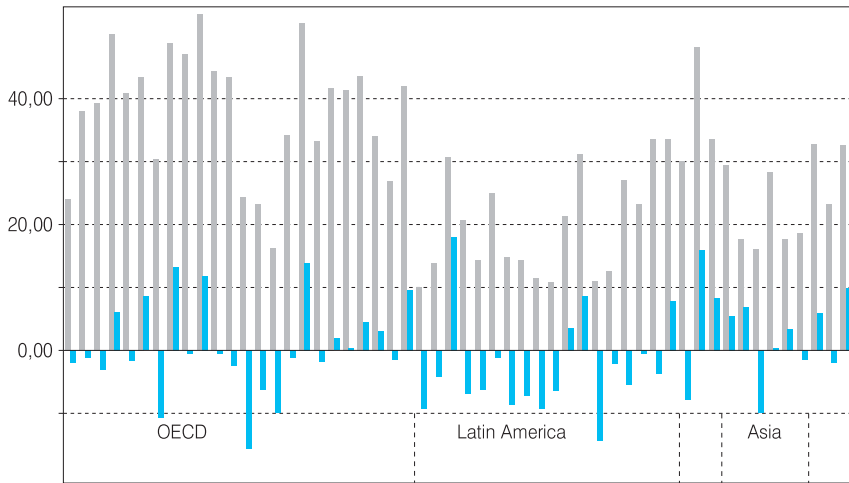
첫째는, 선거구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선거구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투표자 중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다수결제하에서는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소수의 결정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둘째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표자 수가 다수결제하에서 더욱 작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수결제하에서는 전국에서 약 25% 정도의 투표자의 지지를 얻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선거구 내에서 50%를 약간 상회하는 투표자의 지지를 얻는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 중에서 50%만 상회하면 되므로, 산술상으로 25%의 투표자의 지지만으로 의회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완전 비례대표제하에서는 50%의 투표자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하에서는 광범위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정지출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비례대표제하에서는 군소정당의 존립 가능성이 크므로, 연립정부의 가능성도 동시에 커진다. 연립정부하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만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또 나아가 연립정부하에서는 정부의 재원을 서로 소비하려는 문제(Common Pool)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높은 세금과 정부지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정치체도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관찰되는가? [그림 1]은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1988~1992년의 평균값)을 OECD 국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로 나누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막대는 정부지출의 비중을 표시하고 있고, 푸른 막대는 각국의 정부지출 비중을 경제수준, 고령인구 비율, 무역개방의 정도 등의 변수로 설명하고 나서도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한다. 푸른 막대에서 보듯이 상당부분이 설명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국가간 편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명되지 않고 남아 있는 편차가 바로 정치체도로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정치경제학의 실증적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보다 개선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과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을 가늠하고자 한다.

[그림 1] 정부지출의 규모(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



자료: Persson and Tabellini(1999)에서 인용

III. 분석자료

본 연구는 1990~1998년까지의 각 변수에 대한 각국의 평균값으로 횡단면 분석을 시도한다¹⁾. 대상 국가는 80개국이다. 대상 국가를 선정한 기준은 Gastil 지수에 의하여 민주국가라고 간주될 수 있는 국가만을 선정하였다. Gastil 지수는 1에서 7까지 주어지며, 값이 작을수록 정치적 자유가 높음을 의미한다. 평균값이 5 이하인 국가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부지출과 사회복지비 지출의 수준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는 GDP 대비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과 GDP 대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자료는 IMF의 IFS 자료를 이용하고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자료는 GFS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앙정부의 자료만을 이용하는 한계 때문에, 정부의 형태가 연방정부인지 아닌지도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통제하였다.

1) 재정포럼의 성격상 자료 설명은 상세하지 못하다.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자에게 요청시 제공 가능하다.

Gastil 지수는 1에서 7까지 주어지며, 값이 작을수록 정치적 자유가 높음을 의미한다. 평균값이 5 이하인 국가만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정부지출과 사회복지비 지출의 수준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는 GDP 대비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과 GDP 대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정부지출과 사회복지비 지출의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된 변수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Gastil 지수와 지난 200년 중 민주정치가 확립된 이후의 햇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했다. 후자의 경우, 민주주의를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최근 정치경제학 연구의 여러 주제 중 하나는 성숙된 민주주의와 새롭게 수립된 민주주의 체제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치체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다수결제인지 대통령제인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기타 문화나 지정학적인 변수들로는 기존의 경제개발에 관한 문헌들에서 많이 이용되는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적도로부터의 거리, 영어를 모국어로 이용하는 인구의 비중, 유럽어를 모국어로 이용하는 인구의 비중, 언어나 인종적인 동질성의 정도, 인구수 등이 그 변수들이다. 적도로부터의 거리는 열대지방의 국가들이 기후로 인해 경제개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인식이 배경이 되고 있다. 또, 영어나 유럽어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선진 서구문화와 제도를 채택하는 데 유리하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언어나 인종적인 동질성의 정도는 언어, 종교, 인종 갈등으로 인해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경험에서 주요 변수로 채택된 것이다. 또, 인구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어느 정도의 인구규모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제변수로는 실질 1인당 국민소득을 로그로 취한 값, 무역개방의 정도를 보는 GDP 대비 수출입의 비중을 이용하였다. 인구학적인 변수로는 15~64세 사이의 인구 비중,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설명변수로는 OECD 국가 여부, 비 OECD 국가 중에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미 국가의 여부를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또, 영국, 스페인 그리고 기타 국가의 식민지 경험 여부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이상의 변수 리스트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측면의 광범위한 변수들이 선택되었다. 경제발전 관련 연구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중요한 변수들에 정치제도 변수가 추가로 포함된 셈이다. 재정지출이나 사회복지비 지출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통제하고 난 이후의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자.

정치제도의 형태에 따라 주요 변수들의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표 1>을 통해 볼 수 있다. 정부지출과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이 대통령제 국가들이 의원내각제 국가들보다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평균적으로 22.2%이지만 의원내각제 국가들에서는 33.3%이다. 또,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도 4.8%와 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수결제와 비례대표제 국가의 차이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정부지출 비중의 경우 25.6%와 30.8%,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의 경우 4.7%와 10.1%로, 다수결제 국가의 지출 비중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단순 평균비교만으로도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설명에 근거한 예측이 실제 자료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평균비교만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정치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제도의 선택이 국가들의 다른 특성과 관계없이 랜덤하게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차이가 정치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정치제도의 선택은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수결제와 대통령제인 국가는 경제수준이 더욱 높으며, 민주정치가 약하며, 젊은 층의 비율이 더 높다. 또, 대통령제는 개방정도가 낮고, 민주주의의 경험이 적은 국가에서 쉽게 발견된다. 그리고, 지리적인 분포도 랜덤하지 않다. 대통령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이 존재하며, 유럽에서는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가 대부분이다. 식민지 경험도 정치제도의 채택에 일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식민지였던 지역에서는 다수결제와 의원내각제가 지배적이며, 스페인 식민지였던 지역에서는 대통령제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정치제도의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요소들만으로도 관찰되는 재정지출 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치제도의 영향을 식별해 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분석기법을 이용해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평균적으로 22.2%이지만 의원내각제 국가들에 서는 33.3%이다. 또,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도 4.8%와 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수결제와 비례대표제 국가도 정부지출 비중의 경우 25.6%와 30.8%,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의 경우 4.7%와 10.1%로, 다수결제 국가의 지출 비중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정치제도와 주요 변수들(횡단면 자료, 1990~1998년)

	(1)	(2)	(3)	(4)	(5)	(6)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P(1,2)	다수결제	비례대표제	P(4,5)
정부지출 수준	22.2 (7.2)	33.3 (10.0)	0.00	25.6 (8.2)	30.8 (11.3)	0.03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4.8 (4.6)	9.9 (7.0)	0.00	4.7 (5.4)	10.1 (6.6)	0.00
Log (일인당 GDP)	7.9 (0.9)	8.7 (0.9)	0.00	8.1 (1.2)	8.6 (0.8)	0.04
무역개방 정도	62.5 (27.5)	89.1 (54.2)	0.01	83.7 (59.9)	75.6 (37.5)	0.44
65세 이상 인구 비중	5.6 (3.5)	10.3 (4.8)	0.00	6.7 (4.4)	9.6 (4.9)	0.01
민주정치 경험	0.16 (0.23)	0.24 (0.21)	0.09	0.22 (0.25)	0.20 (0.20)	0.77
Gastil 지수	3.1 (1.2)	2.0 (1.1)	0.00	2.7 (1.4)	2.3 (1.1)	0.08

주: 1. 변수들의 평균값은 정치제도에 따라 분류된 값임.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3. P(x,y)는 동일 분산의 가정하에서 x와 y 그룹의 평균값이 같다는 것을 기각한 것이 잘못된 확률임.

IV. 분석방법과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한 일반최소자승법(OLS)만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의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보다 엄밀하고 다양한 분석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나, 그 분석결과가 일반최소자승법의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제비교를 시사적으로 해 보는 것이 목적인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일반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부지출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나와 있다. 대통령제와 다수결제의 정치제도가 정부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2> 정부재정 지출 규모와 정치제도

	추정 계수
대통령제	-4.669 (2.307)**
다수결제	-6.418 (2.127)***
Gastil 지수	-3.230 (1.390)**
민주정치 경험	-4.124 (4.538)
Log(일인당 GDP)	-0.506 (2.121)
Log(인구수)	0.995 (0.812)
개방 정도	0.041 (0.025)
15~64세 사이의 인구 비중	-0.296 (0.380)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0.886 (0.469)*
연방정부	-4.674 (2.498)*
OECD 국가	-0.638 (4.082)
아프리카 국가	2.0 (5.117)
동남아시아 국가	-4.222 (3.618)
라틴아메리카 국가	-5.964 (3.078)*
스페인 식민지 경험	4.048 (6.283)
영국 식민지 경험	6.109 (3.336)*
다른 국가의 식민지 경험	-2.053 (2.921)
R ²	0.707
관찰 수	79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2. ***: $p < 0.01$ **: $0.01 < p < 0.05$ *: $0.05 < p < 0.1$

정부지출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대통령제와 다수결제의 정치제도가 정부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에 대해서도 대통령제와 다수결제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와 정치제도와 관계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에 대해서도 대통령제와 다수결제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와 정치제도

	추 정 계 수
대통령제	-2.244 (1.105)**
다수결제	-2.248 (1.246)*
GasIII 지수	-0.439 (0.502)
민주정치 경험	1.80 (2.769)
Log(일인당 GDP)	-0.098 (0.744)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1.237 (0.257)***
연방정부	-0.247 (1.178)
OECD 국가	-1.643 (2.231)
아프리카 국가	3.317 (2.740)
동남아시아 국가	0.370 (2.053)
라틴아메리카 국가	0.872 (2.214)
스페인 식민지 경험	6.565 (2.635)**
영국 식민지 경험	0.054 (1.367)
다른 국가의 식민지 경험	-1.540 (1.115)
R ²	0.808
관찰 수	68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2. ***: p<0.01 **:0.01 <p<0.05 *: 0.05<p<0.1

<표 4>는 우리나라 정부지출 규모의 국제비교를 시도한 결과를 보여준다. 1990년에서부터 1998년 간의 GDP 대비 평균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17% 정도였고, 정치적 변수 및 모든 변수를 포함한 <표 2> 모형에서 추정된 관계상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면 21%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국제비교를 해 보면, 약 4%포인트 정도 정부지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변수만을 제외한 모형에서의 우리나라의 추정 정부지출 규모는 약

23% 이고, 간단한 경제변수(1인당 국민소득, 인구수, OECD 국가더미)만을 포함한 모형에서의 추정치는 24.3% 정도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단순 국제비교를 할수록 우리나라가 국제비교를 기준으로 지출해야 하는 정부지출의 비중을 과대 추정하게 됨을 보여준다.

〈표 4〉 정부지출 규모의 국제비교(1990~1998년의 평균값)

실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17.067%
정치적 변수 및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의 추정치	20.999%
정치적 변수만 제외한 모형에서의 추정치(다양한 사회, 인구, 역사, 경제변수 포함)	23.013%
경제변수만을 포함한 모형에서의 추정치	24.340%

〈표 5〉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결과이다. 1990년에서 1998년 사이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 평균 지출 비중은 1.6% 정도였다. 정치제도와 기타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표 3〉의 모형에서 추정된 우리나라의 예상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1.93%으로 0.3%포인트 차이다. 그러나 정치변수만을 제외한 모형에서의 추정치는 3.5% 정도이고, 간단한 경제변수만을 고려한 추정치는 7.45% 정도이다.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의 경우, 다양한 측면의 변수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추정치의 차이는 확연하다. 다양한 설명변수를 고려한 국제비교를 하지 않고 단순 국제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비교의 기준에서 현저하게 과소 지출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 변수를 포함한 국제비교를 하게 되면 국제 평균치와의 격차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간단한 국제비교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국제수준의 78% 정도 과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치제도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16% 정도 과소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의 국제비교(1990~1998년의 평균값)

실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1.618%
정치적 변수 및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의 추정치	1.930%
정치적 변수만 제외한 모형에서의 추정치(다양한 사회, 인구, 역사, 경제변수 포함)	3.495%
경제변수만을 포함한 모형에서의 추정치	7.447%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국제추세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정책이 정치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 산물임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V. 맺는 말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이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강하게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나 다른 사회·경제·인구학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비교는,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한 재정지출 수준을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순 국제비교에 근거해서 논리 전개를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적정 재정지출 수준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국제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비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이상의 엄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국제추세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정책이 정치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 산물임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최근의 자료를 이용해서 정치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설명변수를 이용한 국제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이 국제추세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해서 재정정책의 국제비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다면, 사회복지비 지출이 국제수준과 단순 비교해 볼 때 낮다는 근거로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체의 정당성, 소요 자원 조달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연구에 근거한 논의가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비교를 이차적인 필요성 때문에 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는 정치제도를 주어진 환경으로 생각하고 국제비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는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런 정치제도하에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방식을 논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정치제도를 가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정치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나 사회보험에 더욱 가치를 두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떤 부문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가 정치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는 한 국가의 정치제도를 논할 때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쟁점들 이외에 재정정책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KDI**

참고문헌

고영선, 「분야간 재원배분의 현황과 개선방향」,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KDI, 2004.

박형수,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4.

Alesina and Tabellini, “Bureaucrats or Politicians?” NBER Working Paper 10241, 2004.

Blinder, Alan, “Is Government Too Political?,” *Foreign Affairs*, 1997.

Persson, Torsten and Guido Tabellini, “Constitutional Rules and Fiscal Policy Outcomes,” *American Economic Review*, 94, 1, 2004, pp. 25~45.

_____, “The Size and Scope of Government: Comparative Politics with Rational Politicians,” *European Economic Review*, 43, 1999, pp. 699~735.

〈부록〉 우리나라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

〈부표 1〉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UN에서 제정한 정부기능 분류별 항목의 지출 비중이고 〈부표 2〉는 GDP 대비 중앙정부 항목별 지출 비중이다.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부문별 현황을 일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고영선(2004) 및 박형수(2004)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부표 1〉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부문별 지출 비중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일반공공행정	5.3	8.9	7.8	6.7	6.9	4.3	4.0	4.3	4.4	3.7	5.2	14.0	6.3	6.7
국방	20.0	19.6	19.3	18.4	16.7	15.7	15.0	13.3	12.1	11.2	11.4	9.9	11.6	11.4
공공질서 및 안전	4.3	4.6	5.5	5.6	5.7	5.5	5.3	4.8	4.8	5.0	4.6	4.0	5.4	5.3
교육	16.9	13.7	14.3	19.5	18.1	18.0	17.2	16.4	14.9	15.0	15.3	14.5	16.5	15.0
보건	1.5	1.6	0.8	0.7	0.5	0.7	0.8	0.8	0.9	0.9	0.7	0.5	0.4	0.4
사회보장 및 복지	8.1	8.5	9.3	9.3	9.9	9.0	9.4	9.7	10.9	12.4	15.3	11.6	16.2	13.5
주택건설및지역사회개발	10.1	9.2	7.2	6.2	7.1	8.0	8.4	6.7	6.3	8.1	5.3	7.7	1.9	5.0
오락, 문화, 종교	0.5	0.5	0.5	0.6	0.7	0.6	0.6	0.7	0.7	0.8	0.8	0.8	1.4	1.2
경제사업	19.6	16.4	15.6	17.6	19.9	24.9	26.2	24.5	26.9	27.5	25.2	26.4	22.6	28.7
연료 및 에너지	0.6	0.6	0.5	-0.9	0.2	0.7	1.4	1.4	2.2	1.6	0.7	1.5	1.6	1.8
농림수산, 수협	9.7	8.6	8.0	7.6	10.6	11.2	10.2	8.1	8.2	7.3	6.2	5.9	5.4	6.7
광업, 제조업, 건설업	2.0	0.4	0.3	2.7	3.5	2.7	3.2	3.3	4.0	5.3	2.6	4.1	3.5	4.5
수송 및 통신	6.1	5.7	6.2	7.2	5.3	8.5	7.7	10.4	10.4	9.9	9.9	9.0	9.2	9.3
기타경제사업	1.1	1.2	0.6	1.0	0.3	1.7	3.6	1.3	2.1	3.4	5.8	6.0	2.9	6.5
기타지출	13.7	17.0	19.8	15.5	14.7	13.4	13.0	18.8	18.2	15.5	16.2	10.4	17.7	12.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 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부표 2〉 GDP 대비 중앙정부 통합재정 지출의 기능적 분류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일반공공행정	0.94	1.59	1.36	1.12	1.21	0.80	0.80	0.90	1.00	0.80	1.10	3.60	1.20	1.4
국방	3.57	3.50	3.38	3.11	2.96	2.80	2.80	2.70	2.80	2.50	2.50	2.50	2.23	2.5
공공질서 및 안전	0.77	0.81	0.96	0.94	1.00	1.00	1.00	1.00	1.10	1.10	1.00	1.00	1.03	1.1
교육	3.01	2.45	2.49	3.29	3.19	3.20	3.20	3.30	3.50	3.30	3.30	3.70	3.15	3.3
보건	0.27	0.28	0.13	0.12	0.08	0.10	0.20	0.20	0.20	0.20	0.20	0.10	0.07	0.1
사회보장및복지	1.44	1.52	1.60	1.57	1.74	1.60	1.80	2.00	2.50	2.80	3.30	3.00	3.10	2.9
주택건설및지역사회개발	1.81	1.64	1.26	1.05	1.26	1.40	1.60	1.40	1.50	1.80	1.20	2.00	0.36	1.1
오락, 문화, 종교	0.09	0.09	0.10	0.10	0.13	0.10	0.10	0.10	0.20	0.20	0.20	0.20	0.27	0.3
경제사업	3.47	2.92	2.72	2.97	3.51	4.40	4.90	5.00	6.20	6.20	5.60	7.80	4.33	6.20
연료 및 에너지	0.11	0.11	0.08	-0.16	0.03	0.10	0.30	0.30	0.50	0.40	0.10	0.40	0.30	0.4
농림수산, 축협	1.72	1.53	1.39	1.28	1.88	2.00	1.90	1.60	1.90	1.60	1.40	1.50	1.03	1.4
광업, 제조업, 건설업	0.36	0.06	0.06	0.46	0.61	0.50	0.60	0.70	0.90	1.20	0.60	1.00	0.67	1.00
수송 및 통신	1.08	1.01	1.09	1.21	0.94	1.50	1.40	2.10	2.40	2.20	2.20	2.30	1.77	2.00
기타경제	0.20	0.21	0.10	0.18	0.05	0.30	0.70	0.30	0.50	0.80	1.30	2.60	0.56	1.4
기타지출	0.24	3.02	3.46	2.61	2.59	2.40	2.40	3.80	4.20	3.50	3.50	2.60	3.40	2.8
합 계	17.84	17.47	16.87	17.67	17.81	17.80	18.70	20.20	23.20	22.30	21.90	25.40	19.5	21.7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 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방안



원종학 전문연구위원 (jweon@kipf.re.kr)

I. 서론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기술발전을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고정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규모가 작은 기업이 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연구개발투자가 성과를 거둘지 여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그 결과가 연구개발투자를 한 산업이나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사회적 수익률은 사적 수익률을 능가한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투자되기 쉬우므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와 정부출연기관의 신설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조세·금융 등 다양한 법적 제도와 정부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의 필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1년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된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의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1년 4조 1,584억원이었던 총연구개발비는 2003년 19조 687억원으로 약 4.6배 증가하였으며,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투자의 필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1년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된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1년 4조 1,584억원이었던 총연구개발비는 2003년 19조 687억원으로 약 4.6배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율도 1.92%에서 2.46%로 0.5%포인트 증가하였다.

GDP 대비 비율도 1.92%에서 2.46%로 0.5%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의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미국의 9.1%, 일본의 24.3%, 독일의 47.9% 수준에 불과하며,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의 규모도 2003년 현재 우리나라가 543달러로서 미국의 56.3%, 일본의 64.8%, 독일의 8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세지원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총액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세액공제 방법 및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규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현황

1. 총연구개발비 추이

과학기술부의 『2004년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된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1991년 4조 1,584억원에서 2003년 19조 687억원으로 약 4.6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2%에서 2.64%로 증대하였다(〈표 1〉).

연구개발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민간재원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75.1%로서 14조 3,266억원, 정부 및 공공재원이 24.5%로서 4조 6,632억원, 그리고 외국재원이 0.4%로서 789억원으로 민간부문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공공부담 비율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조금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담 비율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조금 감소하였다.

〈표 1〉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정부공공부담	민간부담	외국부담	합 계	GDP 대비 비율
1991	8,085(19.4)	33,426(80.4)	73(0.04)	41,584	1.92
1992	8,569(17.2)	41,105(82.4)	216(0.43)	49,890	2.03
1993	10,266(16.7)	51,140(83.1)	124(0.20)	61,530	2.22
1994	12,571(16.0)	66,345(84.0)	31(0.04)	78,947	2.44
1995	17,796(18.9)	76,597(81.1)	13(0.01)	94,406	2.37
1996	23,977(22.0)	84,667(77.8)	136(0.1)	108,781	2.42
1997	28,507(23.4)	93,233(76.5)	118(0.1)	121,858	2.48
1998	30,518(26.9)	82,764(73.0)	84(0.1)	113,366	2.34
1999	32,031(36.7)	87,117(73.1)	70(0.1)	119,218	2.25
2000	34,518(24.9)	103,872(75.0)	95(0.1)	138,485	2.39
2001	41,874(26.0)	118,474(73.5)	757(0.5)	161,105	2.59
2002	45,484(26.3)	127,004(73.3)	763(0.4)	173,251	2.53
2003	46,632(24.5)	143,266(75.1)	789(0.4)	190,687	2.64

주: () 안의 값은 연구개발비 합계에 대한 비중임.
 자료: 과학기술부, 『2004년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서』.

연구개발비 수준을 알기 위해 선진국의 연구비 수준과 비교하면(〈표 2〉), 2003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미국의 9.1%, 일본의 24.3%, 독일의 47.9%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1인당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543달러로서 미국의 56.3%, 일본의 64.8%, 독일의 82.5%로 인구규모를 고려할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는 다소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연구원 1인당 연구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7만 2천달러로서 미국의 76.1%, 독일의 83.9%, 프랑스의 83.5%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일본의 16만 5천달러보다는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미국의 9.1%, 일본의 24.3%, 독일의 47.9%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1인당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543달러로서 미국의 56.3%, 일본의 64.8%, 독일의 82.5%로 인구규모를 고려할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는 다소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표 2〉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수의 국제비교

	연구개발비 (백만달러)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 (달러)	연구원수 (명)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명)	연구원 1인당 연구비 (천달러)
한 국(2003)	26,000	543	151,254	31.6	172
미 국(2003) ¹⁾	284,584	964	1,261,227	45.2	226
일 본(2002)	106,838	838	646,547	50.7	165
독 일(2003) ²⁾	54,284	658	264,685	32.1	205
프랑스(2002) ³⁾	36,618	598	177,372	29.1	206
영 국(2002) ⁴⁾	31,037	524	157,662	27.0	197
핀란드(2002) ⁵⁾	4,761	915	38,632	74.5	123
중 국(2002)	72,014	56	810,525	6.3	89

주: 1), 2), 3), 4), 5)의 연구원수,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각각 1999년, 2002년, 2001년, 1998년, 2001년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부, 『2004년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서』.

2.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체의 연구개발비가 매년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표 3〉 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총 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94	15,405 (19.5)	17.6	6,089 (7.7)	36.9	57,453 (72.8)	30.6	78,947 (100.0)	28.3
1995	17,667 (18.7)	14.7	7,709 (8.2)	26.6	69,030 (73.1)	20.2	94,406 (100.0)	19.6
1996	18,956 (17.4)	7.3	10,188 (9.4)	32.2	79,636 (73.2)	15.4	108,781 (100.0)	15.2
1997	20,689 (17.0)	9.1	12,716 (10.4)	24.8	88,453 (72.6)	11.1	121,858 (100.0)	12.0
1998	20,994 (18.5)	1.5	12,651 (11.2)	△0.5	79,721 (70.3)	△9.9	113,366 (100.0)	△7.0
1999	19,792 (15.5)	△5.7	14,314 (12.0)	13.1	85,112 (71.4)	6.8	119,218 (100.0)	5.2
2000	20,320 (14.7)	2.7	15,619 (11.3)	9.1	102,547 (74.0)	20.5	138,485 (100.0)	16.2
2001	21,602 (13.4)	6.3	16,768 (10.4)	7.4	122,736 (76.2)	19.7	161,105 (100.0)	16.3
2002	25,525 (14.7)	18.2	17,971 (10.4)	7.2	129,754 (74.9)	5.7	173,251 (100.0)	7.5
2003	26,264 (13.8)	2.9	19,327 (10.1)	7.5	145,097 (76.1)	11.8	190,687 (100.0)	10.1

주: () 안의 값은 비중임.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각 연도.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를 보면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이 대기업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집중도가 높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의 경우 대기업은 전체 연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를 보면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이 대기업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집중도가 높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비의 경우 상위 10개사에 전체 연구비의 40% 이상이 집중되고 있으며, 연구원의 경우 상위 10개사에 전체 연구원의 30% 정도가 집중되고 있다.

〈표 4〉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연구개발비			연구원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대기업	8,736,966 (71.2)	9,337,066 (72.0)	11,084,236 (76.4)	57,019 (51.2)	62,459 (52.9)	71,698 (57.8)
중소기업	1,958,818 (16.0)	1,813,347 (14.0)	1,825,995 (12.6)	29,520 (26.5)	28,470 (24.1)	27,390 (22.1)
벤처기업	1,577,795 (12.9)	1,824,940 (14.0)	1,599,432 (11.0)	24,760 (22.2)	27,231 (23.0)	24,942 (20.1)
합 계	12,273,579 (100.0)	12,975,354 (100.0)	14,509,663 (100.0)	111,299 (100.0)	118,160 (100.0)	124,030 (100.0)

주: () 안의 값은 비중임.
자료: 과학기술부.

〈표 5〉는 상위 10개사 및 20개사의 연구개발 집중도를 나타낸 것인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비 및 연구원의 집중도가 상위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비의 경우 상위 10개사에 전체 연구비의 40% 이상이 집중되고 있으며, 연구원의 경우 상위 10개사에 전체 연구원의 30% 정도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차상위 10개사의 연구비 및 연구원 집중도는 상위 10개사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매출액 대비 연구비의 비율은 2002년의 경우 상위 10개사는 3.17%, 상위 20개사는 2.71%이었으며, 2003년의 경우 상위 10개사는 4.17%, 상위 20개사는 3.60%이다.

〈표 5〉기업체의 연구개발 집중도

(단위: %)

		연구비 집중도	연구원 집중도	박사연구원 집중도	매출액 대비 연구비
상위 10사	2002	43.2	28.3	34.3	3.17
	2003	43.7	30.9	41.3	4.17
상위 20사	2002	49.6	33.1	41.1	2.71
	2003	51.7	48.4	48.4	3.60

자료: 과학기술부.

Ⅲ.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

1.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으로는 크게 총액기준에 의한 방법과 증액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증액기준은 다시 이동평균방식과 고정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총액기준 공제제란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총액기준 방식은 기준이 간단하여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알기 쉽다는 점과 실효한계 세액공제가 항상 일정하다는 점,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실시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득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제도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증액기준 공제제도는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한 연구개발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며, 기준의 설정방식에 따라 이동평균방식과 고정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동평균방식은 과거 몇 년간의 연구개발투자액의 이동평균을 기준액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금년도에 기준액보다 많은 연구개발지출을 한 경우 다음 해의 기준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다음 해 이후의 지출액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 연구개발투자 행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아울러 가질 수 있다. 단, 기준이 되는 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세액공제효과의 변동 폭이 줄어들어 평균화된다.

고정방식에 의한 세액공제는 특정 연도의 연구개발투자액을 기준액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으로는 크게 총액기준에 의한 방법과 증액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증액기준은 다시 이동평균방식과 고정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다. 고정방식의 경우 연구개발지출액이 기준액보다 많은 한 한계유효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같아진다. 단, 설정된 기준연도의 연구개발지출액이 우연히 높은(낮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적게(많게)되는 문제점이 있다. 고정방식으로는 이상에서 설명한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 외에도 물가연동방식, 매출액연동방식 등이 있다.

세액공제제도의 방법과 각각의 방법에 따른 효과에 대해 영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Bloom-Griffith-Klemm(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유발 효과는 총액제의 경우가 가장 크지만 총액제의 경우 효율성이 낮으며, 물가연동방식과 매출액연동에 의한 고정방식이 연구개발투자의 신규유발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세액공제제도에 따른 효과 차이

방 식	총액제도	이동평균	물가연동	매출액연동
평균METC	20%	3.5%	14.6%	14.7%
재정부담(백만파운드)	820.8	126	199.2	145.2
초년도 신규유발 R&D(백만파운드)	68	11	50	43
장기적으로 본 신규유발 R&D(백만파운드)	684	113	497	427
장기신규유발 R&D/세부담	0.83	0.90	2.48	2.94

자료: Bloom-Griffith-Klemm(2001).

2.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주요 조세지원제도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조특법 제18

조),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6),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등이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은, 통계가 이용 가능한 1998년부터 볼 때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정도는 매우 불규칙적이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실적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2003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이 1조 1,597억원으로서 연구개발 관련 전체 세액공제액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828억원으로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 743억원으로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제도 중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524억원으로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제도는 실적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¹⁾.

여기서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 3항목의 세액감면 산출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①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총액의 15% ②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평균액²⁾을 초과한 부분의 50%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³⁾. ①의 방법은 총액기준이며, ②의 방법인 증액기준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액기준, 증액기준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총액기준, 증액기준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동평균에 의한 증액기준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대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4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1)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2)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음.

$$4\text{년간 연평균 발생액} = \frac{\text{직전48개월간 발생액 합계액}}{4} \times \frac{\text{당해 과세연도 월수}}{12}$$

3) 위 2가지 선택에 제한은 없다. 매년 양자 모두를 계산하여 더욱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실적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2003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이 1조 1,597억원으로서 연구 개발 관련 전체 세액공제액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조특법 제 132조). 현행 법인세에서는 여러 가지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써 최저한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⁴⁾. 그러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전액 및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연구개발투자를 이점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기술이전소득⁵⁾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또한, 내국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한도액을 보면 손금한도액은 당해연도의 수입금액⁶⁾의 3%로 정하고 있다. 단,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5%로 그 폭이 약간 크다.

4) 최저한세의 세율은 중소기업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 대기업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임.

5) 다음과 같은 기술이전소득을 말함.

○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술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

3. 조세지원과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로서는 B-지수⁷⁾를 사용하여 분석한 손원익(2002)과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손원익(2004), 원종학·김진수(2005)가 있다.

손원익(2002)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발간한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의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의 자료 및 동기간에 대해 별도로 구한 B-지수를 사용하여 조세지원 정책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연구개발투자와 총매출액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으며, 정부지원 연구개발투자는 민간연구개발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지수로 측정된 조세지원은 기본모형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연구개발투자를 포함한 확장모형에서도 유의하게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지원이 증가할수록 민간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각 개별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각 개별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로는, 저자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이 유일하다. 손원익(2004)은 이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2001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조세지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추정결과를 보면, 연구개발투자로 인해 세제지원을 받는 규모와 연구개발투자와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탄력성은 0.421로 추정되었다. 또한, 기업의 규모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학·김진수(2005)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2002~2003년 2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원종학·김진수(2005)의 분석은, 추정모델은 기업규모별로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조세지원제도와 연구개발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추정결과를 보면, 조세지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의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이 연구개발투자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지 조세지원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탄력성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추

7) B-지수란 주어진 법인세제하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이익이 되는 최소한의 비용-편익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법인세를 t , 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용을 z 라 할 때, $B=(1-tz)/(1-t)$ 로 나타낼 수 있다. B-지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arda(1996), 손원익(2002)을 참조하기 바람.

조세지원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탄력성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추정 모델에 따라 약간 다르나 대기업은 0.20~0.35, 중소기업은 0.01~0.13 정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키는 유효한 수단이나, 그 효과는 대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모델에 따라 약간 다르나 대기업은 0.20~0.35, 중소기업은 0.01~0.13 정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키는 유효한 수단이나, 그 효과는 대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IV.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과는 격차가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관대한 조세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2004년의 조세개편 가운데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내용만 보더라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하고⁹⁾,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일몰 시한의 3년 연장 및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이하에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연구개발투자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8) 단, 연구개발투자와 세액감면액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나 손원익(2004), 원중학·김진수(2005)의 분석 모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으며, 횡단면(cross section) 분석에만 그치고 있어 시계열적 요인 특히 과거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9) 2004년의 비과세 금액은 총급여액의 15%이나 2005년에는 10%, 2006년에는 5%로 연차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1. 대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총액기준제 도입

현재 대기업의 경우 과거 4년간의 평균을 상회하는 연구개발투자액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세제개편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도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총액제 도입 후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연구개발비는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¹⁰⁾, 이는 과거 5년간의 평균 증가액 0.6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연구개발투자 증가가 총액제 도입 이후 사실상 정체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¹¹⁾.

일본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개발비용의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는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연구개발투자 증대 효과는 큰 반면, 고정비적 성격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도입할 때에는 총액의 어느 정도를 세액공제할 것인가 하는 공제율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총액기준과 증액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때, 총액기준을 선택한 기업의 세액공제액 합계가 증액기준을 선택한 기업의 세액공제액 합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선택한 경우는 과거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한 경우이므로 이를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 총액기준에 의한 공제율을 높게 설정하여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에 대해 많은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새로이 확대시킬 인센티브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제율은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¹²⁾.

10) 금액으로는 약 7,300억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11) UFI總合研究所(2005)

12) 총액기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규모를 추계한 원종학·김진수(2005)의 분석에 의하면, 현행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연구개발비의 7% 이상을 총액기준의 공제율로 할 경우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감면액이 증액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제율은 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증액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고정방식에 의한 증액기준제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은 총액기준과 이동평균에 의해 기준액을 설정하는 증액기준 방법 2가지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증액기준을 도입하는 경우도 어느 특정연도의 연구개발투자액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나 매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액을 조정하는 세액공제방식이 신규 연구개발투자 촉진 효과도 크며, 세액감면에 대비한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정방식에 의한 세액감면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단, 증액제의 경우 세액공제율 설정뿐만 아니라 기준설정 방법이나, 법인세율 등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빈번한 변경은 기업의 장래 예측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변경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3. 연구개발투자 세액감면에 대한 일몰규정 수정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활동은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바로 이익과 연결되지 않으나 장래의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등 기업 및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일수록 장기적 연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에 걸친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세액감면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3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일몰규정을 장기화 하거나 혹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더하여 일몰규정의 장기화 혹은 폐지는 세제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 관련 세제지

원에 대해서는 일몰적용을 장기화 내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연구개발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액감면에 대해 일몰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투자에 한해 일몰규정을 폐지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의 일몰규정을 현행의 3년보다 늘리는 장기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KIPR**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손원익,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02-09, 2002. 12.
 _____, 『투자(R&D·설비) 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4. 9.
 원종학·김진수,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2.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백서』, 2003~2004.
- 經濟産業省, 「平成15年度税制改革における研究開発促進制の抜本強化」, 2003.
 _____, 「研究開発税制に関する調査結果」, 2004.
 UFJ総合研究所, 「平成16年度産業技術調査 研究開発促進税制の経済波及効果に関する調査報告書」, 2005
- Bloom, Nicholas, Rachel Griffith and Alexander Klemm, “Issues in the The Designand Implementation of an R&D Tax Credit for UK firms,” *IFS Briefing Note* No. 15, 2001.
- Bloom, Nicholas, Rachel Griffith, John Van Reenen, “Do R&D tax credits work? Evidence from a panel of countries 1979–1997,”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 2002, pp. 1~31.
- Hall, Bronwyn, John Van Reenen, “How effective are fiscal incentives for R&D? A review of the evidence,” *Research Policy* 29, 2000, pp. 449~469.
- Mairesse, Jacques, Mohamed Sassenou, “R&D and Productivity: A Survey of Econometric Studies at the Firm Level,” NBER *working paper*, No. 3666, 1991.
- OECD, “Tax Incentiv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 Trends and Issues,” STI, 2002.
- Warda, Jacek, “Measuring the Value of R&D Tax Provisions,” Fiscal Measures to Promote R&D and Innovation, *STI Review*, No.27, OECD, 1996.

추경편성에 대한 쟁점 분석



박형수 연구위원(hspark@kipf.re.kr)

I. 검토 배경

지난 5월 20일, 한국은행은 조업일수 감소, 담배생산 급감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7%(계절변동조정 전기 대비 증가율은 0.4%)에 그쳤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적어도 3%대의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및 하반기 중합투자계획 추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 지속 등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성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콜금리를 현 수준보다 더 낮추게 될 경우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을 평가할 때 최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성장률 감소 효과 0.4%를 감안하여야 하며,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등 1/4분기 우리 경제 성적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고, 재정조기집행 등이 효과를 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반박하며 당장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추경편성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5월 말 발표된 '2005년 4월 산업활동동향'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IMF·외국계 투자기관 등의 관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추경편성 여부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추경편성 및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경제상황, 추경의 경제적 효과, 재정여건 등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봄으로써 최근 제기되고 있는 추경편성의 필요성 및 그 제약요인을 점검해 보았다.

런 인사들이 한국정부에 추경편성을 권고하고, 야당에서 추경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최근 추경편성 여부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추경편성 및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경제상황, 추경의 경제적 효과, 재정여건 등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봄으로써 최근 제기되고 있는 추경편성의 필요성 및 그 제약요인을 점검해 보았다.

II. 경제상황과 추경편성

먼저 2000년 이후 추경이 얼마나 자주 편성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였던 홀수해(2001년, 2003년)에는 2차례씩,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었던 짝수해(2000년, 2002년, 2004년)에는 1차례씩 추경을 편성하여 매년 추경을 편성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추경편성 당시의 경제상황을 분석해 보면 홀수해의 2차례 추경은 모두 경기저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된 반면, 짝수해의 1차례 추경은 경기정점을 전후로 민생안정용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 및 2003년에 단행되었던 2차례의 추경편성은 당시 이미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및 2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었으며, 추경예산이 집행되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차 등을 감안해 볼 때, 경기상승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멘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였다고보다는 이미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던 경제의 회복속도를 촉진시켰다는 평가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1〉연도별 경제성장률과 추경편성

	경제상황			추 경						
	분기별 경제성장률		연간 경제 성장률	1차 추경			2차 추경			
	계절조정 전기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부제출 일자	국회의결 일자	규모 (조원)	정부제출 일자	국회의결 일자	규모 (조원)	
2000	1	3.05	13.1	8.5	6.29	10.13	2.3			
	2	0.78	9.4							
	3	1.51	8.2							
	4	-0.92	4.3							
2001	1	2.05	3.5	3.8	6.22	9.3	5.1			
	2	1.02	3.7							
	3	1.29	3.4							
	4	0.18	4.6							
2002	1	3.66	6.5	7.0						
	2	1.66	7.0							
	3	1.24	6.8							
	4	1.05	7.5							
2003	1	-0.32	3.8	3.1	6.5	7.15	4.2			
	2	0.21	2.2							
	3	1.45	2.3							
	4	2.78	4.1							
2004	1	0.65	5.3	4.6						
	2	0.60	5.5							
	3	0.81	4.7							
	4	0.94	3.3							
2005	1	0.3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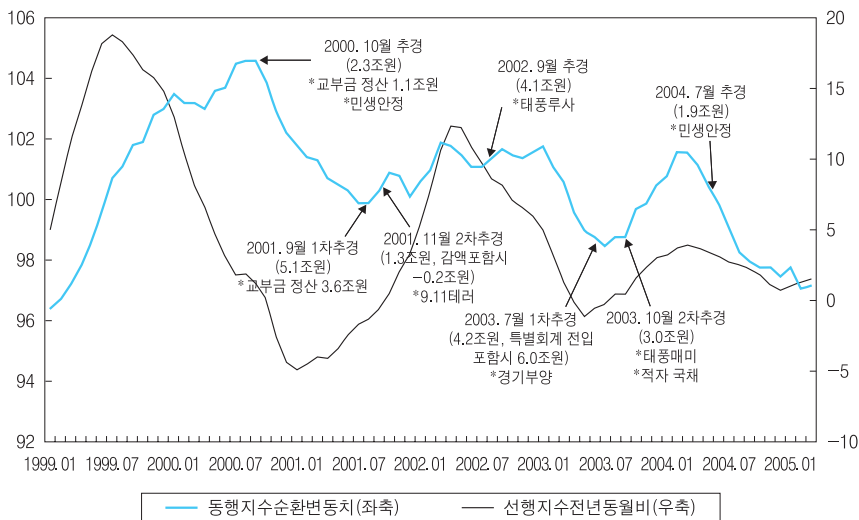
주: () 내는 지출감액분 포함시 추경규모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2004년 7월) 및 기획예산처 「연차별 추경규모 및 내역」
 (<http://www.mpb.go.kr/>)

한편, 최근의 경제상황은 [그림 1]에서 보듯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거의 저점에 도달하고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개선¹⁾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여러 가지 경기지표들을 분석해 볼 때 경기저점에 도달하고 있어 2001년 및 2003년의 1차 추경편성 직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많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연간 경제성장률이 4%내외 내지 4%대 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1) 다만 4월중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0.1%p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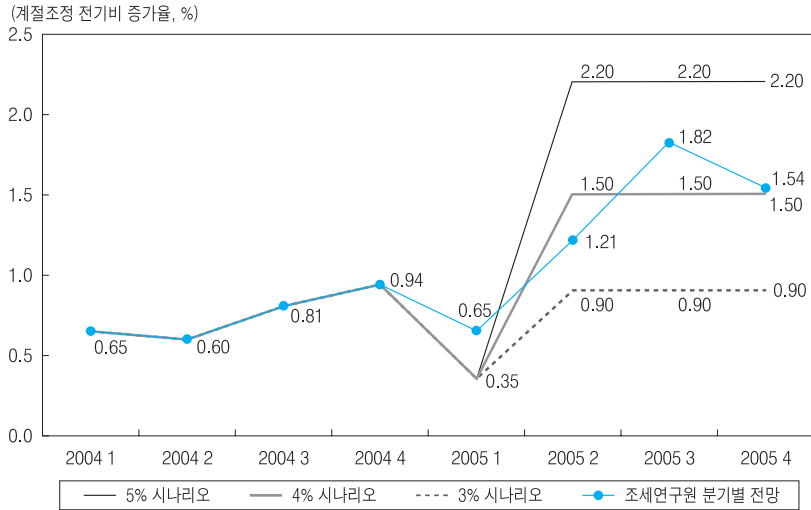
최근의 경제상황은 2001년 및 2003년의 1차 추경편성 직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많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연간 경제성장률이 4%내외 내지 4%대 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지속, 중국 위안화 절상 등 하방 위험(downside risks) 요인이 있어 성장률이 4%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림 1] 경제추이와 추경편성 시점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지속, 중국 위안화 절상 등 하방위험(downside risks) 요인이 있어 성장률이 4%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림 2]에 정리된 간단한 시플레이션 분석에 의하면, 4%의 연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GDP의 계절조정 전기비 증가율이 지난해 4/4분기의 0.94%에서 금년 1/4분기에 0.35%로 하락하였는데, 2/4분기부터는 1.5%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로 1%대로 상승하느냐의 여부가 우리 경제가 금년에 4%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림 2] 계절조정 전기비 증가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III. 추경의 경제적 효과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총수요(또는 GDP)의 변화는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직접적 효과란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통계상으로 GDP가 직접 늘어나는 것으로 물건비와 인건비는 GDP통계에서 '정부최종소비지출'에, SOC 등 자본지출(토지보상비 제외)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착된다. 반면, 간접적 효과란 GDP통계에 직접 포착되지 않는 이전지출 등 재정지출의 효과, 승수(multiplier)효과, 구축(crowding-out)효과 등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른 2차적 과급효과를 말하며, 통계로는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시계량모형 등을 이용하여 그 크기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추경편성의 직접적 효과를 보기 위해 <표 2>의 지출항목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차례의 추경을 편성하였던 2001년 및 2003년의 경우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²⁾. 특히 「국민계정」(명

추경편성의 직접적 효과를 보기 위해 지출항목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차례의 추경을 편성하였던 2001년 및 2003년의 경우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계정」(명목)상의 정부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의 변화를 분석한 당해 분기 및 다음 분기에 해당지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상의 정부소비지출 및 투자지출(대용변수로 토목건설투자인 '기타건설투자' 통계를 이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추경을 편성했던 당해 분기 및 다음 분기에 해당지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출항목별 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

	경제 성장률	소비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민간 투자	정부 투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무형 투자	순수출	수출	수입
1990	9.2	6.9	5.3	1.6	7.9	7.1	0.8	5.7	2.2	0.1	-2.4	0.8	3.2
1991	9.4	6.0	5.0	0.9	5.2	4.1	1.1	3.0	2.0	0.2	-2.6	1.9	4.5
1992	5.9	4.5	3.5	1.0	0.2	-0.4	0.6	0.0	0.0	0.1	0.7	2.2	1.4
1993	6.1	4.2	3.5	0.8	2.8	2.6	0.2	2.5	0.1	0.1	0.7	2.3	1.6
1994	8.5	5.4	4.9	0.6	4.5	4.1	0.5	1.3	3.0	0.2	-2.4	3.2	5.6
1995	9.2	6.4	5.7	0.7	4.9	4.7	0.2	2.1	2.6	0.2	-1.5	5.2	6.7
1996	7.0	4.9	3.9	1.0	3.3	2.3	0.9	1.7	1.4	0.2	-1.8	2.9	4.7
1997	4.7	2.2	1.9	0.3	-0.9	-1.4	0.5	0.5	-1.5	0.1	4.2	5.5	1.2
1998	-6.9	-7.4	-7.7	0.3	-8.4	-8.1	-0.3	-2.7	-5.7	0.0	11.3	3.7	-7.6
1999	9.5	6.5	6.1	0.4	2.5	2.3	0.2	-0.8	3.1	0.2	-2.9	5.2	8.1
2000	8.5	4.8	4.6	0.2	3.7	3.2	0.4	-0.1	3.5	0.3	0.3	7.1	6.8
2001	3.8	3.2	2.7	0.6	-0.1	-0.5	0.4	1.0	-1.2	0.1	0.5	-1.1	-1.6
2002	7.0	5.0	4.3	0.7	2.0	1.9	0.1	0.9	0.8	0.2	-0.2	5.1	5.3
2003	3.1	-0.2	-0.7	0.5	1.2	0.4	0.8	1.3	-0.1	0.0	2.5	6.3	3.8
2004	4.6	0.1	-0.3	0.4	0.6	-	-	0.2	0.4	0.0	3.4	8.9	5.5

주: 정부투자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명목치를 투자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음.

2) 예를 들면, 2003년의 경우 경제성장률 3.1% 중에서 정부지출이 기여한 부분이 1.3%(정부소비와 정부투자에 기인한 부분이 각각 0.5% 및 0.8%)로 성장기여율이 무려 42%에 달한다.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일부 경제지표 및 민간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편성을 위해 늘어난 국민들의 세금부담 또는 국채발행에 의한 국가채무 증가라는 형태의 비용이 수반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재정수지만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만약 경기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되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면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총수요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SOC사업 등 자본지출 위주로 추경예산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데⁴⁾, 이렇게 경제예산인 자본지출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리고 경제예산의 비중은 줄여 나간다는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중장기적 세출구조 조정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5년 예산편성 방향이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경기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경제사업 위주의 추경이 편성된다면, 중장기적 세출구조 조정이라는 정책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금년 하반기에 추가된 경제사업예산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중앙정부 재정지출 1조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

(단위: 조원)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취업자수(천명)	
	당해년	다음해	당해년	다음해	당해년	다음해	당해년	다음해
인건비 및 물건비	1.17	0.59	0.28	0.16	0.30	0.23	32.92	12.11
민간경상이전	0.17	0.01	0.01	0.00	0.02	0.01	5.06	-0.11
자본지출	0.91	0.55	0.20	0.16	0.21	0.21	28.27	11.47
순융자	0.03	0.05	0.01	0.02	0.01	0.02	0.80	1.31
총지출	0.40	0.17	0.07	0.04	0.08	0.07	11.54	3.36

주 : 한국조세연구원의 거시·재정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추경예산 집행 후 1년 및 2년 동안 나타나는 효과임.

4) 한국조세연구원 거시·재정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추경규모 1조원당 실질GDP 증가 효과는 자본지출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0.91조원(예산집행 후 1년간의 효과)에 달하지만 자본지출과 이전지출의 비율이 1:1이면 0.54조원에 그친다.

IV. 재정상황과 추경편성

「2005년 경제운용방향」 등에 나타난 금년도 정부의 재정정책은 상반기에는 다소 확장적으로 편성된 본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BTL 등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조기집행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IV장에서는 2005년 본예산에 나타난 재정정책 기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하반기 BTL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차례로 분석하여 기(既)수립된 금년도 재정정책을 평가해 보는 한편, 세입여건도 점검해 보았다.

1. 본예산의 재정정책 기조

우선 2005년도 본예산을 재정수지, 재정지출 증가율, FI, FS 등 각종 재정지표를 통해 판단해 본 결과, 재정정책 기조가 전년에 비해 다소 확장적이기는 하지만 그 강도는 2001년 및 2003년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규모가 2004년 결산의 GDP 대비 0.4%(추경예산 기준으로는 0.9%)에서 1.0%로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도 2.5조원에서 5.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재정규모⁵⁾면에서도 금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지난해보다 다소 확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합재정 지출증가율(전년 추경 대비)은 5.8%로 작년(5.4%)보다 다소 높고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유발시키지 않는 순용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6.2%로 작년(3.0%)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여 재정당국의 재량적 재정정책 기조를 측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IMF의 FI(Fiscal Impulse)나 OECD의 FS(Fiscal Stance)를 계산해 본 결과에서도 금년도가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세목별로 GDP탄성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FI에서는 +0.15로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이러한 탄성치의 차이를 감안한 FS에서는 -0.06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계산되었다⁷⁾.

5)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증수가 조세증수보다 크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의 재정수지를 보이더라도 재정규모가 큰 경우가 작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수요 증대 효과가 크다.

6) FI나 FS가 (+)이면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정책에 의해 구조적 재정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악화, 즉 재량적 재정정책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확장적임을 의미한다.

7) FI나 FS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기백·박형수(2002) 및 Chalk(2002)를 참조하라.

「2005년 경제운용방향」 등에 나타난 금년도 정부의 재정정책은 상반기에는 다소 확장적으로 편성된 본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BTL 등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조기집행에 따른 정부 지출 감소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표 4〉 재정정책 기조 판단을 위한 재정지표

(단위: 조원)

	2001(결산)	2002(결산)	2003(결산)	2004(추경)	2004(결산)	2005(예산)
재정수지						
일반회계 적자국채	2.4	1.9	3.0	2.5	2.5	5.7
통합재정수지	7.3	22.7	7.6	3.3	5.6	5.6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15.5	17.6	19.6	22.4	21.2	25.9
공적자금 원금 상환	0.0	0.0	13.0	12.0	12.0	12.0
관리대상 재정수지	-8.3	5.1	1.0	-7.2	-3.6	-8.2
(명목GDP 대비, %)	-1.3	0.7	0.1	-0.9	-0.4	-1.0
재정지출 규모						
예산순계	137.5	145.2	158.6	156.5		
(증가율, %)	11.0	5.6	9.3	-1.4		
통합재정	136.8	136.0	164.3	183.4	173.2	194.1
(증가율, %)	5.8	-0.6	20.7	11.6	5.4	12.1
<추경 대비>						<5.8>
순용자 제외시	126.7	135.6	166.8	176.7	171.8	187.7
(증가율, %)	15.8	7.0	23.0	5.9	3.0	9.3
<추경 대비>						<6.2>
재정정책 기조 관련 재정지표						
재정충격지수(FI)	1.95	-0.26	0.62	-0.08	0.15	0.15
(명목GDP 대비, %)						
재정정책기조(FS)	2.19	-0.26	0.77	-0.17	0.06	-0.06
(명목잠재GDP 대비, %)						

주: FI(Fiscal Impulse) 및 FS(Fiscal Stance)는 각각 IMF 및 OECD 방식에 따라 계산한 경기적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의 전년 대비 약화규모로 측정되며, 부호가 (+)면 해당연도 재정정책 기조가 전년에 비해 확장적임을 의미.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표들은 세입 및 세출항목별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재정지출승수)이 다르다는 점은 무시하고 재정적자나 지출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전제하에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정책이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는 이러한 세입 및 세출 변동규모

에 세입 및 세출항목별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재정승수⁸⁾)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계산된 DI(Demand Impact)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2005년도 본예산을 2004년 추경예산과 비교한 계산결과를 보면, 실질GDP가 2005년중에 약 2.3조원(경제성장률로는 0.33%)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자 및 재정지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추경에 비해 오히려 총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측면에서 총수요 위축효과가 다른 세입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국세(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 규모가 커(전체 세입증가의 약 82%) 실질GDP 하락효과가 연중 약 7.4조원에 달한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지출증가의 구성이 총수요 증대 효과가 작은 이전지출 위주로 되어 있어 실질GDP 증가가 약 5.1조원(0.72%)에 그쳤기 때문이다.

〈표 5〉 2005년 본예산의 DI 계산 결과

(단위: 조원)

변수명	증가 규모	실질GDP		소비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취업자수(천명)	
		금년	내년	금년	내년	금년	내년	금년	내년
국세(직접세)	7.0	-5.00	-0.57	-1.20	-0.21	-1.08	-0.06	-115.45	-3.77
국세(기타)	1.5	-0.48	-0.05	-0.14	-0.03	-0.13	-0.01	-14.03	-0.54
사회보장기여금	3.7	0.00	0.00	0.01	-0.02	-0.12	-0.01	0.06	0.01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0.9	-1.88	-0.15	-0.58	0.01	0.07	0.01	-56.07	-0.73
세입합계	13.1	-7.36	-0.76	-1.90	-0.26	-1.26	-0.07	-185.49	-5.04
물건비 및 인건비	3.5	4.13	2.09	1.05	0.80	0.98	0.56	116.07	42.70
민간경상이전	7.9	1.34	0.07	0.14	0.05	0.06	0.01	40.07	-0.91
자본지출	-0.4	-0.38	-0.23	-0.09	-0.09	-0.08	-0.07	-11.80	-4.79
순융자	-0.3	-0.01	-0.01	0.00	0.00	0.00	0.00	-0.23	-0.37
세출합계	10.7	5.08	1.91	1.10	0.76	0.96	0.50	144.11	36.63
세입-세출	2.4	-2.28	1.15	-0.80	0.50	-0.30	0.43	-41.38	31.59

8)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거시·재정모형에 의한 항목별 재정승수를 이용하여 DI를 계산하였는데, 항목별 재정지출 승수(연간)는 〈표 3〉에 정리되어 있으며, 재정수입승수(연간)는 당해년에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국세(직접세)가 -0.71, 국세(기타)가 -0.31, 사회보장기여금이 -0.51,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이 0.00이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하반기 BTL 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달성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경제상황의 급속한 악화나 BTL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편성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재정조기집행 및 BTL 사업의 경제적 효과

6월 16일자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까지의 재정집행 진도율은 48.1%로 전년(42.3%)에 비해 5.8%p나 높아져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로 인해 1/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었을 것이며⁹⁾, 재정조기집행에 의한 성장률 제고 효과의 크기도 한국조세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0.67%p(2.2조원)이지만 연간으로는 0.22%p(1.5조원)로 작다.

한편, 이렇게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에 재정지출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사업 등의 종합투자계획의 집행을 통해 이를 상쇄시킬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유치사업 규모가 당초계획에 못 미치는 1조~2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행시기도 1~2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 규모를 1.5조원으로 보고 3/4분기에 준비과정을 거쳐 4/4분기에 모두 집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4/4분기의 총수요 증대 효과는 1.19조원 정도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하반기의 총수요 위축 효과 0.7조원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하반기 BTL 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달성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경제상황의 급속한 악화나 BTL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편성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 특히 1/4분기 GDP 통계에서 다소 부진하게 나타난 정부소비지출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재정수입 상황 및 추경재원

최근까지의 국세 진도율은 4.3조원의 세수결손을 초래하였던 지난해보다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상황이 지난해에는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하반기가 낮은 '상고하저'의 양상이었다면, 금년은 반대로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하반기로 갈수록 진도율 부진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민간소비가 빠르게 회복되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간접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금년에도 국세수입이 연간 세입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추경재원 측면에서도 2003년 2차 추경을 제외하고는 추경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한은잉여금이었으나, 금년의 경우 1조원 미만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한은수지의 적자시현 등으로 국채발행 이외의 재원조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년도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권에서 적자국채 규모의 추가적인 증가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들도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것은 분명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팽배해 있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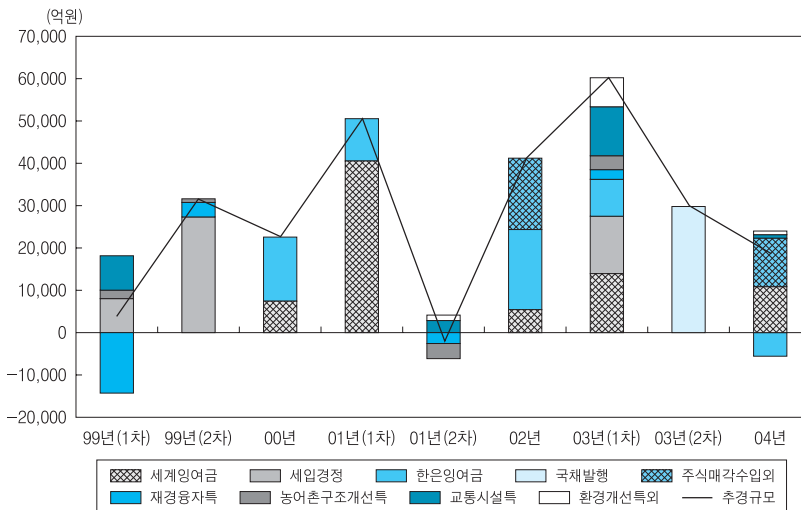
〈표 6〉 순세계잉여금 추이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반회계	6,202	23,724	40,555	24,074	32,861	11,262	1,726
특별회계	-3,337	20,608	20,226	1,685	14,925	2,063	6,769
총 계	2,865	44,332	60,781	25,759	47,786	13,325	8,495

최근까지의 국세 진도율은 4.3조원의 세수결손을 초래하였던 지난해보다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상황이 지난해에는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하반기가 낮은 '상고하저'의 양상이었다면, 금년은 반대로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하반기로 갈수록 진도율 부진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림 3] 과거 추경의 자원 조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2004년 7월) 및 기획예산처 「연차별 추경 규모 및 내역」(<http://www.mpb.go.kr/>)

V. 결론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추경편성의 필요성과 이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추경편성의 필요성으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2001년 및 2003년의 1차 추경편성 당시와 유사하다는 점, 금년도 본예산의 재정정책 기조가 재정적자 규모나 지출증가율 등에서 다소 확장적이기는 하지만 간접세 세수가 부진하고 직접세 세수는 양호한 최근의 세수 실적 및 중장기적인 세출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총수요 증대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 재정 조기집행만에 의한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으며 하반기에 시행될 민간투자유치사업도 크

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GDP 대비 1%의 적자 목표는 과거 예·결산상의 차이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세입미달을 감안하더라도 다소의 지출확대는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추경편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은 2001년 및 2003년의 1차 추경편성 당시보다는 양호하며 4%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더 높일 필요는 없다는 점,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지출확대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시점에서의 추경은 불필요하다는 점, 지난해 말 이미 예상보다 부진했던 내수회복세를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을 다소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이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재정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입측면에서도 국세실적이 금년도 세입목표에 미달할 정도로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동중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확대는 불필요하다는 점, 국채발행 이외에 마땅한 추경재원이 없다는 점, 벌써 몇 해째 '상반기 조기집행-하반기 추경편성'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어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정부의 중장기적인 세출구조조정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 대략적인 2/4분기 경제성장률을 추정해 볼 수 있으므로¹⁰⁾ 정부는 향후 경제변동 추이를 보아가며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경편성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도 살펴 보았듯이 금년도 하반기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속도와 수출증가세 둔화의 정도에 따라 경기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려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과거처럼 추경편성을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겠으나, 4%대 성장세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한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KIF**

10) 한국은행은 금년 2/4분기부터 분기 종료 후 25일경에 분기 실질GDP 속보치를 공표할 예정이다.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려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과거처럼 추경편성을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겠으나, 4%대 성장세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한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2004. 7.
- 기획예산처, 「연차별 추경규모 및 내역」,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 _____, 「5월 말현재 재정집행 81.8조원, 상반기계획대비 81.6%」, 2005년 6월 16일자 보도자료.
- 박기백·박형수,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 보고서 02-04, 2002.
- 재정경제부, 「2005년 경제운용방향」, 2004년 12월 29일자 보도자료.
- 통계청, 「2005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05년 5월 30일자 보도자료.
- 한국은행, 「200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 2005년 5월 20일자 보도자료.
- _____, 「분기GDP 속보치 공표」, 2005년 5월 20일자 보도자료.
- Chalk Nigel A. “Structural Balances and All That : Which Indicators Use in Assessing Fiscal Policy,” *IMF Working Paper*, WP/02/101, 2002.



정책토론포트

1.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



■ 주 제: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

■ 일 시: 2005. 7. 12(화) 10:00~12:30

■ 장 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0:00~10:15 개회사 및 격려사

개회사: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격려사: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 10:15~12:15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김태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토론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남기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신영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주석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이철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홍백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2:15~12: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2:30 폐 회

* 본 원고는 2005년 7월 12일(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의 전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토론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
박능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서론

-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회복되었으나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오히려 빈곤율은 상승하였음
 -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으며,
 -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
-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특성상의 한계를 가짐

II.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1.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사회안전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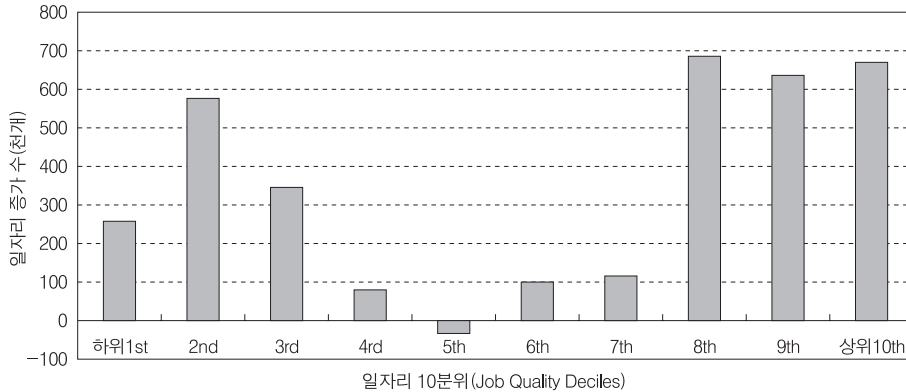
- 근로빈곤가구의 규모(2003년 전인구 기준)
 - 근로빈곤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15.4%임

- 근로빈곤가구의 취업 실태 및 경제활동 상황
 - 저소득가구 중 취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비율은 64%로 취업자가 있음에도 대다수가 빈곤 상태에 있음을 보여 줌
 -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자영자와 실업자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

2. 근로빈곤층의 증가 현황과 원인

-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지속적으로 증가
 -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급속 증가
-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증가는 근로소득의 감소가 중요한 원인
 - 저소득가구의 일을 통한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 계속 감소해 옴
 -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보수를 기준으로 중간층 일자리(보수기준 4~7분위 일자리)는 감소하고 상위 및 하위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

[그림 II-1] 일자리 10분위별 증감 현황('93~'02)



-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
 - '04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39만명으로 '01년 이후 약 180만명 증가하고 그 비중도 10%p 높아진 약 37%임
 -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은 상용직 임금의 50% 수준
-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EITC는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75년 입법화하여 도입

<표 III-1> EITC 제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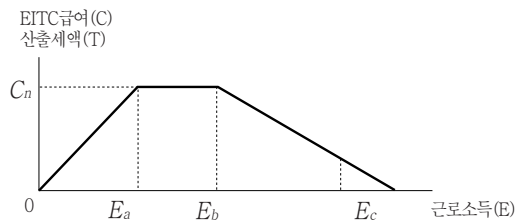
구 분	1975년	2004년	비 고
최대 지급액	400달러	4,300달러	10.8배
적격 소득금액	8,000달러	35,458달러	4.4배
신청인원	6.2백가구	21백가구	3.4배
신청금액	12억 5천만달러	380억달러	30.4배

III. 외국의 운영사례

1.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의 도입 목적과 제도의 발전
 - EITC는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환급가능한 연방 소득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제도임

[그림 III-1] 소득수준별 급여모형



- EITC의 신청대상
 - 자녀가 있는 납세자가 주 대상자이며, 현재는 자녀가 없는 납세자도 신청 가능하나 그 비중은 전체 EITC 수급자 중 2%에 불과
- 제도의 순응도 조사결과('99년 3,500사례 조사결과)
 - 오류 지급된 EITC 금액은 85억~99억달러 (27~32%)
- EITC의 효과
 - 공공부조는 수급률이 낮은 반면(Food Stamp 수급률 43%), EITC는 수급률이 높아(75~86%) 급여수준이 낮음에도 탈빈곤 효과가 매우 큼(EITC를 통해 2,100만명 중 22%인 460만명이 빈곤에서 탈출)
 - 복지제도에 비해 오류율은 높은 반면(Food Stamp 약6%), 행정비용은 낮은 것으로 조사
 -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서는 가족유형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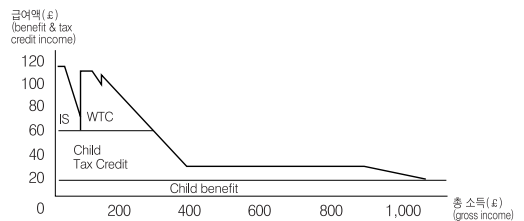
2. 영국의 Working Tax Credit과 Child Tax Credit

- Tax Credit의 도입 배경과 목적
 - 노동수요가 저숙련 근로자에서 고숙련 근로자로 이동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 낮은 편부모 취업률과 그로 인한 높은 아동 빈곤율
 - 아동빈곤 퇴치(Tackle child poverty)/가족

지원 (Support Families)/근로의욕 고취 (Make work pay)를 목적으로 도입

- 제도의 변천과정
 - 1971년 저소득 근로빈곤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서 FIS(Family Income Support)를 도입한 이래 Family Support('88년)으로 발전
 - '99년 블레어 정부에서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가 도입되면서 조세제도(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 '03년 아동관련 지원제도를 통합한 CTC(근로여부 무관, 아동수당 유지)와 저소득근로가구 지원과 근로유인을 위한 WTC로 분리

[그림 III-2] 영국 WTC & CTC 급여체계: 아동 1인 가구



- 제도의 개요
 -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직업의 유무에 상관 없이 자녀를 가진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
 -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저소득 가구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녀 및

장애 유무에 상관없음

- 제도의 성과
 - 적용가구수: 457만가구(WTC 160만가구)
 -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므로 면세점 이하자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 기대
 - 편부모(lone parents)의 노동공급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5%p이상의 취업률 상승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
 - 수급자에 대한 소득과약과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국세청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의 경우 오류비율이 10~14% 수준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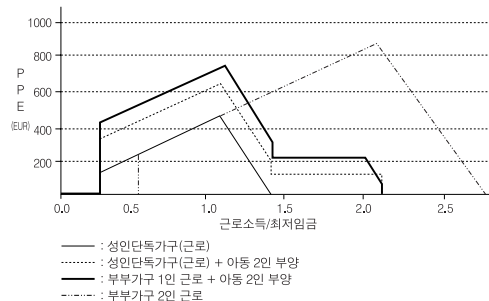
3. 프랑스 근로소득보전세제 (Prime pour l'Emploi : PPE)

- 도입 배경
 -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근로유인 제도의 필요성
 - 2000년 시도되었던 사회보험기여금 감면 법안이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결로 법제화되지 못한 후, 이에 대한 대안적인 제도로서 영·미 제도를 참고하여 PPE를 도입
- 도입 목적
 - 실업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인이 주요 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침해된 내수경기 회복

- 수급자격
 - PPE는 일차적으로 가구 총소득이 기준소득(Revenu Fiscal de Reference: RFR)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기준소득은 가구형태에 따라 매년 새로 정해짐
 - 저소득층 근로자의 취업상태나 종사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 최근 동향 및 쟁점사항
 - 프랑스의 PPE는 전체 조세대상 3,400만가구 중 약 900만가구의 근로빈곤층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가구당 평균 급여액은 약 280Euro이며, 연간 PPE에 투입되는 재정소요는 22억Euro임
 - 아직까지 제도도입 초기인 관계로 근로유인 효과나 소득증대 효과와 관련해서 확인된 결과가 거의 없으며, 최근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그림 III-3] 프랑스 PPE 제도의 기본구조



4. 벨기에 근로소득보전세제: In-Work Tax Credit

□ 제도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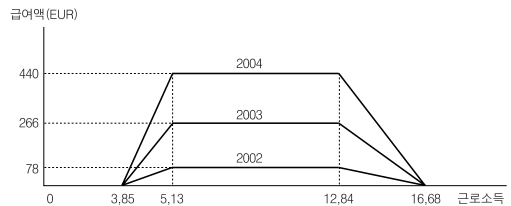
- 저숙련 근로자의 낮은 취업률/높은 급여의 존율/높은 사회복지지출과 낮은 빈곤율
- 1999년 총선 결과, 플라미쉬 자유당의 Guy Verhofstadt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 출범
 - 경제의 효율성과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조화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표방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한 급여수준/높은 조세부담

□ 제도 내용

- 근로소득의 정의에 따라 자영업 및 농업소득 모두 적용
- 자격요건
 - 개인단위 적용으로 인해 아동 및 가구와 관련된 기준 없음
 - 근로소득이 적용범위 내에 해당할 경우 자격요건 충족
 - 근로소득 이외에 재산소득 등의 별도 기준 없음
- 적용단위
 - 개인단위 적용: 과세단위와 일치. marriage penalty 문제 해결, Second earner(특히,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유인 강조
 - 가구단위 급여체계의 경우 targeting을 통한 목표효율성과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음

나, 벨기에의 과세단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Second earner의 근로유인 감소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그림 III-4] 벨기에 In-Work Tax Credit (credit d'impot) 급여체계



□ Tax Credit에 대한 평가

- 2002년 Credit D'impot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5년 동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의 사회보험료를 직접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
 - 폐지 이유는 급여지급의 시차로 인한 근로유인 효과 미흡 때문임
- 벨기에는 개인단위 적용방식을 선호하였으며, 가구단위의 자산조사형 Tax Credit은 정책수단으로 선호하지 않음
- 조세체계의 과세단위와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삶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존중과 차별시정 차원에서 marriage penalty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최저임금의 대체를 위한 제도로서가 아니라, Tax Credit 제도와 최저임금의 상호보완이 중요함을 강조

5. 호주 Family Tax Benefit 및 Working Credit 제도

□ 도입 목적

-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현재의 정부보조금 수혜자들로 하여금 임시직,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을 구할 동기를 강화
- 취업이 되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최대 12주 동안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기간의 취업을 통해 퇴직한 후에도 보조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구직자가 최대 12주 동안의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 제도 내용

- FTB(Family Tax Benefit) 제도는 가족보조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부양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급
- Working Credit은 연방정부가 저소득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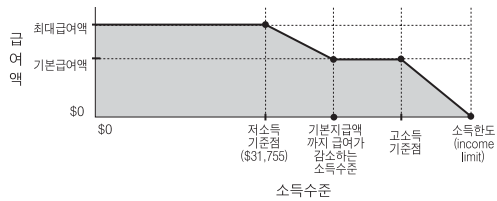
- FTB(Family Tax Benefit) 제도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호주거주자이거나 FTB 목적에 적합한 특정비자를 소지한 자에 해당함
- 자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소득보조금(income support)을 받고 있거나 16세 이상이고 교육제도(prescribed educational scheme)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다면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 고령연금(Age Pension)의 수급가능한 연령

미만이며 Centrelink 보조금 중 하나를 받고 있다면, Working Credit을 받을 수 있음

□ Part A의 FTB 급여액

- 아래와 같이 한 명의 자녀당 최대급여액(Maximum Rate)과 기본급여액(Base Rate)이 정해져 있음

[그림 III-5]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액



<표 III-2> Part A의 급여액(2004년)

자녀나이	최대 급여액 (Maximum Rate)	기본 급여액 (Base Rate)
13세 미만	3,401.80달러 (287만원)	1,095.00달러 (92만원)
13~15세	4,314.30달러 (363만원)	1,095.00달러 (92만원)
16~17세	1,095.00달러 (92만원)	1,095.00달러 (92만원)
18~25세 미만	1,470.95달러 (124만원)	1,470.95달러 (124만원)

6. 뉴질랜드의 Family Assistance 제도

□ 제도 내용

- 18세 이하이고,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 가족보조는 가족수당(Family Support) 외

세액공제(Tax Credit) 방식으로도 이루어 지는데,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게 됨

- 자격요건
 - 뉴질랜드 거주자로서 최소한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가족보조를 신청할 때에 납세자의 자격을 갖춰야 함
 - 주된 소득이 급여(benefit)가 아니라 일(working)을 통해 얻은 것이어야 함
 - 소득원천이 저소득급여(Income-tested Benefit) 하나뿐이라면, 가족수당(Family Support)만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의 일부로 근로·소득부(Work and Income)에서 지급함
- 운영 및 신청방식
 - 가족수당(Family Support)은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지급
 - 저소득급여(Income-tested Benefit)를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부(Work and Income)에서 지급
 - 가족보조(Family Assistance) 지급 주기는 2주마다이거나 연도 말에 일시불로 지급 중 하나 선택가능
- 급여액
 - 2주마다 받는 경우 13세 미만의 모든 자녀는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제시한 기준표를 따름

IV. 소득과약 현황 및 문제점

1. 근로소득

가. 근로소득의 개념과 종류

- 근로소득은 세법에서 정해 놓은 소득구분상 하나로 일반적 개념은 노동대가인 임금으로 법인(정부) 및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임
-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근로 유형은 근로시간, 고용계약, 급여계산 방법 등에 따라 「상근·일용·임시」로 구분되며 고용계약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일용·임시)으로 구분
- 현행 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에 의해 소득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는 특성을 고려해 제외

나. 근로소득 과약 현황

- 2003년 기준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과약률은 약 74% 수준
- 소득과약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약 380만명으로 주로 일용근로자와 과세미달자인 상시근로자임

다. 비사업자 지급 유형

- 첫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나 확인이 어려운 소득
- 둘째, 특정단체를 통해 근로제공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셋째, 사인간 거래로 확인이 불가능한 소득

라. 근로소득 파악의 문제점

- 일용근로자 약 210만명에 대한 소득파악 장치 없음
 - 일용근로자는 소득파악 장치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음
- 생계형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작성·제출이라는 세무절차를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
- 비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확인 불가능

2. 사업소득

가. 종합소득세 과세기반의 취약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과거에 비하여는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근로소득자에 비하여는 저조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
- 무기장자와 추계과세자의 비율이 낮아 근거과세의 기반을 침해
 - 소득세의 무기장자 비중은 199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무기장자의 비율은 여전히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의 비율보다 높음
 -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가 납부한 세부담은 전체 결정세액의 70%를 차지

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 과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과다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음
 - 사업자의 약 48.8%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거래단계별 수입금액이 파악되지 않음

〈표 IV-1〉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현황 (2003. 2기)

(단위: 명, %)

합 계	일반과세자		간 이 과 세 자					
			소 계		납부대상자		납부면제자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3,635,511	1,861,707	51.2	1,773,804	48.8	243,434	6.7	1,530,370	42.1

- 자영업자의 약 50%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으로 소득과약이 취약한 분야임

3. 자영농어민

- 경제활동인구상 농림어업종사자는 1,950천명이며 이 중에서 자영농어민 1,183천명임 (농어업근로자 162천명, 무급가족종사 농어민 605천명 제외)
- 소득과약이 필요한 자영농어민 1,183천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

4. 이자·배당·임대·연금소득

- 이자·배당·임대·연금소득 자료의 보유비율도 낮은 수준
- 소득보유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저축, 배당 등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세금우대 및 비과세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면제 등에 기인
- 그러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경우 소득과약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공공기관간 자료협조나 제도개선을 통해 소득과약이 가능

V. EITC 도입시 집행가능성

1. EITC 집행가능성과 소득과약

- EITC 집행가능성과 소득과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
- EITC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므로 EITC 적용 여부 및 급여액 산정을 위해 가구원 개개인의 소득과약이 필수적
- 가장 중요한 과약대상 소득은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본 정보인 일을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임

- 소득과약을 위해서는 사업자(법인/자영자)의 매입·매출의 정확한 기장과 거래증빙 노출이 필수적임

- 소득과약은 EITC 도입을 위해서 필수적이거나, EITC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2. 도입시 집행가능성

- 소득과약 수준과 신뢰성이 낮아 전면 도입은 어려움
- EITC를 시행할 경우 국세청이 소득을 과약해야 할 대상은 약 20,444천명으로 이 중 15,198천명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를 보유(74%)

가. 근로소득자

-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부터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도입은 가능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자료 보유율이 74%에 이르고, 신뢰성도 높은 수준으로 제도 개선과 철저한 시행준비를 통하여 소득자료 보유율을 88%까지 제고할 수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자가 고용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사를 통해 관리가 가능

나. 근로소득 +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가 동시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중 근로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사업소득자는 강화된 소득신고를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둘째, 비교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음

다. 자영업자

-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 추이, 기장의무자 확대 등 근거과세의 기반이 마련되는 정도에 따라 도입 여부 판단

라. 농어민

- 농어민에 대한 EITC 적용은 신중히 고려
 - 농어민에게는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대책 추진중
 - EITC 적용시에는 가구단위 소득과약과 함께 직불제 등 현행 지원정책과의 조정도 함께 검토가 필요

3. 집행가능성을 위한 개선과제

가. 세제상 개선과제

- 모든 소득발생시 자료 생성·수집·관리 원칙을 확립해야 함
 - 모든 근로자는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 영세사업장의 자영자와 소속 근로자의 소득과약을 위해서는 매출과 주요경비를 노출하기 위한 간편장부의 기장대상 확대가 필수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의 단계적 축소
 - 간이과세제도는 거래단계별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등으로 매출규모 신뢰성을 떨어뜨려 전반적으로 자영자 소득과약을 어렵게 함
-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과 이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소득과약 체계 개발

- 납세 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

나. 세정상 개선과제

- 임시·일용직이 주 대상에 포함될 EITC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인별 소득자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EITC를 위해 비정규직(임시, 일용 등)의 경우 노동 공급관계의 종료 또는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조서가 관리되어야 함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기본현황 확인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자의 자가 여부, 종업원수, 급여지급 방법 등과 고용기간, 고용형태 및 급여수준을 확인해야 함

- EITC 수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VI. EITC 도입과 관련한 주요 검토과제

1. 도입효과

[단계적 도입론] 근로빈곤층의 빈곤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

- 고용시장의 변화와 소득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EITC 도입 필요
 -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다 최근 증가, 빈부격차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신중론] 근로의욕 제고 효과 불확실

- EITC를 도입한 미국의 실증연구를 보면 편모과정과 같은 일부 계층에서는 제한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였으나
 - 가구단위로 소득이 합산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소득자(second-earner)의 노동공급(주로 여성)이 감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있는 편모가구 비율이 외국에 비해 낮아 노동공급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2.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단계적 도입론] 초기단계에 제한적으로 운용시 재정부담 적음

-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초기재원소요는 0.5조~1조원 내외로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음
- 소요재원은 각종 비과세·소득세 감면 확대 억제 등을 통해 마련

[신중론]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큼

- 향후 완전한 시행 단계의 재원추정과 조달이 전제되는 것이 필요
 - 아동 없는 가구와 자영자를 포함할 경우 2조원 이상 소요 전망
 - 정치적인 이유로 수급대상자가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재원소요 규모는 큰 의미가 없음

□ 비과세·감면 축소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이 근로자, 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에 집중되고 있어 실제 축소가 쉽지 않은 실정

3. 도입시기

[단계적 도입론] 집행가능한 적용대상부터 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보완

- 근로자가구는 2~3년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소득과약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일단 실시
- 자영업자가구도 제도 운영 시행초기부터 소득과약 인프라를 구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확대

[신중론] 5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

- 소득과약률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조기 도입 시 부정수급* 등으로 혼란 및 불형평 초래
-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더라도 정치적인 문제, 근로자와 사업자 간 형평성 등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조기 실시 불가피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적용방법

[단계적 도입론]

- 사업소득은 소득신고요건 강화를 조건으로 적용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우선 정산
- ※ 급여수준이 사회보험료 수준이므로 최대 급여를 받아도 자영업자는 사회보험료 납부

후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고 신고소득 요건도 강화

[신중론]

- 비교급여 체계 적용
- 사업소득은 적용 여부 및 급여증감에서 분리한 경우에만 합산

5.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가. 검토가능 대안

1) 제1안: EITC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 대해 적용하고 현행 자활장려금 제도는 조정·폐지

□ 장점

-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보전 효과
- 기초보장수급자의 자격변동이 심한 현실에서 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관리운영이 용이

□ 단점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라는 비판

2) 제2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EITC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적용

□ 장점

- 근로를 중시하는 사회윤리의식의 상징성 강화

- 단점
 - 기초보장수급자가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약화됨
 - 수급과 비수급을 수시로 오고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행정이 복잡해짐

VII. 도입시 검토가능 모형

1.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 설정방향

- 아동을 양육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내외까지 적용(최저생계비의 140~160%)
- 급여수준은 사회보험료 수준을 지급
 - 최대급여구간은 미국 등의 급여구간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탈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

2. 검토 모형

가. 모형 A

- ① 최대급여액 : 연간 201만원(4인가구 기준)
- ② 소득구간 : 최저생계비 162% 수준
- ③ 급여율 : 점증구간 20%, 점감구간 20%

나. 모형 B

- ① 최대급여액 : 연간 273만원(4인가구 기준)
- ② 소득구간 : 최저생계비 150% 수준
- ③ 급여율 : 점증구간 25%, 점감구간 50%

다. 모형 C

- ① 최대급여액 : 연간 100만원(월 8.3만원, 4인가구 기준)
- ② 소득구간 : 최저생계비 140%수준(4인가구)
- ③ 급여율 : 점증구간 20%, 점감구간 10%

〈표 VII-1〉 도입타당성 검토모형 개요 비교

구분	급여증가율	점증구간 상한	평탄구간 상한	급여감소율	적용구간 상한
모형 A	20%	최저생계비의 74%	최저생계비의 88%	20%	최저생계비의 162%
모형 B	25%	최저생계비의 80%	최저생계비의 110%	50%	최저생계비의 150%
모형 C	20%	최저생계비의 58%	최저생계비의 66%	10%	최저생계비의 140%

라.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타당성 검토 모형별 비교

- 가상적 모형에 대한 비교
 - 모형 A는 최저생계비 중 현물급여를 제외한 수준에서 최대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증감률

- 을 20%로 함
- 적용대상 약 100만가구 내외, 최대급여액 약 200만원
- 연평균급여액 약 95만원 내외, 소요재원 약 1조원 내외
- 모형 B는 최대급여를 받는 지점에서 소득과

급여를 합쳐 최저생계비가 되도록 하고 적용범위를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한정

- 적용대상 약 95만가구 내외, 최대급여액 약 273만원
- 연평균급여액 약 150만원 내외, 소요재원 약 1.5조원 내외
- 모형 C는 미국제도를 고려하되 미국과의 구매력 격차(47%)를 반영하고 급여수준은 장애연금과 경로연금을 감안 설계
- 적용대상 약 80만가구 내외, 최대급여액 약 100만원
- 연평균급여액 약 50만원 내외, 소요재원 약 0.5조원 내외

□ 분석상 한계

- 추계에 사용된 행정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등이 자체적인 한계를 지님
- EITC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대상자의 노동공급의 변화가 없는 정태적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
- 추계에 사용된 행정자료의 경우, 누락된 약 377만명의 일용근로자 Data 없이 나머지 Data를 가지고 추계

VIII. 결 론

- 현재의 소득과약 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제도도입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 초기에는 소득과약이 비교적 용이한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점차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 임금근로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 14,402천명 중 약 74%인 10,626천명에 대하여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
- 임금지급조서를 통해 파악된 소득자료는 신뢰성이 높음
- 소득과약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약 3,776천명으로 주로 일용근로자로 추정됨
-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경우 임금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74%에서 8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사업자를 통해 관리가능한 근로소득의 경우 집행가능하며, 캐디 fee 등 사업자가 가입된 특수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가능
- 부가가치세제의 개편 등 세제 및 기타 법령의 정비와 원천징수의무 확대, 지급조서제출방식의 다양화 등 세정장치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함
-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홍보 위주의 밀착행정 필요
-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경우에도 인별 인프라 구축 및 점검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예: 2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사업소득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

도의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도입 여부 및 시기 판단

- 제도 도입시 기본원칙
 - 정책목표와 Targeting Group의 명확화
 - 제도의 단순화
 - 급여단위는 가구단위가 바람직
 - 급여수준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출발하고, 제도 정착과 더불어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인상

토론 요약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서둘러야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도시근로자가구 빈곤율과 가구소득 불평등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악화
 - 1998년 실업률은 7.0%, 2004년 실업률은 3.5%임. 따라서 최근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양산과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는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양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 최근 가구소득 불평등은 1980년 이래 가장 악화된 수준임
- 근로빈곤층 양산은 경제적으로는 소비수요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기반 잠식, 사회적으로는 노사갈등 증폭, 생활범죄 증가, 사회통합 저해로 이어지는 등 많은 부정적 폐해를 드러내고 있음
 - 근로빈곤층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임
- 정부가 EITC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EITC 제도로 과연 얼마나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임.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최저 임금 수준 현실화, 연대임금정책, 산업별 단체 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의 노동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소요재원

-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타당성 검토 모형은 월평균 급여액 4만~12만원, 소요재원 0.5조~1.5조원으로 설계. 그러나 임금노동자 중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25% 안팎으로, 저임금을 일소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3%(대략 10조원)로 추정됨. 따라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재원으로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
- 근로빈곤층 해소 목표를 설정하고 최저임금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나 계획은 찾아볼 수 없음

□ 도입 시기

- 단계적 도입론은 2007~2008년, 신중론은 2010년부터 시행하자는 것임. 그러나 현재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감안할 때, 차기 정권으로 도입 시기를 넘길 만큼 한가로운 상태가 아님

□ 소득과약 문제

- 단계적 도입론과 신중론 모두 소득과약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러한 전제가 해결되어야 제도의 도입, 시행이 가능한 것은 아님

- 현행 세제와 사회보험 행정 모두 소득과약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고, 새로운 제도 도입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임

□ 근로자→자영업자로의 단계적 실시 문제

- 영세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상태임. 소득과약 문제는 국가의 세무행정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영업자 책임이 아님. 영세자영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근로빈곤층 내에서 적용자와 비적용자의 형평성 문제가 근로빈곤층의 최저생계 보장보다 더 큰 문제인지 의문임. 오히려 고소득 계층과 근로빈곤층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됨. 제도는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

- 근로빈곤층의 최저생계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임. 따라서 완벽한 제도를 갖춘 뒤 천천히 시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안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기존의 탈빈곤 제도와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남기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EITC 제도에 대해서 단순히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 근로빈곤(신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제도 자체를 위한 제도라면 의미가 없음
- 우리 사회의 빈곤의 문제 등 사회 전반의 문제, 탈빈곤의 문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를 놓고 볼 때 쉽게 찬반 여부를 논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소득보전제도와 보는 관점이라면 과연 근로유인이 탈빈곤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함
- 여기서는 EITC의 근로유인 효과만을 부각시키고 있음
- 한국형 EITC가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탈빈곤 정책의 주요한 부분이 이것만이라고 본다면 이는 일부 집단만을 위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EITC 제도가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 오히려 고용불안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고용주들이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 고용주들의 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지금의 EITC 제도 시행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가구단위의 지급형태
- 지급형태가 연말 소득정산과 같은 형태로 지급된다면 문제가 있음
 - 차후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소득과약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
- 근로유인을 통해 현재의 Working Poor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 문제는 근로동기와 근로유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서 유발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
- 공공부조 등 다른 공공서비스의 확충으로 Working Poor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EITC가 도입된다면 아동수당 및 기타 다른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없어지게 될 텐데,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 보고서에서 검토한 각 모형의 급여수준 산출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 않음
- 한국형 EITC는 기존의 탈빈곤 제도와 연계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단계적으로 시행한 후 문제점 보완해야

신영철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회관

- 기본적으로 현재의 발표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
- 도입 시기 및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

- 단계적인 도입을 통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
- 현재의 Working Poor 문제는 소득재분배의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소득과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가구를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그러나 처음부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됨
 - EITC 제도의 적용범위와 대상 및 급여수준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
 - 현재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자활을 위한 자활장려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이 있음
 - 기초수급자들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자활장려금제도를 확대할 계획
 - 그러나 현재의 자활장려금제도의 문제와 EITC 제도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초수급자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기초수급자들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
- 도입 모형과 관련하여
 - 도입 모형에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막기 위해서 B형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도입에 앞서 외국사례와 같은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EITC 도입과 관련 재정지원이 가장 큰 문제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EITC 도입과 관련한 5가지의 이슈는 크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 첫째, 근로의욕 제고라는 도입효과의 실효성
 - 둘째,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
 - 만약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바로 도입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 EITC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재정지원의 문제
- 재정학적 측면
 - 현재의 EITC가 재정학적인 제도로서 타당함에 대해서는 의문
 - 왜냐하면 IMF 이후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
 - 그러나 현행의 사회복지 수준이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
 -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시행할 때, 몇 년 후 OECD의 국가만큼 복지수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선진국에서는 준조세도 조세부담률에 포함시

키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

- EITC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복지분야의 지출 범위를 반드시 지켜야 함(12.2% 내외)
 - 사회복지 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
 - 지금처럼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 및 부담금을 조성하기보다는 복지분야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의 제도적 역량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이상적

이상은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ITC 제도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다른 국가들의 제도를 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유럽 대륙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나 아동수당제도
 -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아동급여제도
 - 국민의 80%에 대해 아동급여를 지급하고,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40%에 대해서 보충아동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EITC
 - 위의 두 가지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반면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제도
-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체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EITC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도입 시기

-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함. 따라서 그나마 소득과약 정도가 높은 근로자로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일부에서는 5년 후의 중기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EITC를 도입하지 말자는 입장에서 제기되는 것임
 - 5년 후로 시행시기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소득과약 정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임. 오히려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로의 적용 확대라는 강한 압력을 받아야 소득과약 체계가 개선되어 나갈 것임
- EITC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같이 시행함으로써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이상적
 - 특히 연 1회 지급되는 EITC는 일종의 금융재산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의해 금융재산은 16개월 동안 균등사용하는 것으로 소득으로 환산되고 있음. 즉, 이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삭감되므로 두 제도의 동시 실시에 별 문제 없음

재정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이주석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성공적으로 EITC 제도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함
 - 복지급여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즉, 소득파악의 문제
 - 현실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움. 현재 소득파악이 가능한 74% 이외의 26%에 대부분 해당자들이 포함될 것임
 -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오류수급자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함
 - 복지급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모형의 문제)
 - 복지급여를 얼마나 줄 것이냐(재정상의 문제)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은 적자재정으로, 균형재정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 따라서 보고서의 EITC의 초기 소요재원이 첫째 국가예산의 1%로 작다고 보는 견해는 문제 있음
 -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모집단이 상당히 많음
 - 국세청이 관리해야 할 모집단이 많은데 과연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의문
 - 소득세의 분배효과를 위해 인기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통합·관리할 기관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노동수요 증대정책을 먼저 검토해야

이철인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EITC 본연의 의미와 이 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음
 - EITC는 복지지출이 과다하다고 알려져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근로의욕 저하 및 이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대체로 인정
 - 현 시점에서 도입취지를 생각해 보자면, 과연 근로의욕 저하로 인해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노동수요의 부족에 따라 발생한 수요측면의 문제로 보아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봄. 노동공급보다는 노동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예: 고용지원금,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
 - 굳이 도입하자면 EITC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정립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임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 대안으로서 EITC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했음
 -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주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EITC의 근로의욕 제고 효과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로

의욕 감퇴 효과에 의해 대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높아 두 제도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근로의욕 제고 효과는 모형의 점증구간이나 평탄구간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차상위계층에서의 근로의욕 제고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음
 - 물론 다른 방식의 지원보다 근로의욕 제고 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임
- EITC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고려해 보면, 과연 빈곤대책으로서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우려가 됨.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저하시켜 더욱 근로빈곤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소득과약이 불가능한 일용근로자 377만명만을 근로빈곤자로 보고 이들에게 약 1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줄 경우 3.77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상당한 재정부담이 가중되지만, 개인으로 보아서 월 7, 8만원 정도의 보조는 빈곤 탈출을 위해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함. 실질적으로 빈곤 탈출을 위해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경우 이는 약 19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나 이는 전체 부가가치세 세수에 육박함. 물론 이러한 단순 추계에는 자영자가 포함되지 않았음
 - 본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근로빈곤 문제가 노동수요의 부족에서 시작된 만큼 노동수요 증대정책이 공급정책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봄

□ 끝으로 EITC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득과약 문제의 근원에는 근로자에 대한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고 자영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음

- 단순히 세무행정 노력이 미진했다기보다는, 소득자료가 생성되기 용이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임
- 근로자에 대한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소득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용근로자 377만명에 대한 소득과약이 불가능하고, 고용관계가 경직적이다 보니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 및 임시일용직이 양산되어 이들 중 상당수가 자영자가 되고 마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보다 중요함

정확한 소득과약이 선행돼야

이호성 /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

- EITC가 단순한 소득보전 지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근로유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EITC가 근로유인 효과가 없다면 제도도입을 재고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계층이 근로유인을 늘려야 하는 주요 대상자임
 - 과다급여, 이중급여 논란 및 소득의 역진현상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조정이 전제되어야 함
- 소득과약에 대한 대처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음

- 근로소득 파악을 88%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이 의심스러움
- 인프라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가 달성될 때까지 제도도입을 연기해야 함
- 국민연금 확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 선도입 후보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실효성을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재정소요 부분이 과소 추계된 것 같음
- 최저임금근로자 이외에도 일용근로자를 100만가구로 추정하는 것은 다소 과소 추계한 것 같음
- 아마 그 대상가구가 2~3배는 더 될 것임
- 재정소요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제도 도입시의 문제점 충분히 고려해야

허용석 / 재정경제부 세계총괄심의관

- 획기적인 제도는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음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국가의 재정부담이 예상
 - 미국과 벨기에의 예를 보더라도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음

- 미국형 모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더욱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미국의 제도가 유럽의 제도보다 효율성은 있어 보이나, 제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도 이론과 현실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각 나라마다 사회안전망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회안전망 장치 유지시 이 제도 도입시의 문제점 고려
 - 근로자와 자영자 중 근로자에게 이 제도를 실시한다면 평등권의 측면에서 문제가 됨
 - 아동 없는 가구를 배제한 아동 있는 가구만 지급시 평등성 우려
- 굳이 EITC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최저생계비 개념을 잘 이용하여 복지정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듯함
- 최저생계비를 보완하는 방법과 EITC 도입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양쪽의 득실을 잘 따져서 도입
- 소득과약 장치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됨
- 국세청이 걷는 행정에서 주는 행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문

노동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

홍백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근로소득계층이 노동의욕의 부족 때문에 빈곤층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EITC의 목적 중 근로의욕의 제고라는 부분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EITC는 노동의욕 제고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근로소득계층의 소득보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근로소득 빈곤계층의 경우 이를 노동시장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이를 접근하여야 할 것임
 - 즉 복구에서처럼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노동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정

책

연

구

-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 김 형 준 · 현 진 권
-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 노 영 훈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김형준 / 전문연구위원(kim@kipf.re.kr)

현진권 / 연구위원(jkhyun@kipf.re.kr)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은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무행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세무조사제도이다.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과세정보가 어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과세정보를 찾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세무조사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신고하지 않은 세원을 찾아내어 이 세원에 대해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하려는 납세자의 경제적인 유인을 제거하여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 등의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경제적인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세무조사제도는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아 추가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믿음을 주어 납세자들이 자신의 과세정보를 축소하

여 신고하려는 경제적인 유인을 제거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세무조사제도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성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세무조사의 조사비용이 높아 세무조사를 자주 실시할수록 납세자들은 과세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가산세율이 커질수록 성실 신고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납세자들의 경제적인 유인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의 비율을 살펴 보면서 2000년 이후 모든 세목에서 조사비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비용의 감소 폭이 세목마다 또는 같은 세목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비용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2000년도 이후에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산됨에 따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비율이나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정보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비율을 정확하게 공개하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의 실제 조사비율이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B5변형/126면/2004. 12/
값 6,000원

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의 사실은 다소 의외로 보이기도 한다.

제Ⅲ장과 제Ⅳ장의 이론적인 분석에서는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탈세의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쉽게 탈세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를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소득과약률이 증가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세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최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론은 소득과약률의 증가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조사비율이 상대적으로 적

게 감소한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비율이나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정보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비율을 정확하게 공개하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의 실제 조사비율이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 결론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본 실험에서 확인한 바는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리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맺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보다 많은 경우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KIPF**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4-10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노영훈 / 선임연구위원(yhrut@kipf.re.kr)

I. 연구배경

부동산보유세 강화정책은 그 자체 또는 거래과세 완화정책과 함께 과거 수십년간 역대 정부의 주요 조세정책과제로서 늘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가격급등이 있을 때마다 수요자의 투기적 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시각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인상을 통해 자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그 실천의 정도는 이에 못미쳤다. 그러나 우리의 보유세제는 영미계 이론모형의 틀과는 매우 상이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입수도 불가능해서,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논의는 부동산보유세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보유세의 근간인 종합토지세에 관한 3개연도 미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소유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토지관련 세제들이 지가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 시계열자료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도입 목적으로 명시된 ‘토지소유분포의 개선’ 효과와 ‘지가

안정’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마침 정부는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재산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입법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15년간 시행된 종합토지세의 시행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확인하여 향후 부동산보유세 개편의 구체적 방안마련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종합토지세의 토지소유구조 변화효과

토지자산 소유분포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개인 모집단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토지과표 기준으로 1993년, 1996년, 2003년의 토지소유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654('93)→0.671('96)→0.650('03)으로 변화하여 1996년에 다소 증가한 토지소유불평등도가 2003년에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3~1996년 기간은 평탄한 지가안정기로서 1996년도 토지과표의 100% 공시지가 전환을 위해 직전 2년간 과표현실화율을 급등시켰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표 기준으로 토지편중도를 완화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1996~2003년의 기간은 지가가

종토세가 개인의 토지소유에 미치는 효과는 설혹 동일인의 두 시점간 토지소유량 및 토지소유구성 변화를 원시자료를 통해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합토지세만의 효과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현재의 종합토지세 구조 내에서 과표현실화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던 1990년대 전반기의 토지보유세 강화정책의 시행경험은 정책당국이 의도했던 소유구조 형평화라는 정책목적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저점(trough)에 도달한 후 2003년 초까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과표는 2000년과 2003년에만 인상되고 대체로 과표현실화율이 30% 초반에 머물렀던 시기로 여러 가지 경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때이다. 종토세 개별물건 과세자료를 개인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확인번호로 집계하면 해당 3개 연도에 각각 총 840만건, 959만건, 1,228만건에 달하여 처음 3년간은 119만명, 그리고 나중 7년간은 269만명의 종토세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토세 납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명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토지가액이나 면적 기준으로 집계한 한 사회의 실질적인 토지소유분배가 보다 공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가 없다.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과 종토세 과세대상면적이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토지소유자 수의 증가는 대부분 토지의 분필이나 주택공급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특히 1996~2003년 기간중 종토세 최저 과표구간 내에 속한 토지소유자들 중 공동주택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36.5%에서 46%로 거의 10%p 증가하였으며 최저 과표구간 계층에서 토지소유자가 188만명이나 증가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이는 동 기간 중 분양된 아파트의 신규취

득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2003년의 경우 1996년에 비해 토지소유자 양 극단 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그 중간 계층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토지소유집중도는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과 2003년 양 연도에서 모두 발견되는 723만여명 납세자의 토지소유분포를 1996년을 기준(base)으로 하여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면적은 줄고 필지수는 늘었지만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의 상승으로 종토세 과세대상 토지가액과 과표액이 증가하여 세부담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종토세가 개인의 토지소유에 미치는 효과는 설혹 동일인의 두 시점간 토지소유량(면적, 가액, 필지수 등) 및 토지소유구성(위치, 용도 등) 변화를 원시자료(micro raw data)를 통해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합토지세만의 효과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현재의 종합토지세 구조 내에서 과표현실화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던 1990년대 전반기의 토지보유세 강화정책의 시행경험은 정책당국이 의도했던 소유구조 형평화라는 정책목적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용용도별 차등과세를 하는 종합토지세는 경제인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왜곡적 조세(distortionary tax)이다. 하지만 저과표계층에 속하는 납세자의 경우 절



B5변형/131면/2004. 12/
값 6,000원

대적인 세부담액이 높지 않아서 토지소유 구성내용을 변화시키지 못한 반면, 고액 납세자의 경우 인별합산 및 누진세율구조의 영향으로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과세대상 토지소유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 최고 과표구간인 50억원 초과 계층에서는 토지소유면적이 40% 가까이 줄어든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종토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및 등록세·취득세까지도 고려한 동태적인 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토지소유 정도가 낮은 가족구성원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토지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절세방법이 존재했었고 이를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활용했을 수 있다.

한편,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인 1975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세 및 토지관련 조세들이 우리나라의 지가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벡터자기상관 (VAR) 모형 내에서 탈이론적 (atheoretic)으로 살펴보면, 보유과세의 경우 충격이 가해진 직후부터 바로 지가변동을 하락 효과를 보이며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큰 편이었다. 2년 이후에는 점차 그 효과가 줄기 시작하지만 8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종합토지세 시행의 경험들

토지소유가액을 인별로 합산한 후 이용용도별 3개 유형으로 차등과세하는 조부유세적 성격의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운영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주요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보유세 강화정책은 종토세 과표현실화를 제고 (및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누진세율 과표구간의 상하한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 및 과표 인상시 과표구간이동 (bracket creep)에 따른 세액급등효과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종토세의 전체 평균세율은 0.12~0.14%로 대체로 큰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 과표구간의 실효세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높여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최고 과표구간은 그 해당인원도 적으면서 실효세율이 1.25%로 이미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한계법정세율을 두 자릿수 이상의 %로 설계하지 않는 한 소기의

종합토지세의 실효세부담이 그리 높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인별 합산 및 급격한 누진세율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토지과세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과세당국의 확신이 낮았고 납세자의 납부세액 확보의 애로에 따른 조세저항을 감안하여 낮은 과표현실화율 정책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셋째, 저과표계층에서 고과표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의 비율인 과표현실화율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종합합산대상토지를 보면, 전체 과표현실화율은 36.05%이고 저과표계층들에서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과표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4.8%로 낮아지는데, 1996년 이후에는 계층별 편차가 축소되었다.

넷째,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개인 및 법인 등의 실효세율은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과표현실화율도 높았다. 법인 등을 포함한 전체 납세자가 소유한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실효세율과 개인의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실효세율 격차는 상위 과표구간으로 갈수록 커져서 토지를 외연적(extensively)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예, 유통업 등)의 업무용 토지 소유 법인사업자들은 과세구조상 실효세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다.

다섯째, 종합토지세의 실효세부담이 그리 높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인별 합산 및 급격한 누진세율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토지과세평가(valuation)의 정확성에 대한 과세당국의 확신이 낮았고 납세자의 납부세액 확보(liquidity)의 애로에 따른 조세저항을 감안하여 낮은 과표현실화율 정책을 지향

하게 된 것이다.

여섯째, 각 연도마다 (토지)과표현실화 달성 목표치를 결정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과표현실화율을 일정%p씩 인상시켜 수년 뒤 과표현실화율이 공시지가 대비 몇 %가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분모인 공시지가나 市價가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된 것인데, 이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되는 것이지 정책당국의 의지대로 가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4-11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j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주>

조세 정책

앞서가는 홍콩 세제(稅制)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세계개혁에 관해 무언가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찾아 달라는 달갑지 않은 과제를 코니 맥과 존 브룩스 전(前)상원의원에게 맡겼다. 그런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고 간명한 세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홍콩 만큼 좋은 모델이 없을 것이다.

수년 전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이 ‘홍콩의 간명하고 낮은 세금은 홍콩을 놀라운 경제적 번영으로 이끈’ 주된 원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홍콩 세제의 주요 장점은 이미 아시아에서는 광범위하게 모방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홍콩은 급여소득의 25%까지 세금공제와 13,000달러까지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를 인정한다. 그리고 성인교육과 노인친척의 부양, 퇴직저축계획 등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홍콩의 인적 세금감면은 아주 관대하여 피고용자들은 급여에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고액 급여자는 인적 감면을 포기하고 16%의 ‘표준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홍콩에서는 단지 최상위 2%의 고액 급여자들만이 표준세율을 적용받고, 또

그들이 전체 급여세의 거의 절반을 내고 있다.

지금부터 10여년 전 표준세율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나는 그것을 일종의 ‘대안적 최고세율’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들이 한 쪽짜리 세금신고서에 급여액과 공제액을 기입해 제출하면 정부가 그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낸다.

그러나 표준세율이 홍콩의 세제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에는 하지만 표준세율 자체가 홍콩의 세제를 더욱 간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최적세율에 대한 학계의 연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최고소득 수준에서 한계세율이 최저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직까지 홍콩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홍콩은 인적 감면을 제거함으로써 평균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한편, 최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을 20%에서 16%로 인하하였다.

홍콩의 세제를 유난히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익)에서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또 피고용자들이 급여에서 모든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사회보장세나 일반적인 판매세 혹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 수입에 대한 관세나 개인금융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홍콩의 세제는 ‘이중 세금’이라고 불린다.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율과 법인 이익금 17.5%, 재산소유자와 개인 기업 16%의 단일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낮은 법인세율은 급여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명목상 두 배나 높지만 거의 아무런 세수도 거두지 못하는 미국과는 현저한 대조를 보인다. 홍콩 기업들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법인세를 낸다. 따라서 주주들의 배당금에는 추가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업이 재투자한 이익금은 장차 더 많은 기업소득을 창출하므로 자본이득에 대해 개인에게 추가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홍콩 기업들은 이자지출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회사채로부터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당하다. 조세대청성원칙에 따라 지출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경우 그 수입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자소득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개인이 별도로 그것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단지 법인과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자공제를 포기하는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쉽사리 홍콩과 유사한 세제를 채택할 수 있다. 일부 세율은 조금 올려야겠지만 생각만큼 크게 높일 필요는 없다. 홍콩 세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그 우수성이 이미 50년간이나 현실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 타임스, 앨런 레이놀즈(美 케이트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의 파급효과

- 영업세 부과기준 확정 등 규제 강화 -

- 중국은 지난 5월 11일, 상해시 등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가격 안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
 - 이는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음

□ 이번 조치 이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혼란이 초래

되었던 상해시의 경우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 타지역도 일시적으로 주택거래가 주춤하고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의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로 투자리스크가 커진 주택매매는 주춤해지고 있지만, 상해시 등 대도시에서는 대형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오피스 빌딩 등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신정책의 주요 내용

- 미완공 공정에 대한 조정 촉진
 - 시공인가 후 2년 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하여 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토지관리 강화
 - 토지의 공급구조, 공급방법 및 공급기간에 대한 조정을 단행하여 주거용지 가격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과도한 지역은 주거용 토지공급의 비율을 높이고, 중·저가의 일반주택용 건설부지 공급량을 집중 확대
 - 주택건설부지 계약 후 정해진 착공일을 1년 경과하고도 미착공시에는 벌금을 징수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착공하지 않는 경우는 무상 몰수할 수 있음
- 영업세 과세가 되는 고급주택에 명확한 기준 설정
 - 5%의 영업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결정은 건축 용적률이 1.0 이하, 주택건축면적 120sm 이상, 실제거래가격이 동일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상 등 3가지 기준에 따름

- 일반주택 건설의 촉진
 - 일반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
 - 주택면적과 판매대상을 제한하고, 개발건설 코스트 다운을 실현하고, 건설업자의 이익을 3% 이내로 억제
- 시장질서의 회복과 위법행위 단속 강화
 - 미준공 주택의 전매 금지
 - 부동산 개발회사 및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위법행위는 엄격하게 단속
- 시장동향의 감시 강화 및 정보공개 촉진
 - 각 지역에서 부동산시장 동향 감시 및 강화
 - 정책에 관한 정보공개도 촉진

◆ 신정책 이후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 동향

- 상해시
 - 이번 주택안정화 조치의 주 타깃은 상해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투기의 과열이 심각한 상황임
 - 상해시는 1999년 8월 이후 주택거래시 면제했던 영업세를 2005년 3월 7일부터 부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 5월의 조치는 영업세율은 5%로 같지만 과세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음
 - 상해시는 3월 초순 이후 영업세 부활, 주택대출금리 상승 등 주택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택거래가 주춤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금년에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판매활성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 북경시 및 광주시
 - 주택투기가 다소 과열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상해시에

- 비해서 수년 간 가격신장률이 낮아서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북경은 주택가격 급등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완공 주택의 전매 금지를 공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한편, 비교적 엄격히 시행되던 토지관리정책이 이번 조치로 더 엄격해져 토지공급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 일부 투자가 사이에서는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
- 광주시의 경우에는 주택구매가 대부분 거주목적의 실거래 위주여서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남

□ 대련시

- 고급주택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투기세력에 의한 대규모 거래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음
- 일반주택의 거래가격은 큰 변동이 없으나, 구매자들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KOTRA, 경제무역정보 6/17〉

미국 상속세 영구 면제된다 - 상원 합의

- 미국 상원이 극소수 일부 부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상속세를 영원히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
- 미 공화당 및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올 여름이 지나기 전에 상속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양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투표 방해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민주당원의 표도 확보했다고 말할
- 이 협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

원은 (법 개정안에) 주요 역할을 할 의원들이 대략적인 범위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함

- 상원 회담에 밀접한 보좌관들에 따르면 공화당 및 민주당 협상자들은 2010년 이후에도 상속세를 대폭 삭감하고, 상속세 부과대상도 1인당 상속재산이 300만달러 (30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현재는 상속재산이 150만달러 이상일 때에만 상속세를 내고 있음

□ 하지만 양당은 세율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 존 카일 공화당 정책위원장은 상속세 부과대상을 1,000만달러로 올리고 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맥스 바우커스 민주당 재무위 위원장은 상속세 부과대상을 300~500만달러로 높이를 원하고 있음

□ 그러나 양당은 여전히 올해 안에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믿고 있음

- 맥스 바우커스 민주당 금융위원장은 “잠시 주춤하는 것 같지만 (법통과에) 충분한 상원들이 상속세 면제를 원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

□ 상속세 논란은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조세법에 기인

- 당시 조세법에 따르면, 2001년도 55%인 세율을 연차적으로 낮추어 2010년 완전 감면함. 그러나 2010년이 지나면 세금감면 정책이 만료되어 세율은 다시 55%로 복귀함
- 부시의 ‘2001 조세법’ 이후 공화당 하원은 지난 회기 때 상속세를 영원히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상원 투표에서 법안 반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의석 가운데 60석이 모자라 입법이 좌절됨

- 당시 공화당 상원들은 상속세를 부자에 대한 불평등한 처벌이라며 개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상원들은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상속세 면제에 반대
- 그러나 공화당 및 민주당 간 이 합의로 수년 간 의회에서 논란을 겪었던 세금 논쟁에 중지부가 찍힐 전망

- 한편 미국은 재산 1,000만달러 이상의 인구가 600명, 500만달러 이상은 2,500명, 350만달러 이상은 4,500명, 150만달러 이상은 1만 8,800명 수준임

〈머니투데이 6/23〉

일본, 재정적자 대응 위해 소득세 인상 추진

- 일본 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됨

□ 일본 조세위원회는 “재정이 위기상황에 처했다”면서

- 빠르면 내년에 소득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21일 제안
- 위원회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밝힘

- 이시 히로미츠 조세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세금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본은 궁극적으로 현재 GDP의 36%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50% 이상으로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은 더 나은 사회복지를 원하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려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임

- 일본 재무장관도 세금인상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재정균형을 위해 세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일본은 오는 2010년 이후 재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동안 일본은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이 증가 최근 지출의 40% 이상을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해 왔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DP의 160%에 달하는 일본의 총부채는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임

□ 한편 조세위원회의 제안에는 최고소득세율을 37%에서 40%로 올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중간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음

○ 위원회는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봉급생활자들과 세금이 면제되는 주부 및 퇴직자, 실업자 등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시 위원장은 “일본의 조세시스템은 너무 관대하다”면서 “세금인상과 관련,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 한편 재무성은 소득세에 이어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가을까지는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의문임

〈헤럴드 뉴스 6/22〉

재정 정책

독일, 예산시스템도 시민 손으로

“우리는 45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서 겨우 타내는 노후 연금 아납니까. 그들은 단지 8년 임기 동안 주의원이었다는 이유로 평생 받아먹는다고요? 정말 분통이 터져요.”

지난 1월 독일 납세자연맹 뒤셀도르프 지부 사무실에는 성난 시민들이 걸어오는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뒤셀도르프 지부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의회법 개정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비롯된 파문이었다.

독일 주의회 및 연방의회 의원들의 수입은 ▲월급 4,807유로(약 6,345,240원) ▲추가급여 2,387유로(약 3,150,840원) ▲의료보험비 500유로(약 660,000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월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면제 대상이고, 노후보장비까지 다달이 3,000유로(약 3,960,000원)가 지원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장기불황으로 일반 시민들의 연금과 복지비용이 대폭 삭감되는 마당에, 의원들이 여전히 특권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모두 분개하기 시작한 거죠.”

지부 집행위원인 하인츠 비르츠는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월급을 받으면서 정작 자신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뒤셀도르프 지부는 의회에 세금면제 혜택 폐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관행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의원들의 차가운 반응뿐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믿을 곳은 시민의 힘밖에 없었다. 주의회 헌법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0.5%인 6만 6천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반드시 폐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폐지법안이 심의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순 없었지만, 이 경우 주민입법안을 발의한다는 다음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지난 1월 25일 집행위원들이 3명씩 4개조로 나뉘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쾰른 등 인근도시를 누빈 결과 7주 만에 목표치를 훌쩍 넘긴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3월17일 뒤셀도르프 지부는 시민들의 서명서류를 가지고 주의회 의장을 찾았다. 시민들의 뜨거운 분노를 감지한 주의회는 그 즉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후보장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추가급여 등도 모두 세금징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불길은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갔다. 라인란트 팔츠주에 서도 서명운동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주의회가 아예 선수를 쳤다.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뒤셀도르프 지부가 만든 개정안을 통째로 복사해 갔다. 중앙본부는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뒤셀도르프 지부는 시민 개개인의 요구를 바로 활동에 옮기고 있다. 몇 달 전 한 퇴직자가 뒤셀도르프 사무실을 방문, “보험금을 찾기 직전에 정부가 개인보험금에서도 14.7%의 세금을 떼도록 법규를 바꿨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을 들 때만 해도 ‘10만유로’를 기대했는데, 결국 8만 5천유로밖에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것이다. 뒤셀도르프 지부는 퇴직자와 함께 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최대한 지켜져야 해요.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놓고, 나중에 돈이 없다며 시민들의 주머니를 째짓돈 털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함께 태만한 업무로 세금납비를 초래한 공무원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의 입법을 요구중이고, 복잡한 세금체계를 뜯어고쳐 관련 법률이 맥주컵 받침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비르츠는 “이젠 예산시스템도 직접 시민의 손으로 고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6/9〉

대만, “미혼모도 좋다, 애만 낳아다오”

□ 대만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혼인 여부를 떠나 출산만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부터 20세 성년까지 매달 3천대만달러(한화 1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함

□ 13일 대만 언론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정책백서』를 통해 불임 부부를 위한 인공 생식기술 제고, 출산 자녀에 따른 세금감면, 교육비 지급, 부부 출산휴가 등을 통해 포괄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힘

□ 대만 주계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여성도 1.2%에서 2.45%로 늘어남

○ 지난해 대만의 출산율은 1.18명으로 전세계 출산율 2.8명에 크게 못 미치며 최저출산율인 홍콩의 0.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

□ 한 정부 관리는 “평생 결혼하지 않는 미혼인구가 25%에 근접하는 등 대만 사회는 ‘저혼인과 저출산’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회도덕과 배치되더라도 아이는 갖고 싶지만 결혼은 거부하는 여성의 출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

○ 이와 관련, 한 대만학자는 인구정책토론회에서 “대만 여성의 낙태율이 너무 높다”면서 “낙태를 앓고 출산했다면 저출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

○ 대만에서는 매년 1년 출산되는 신생아에 버금가는 28만~30만명의 태아를 낙태시키고 있으며 이 중 과반이 미혼여성에 의한 것임

- 한편 여성단체는 내정부가 셋째 아이에 대해 성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여성단체는 이 같은 정책이 미혼모 출산에도 혜택을 주는 등 ‘여성의 신체 자주권’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출산을 꺼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탁아시스템 미비가 원인”이라면서 “공립탁아소 확충을 통해 양육을 여성만의 부담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연합뉴스 6/13〉

미국, 경상적자 경착륙시 세계 막대한 피해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조정의 경착륙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옴
- 한은 조사국은 22일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가능성과 정책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큰 타격 없이 완만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
- 또 “경착륙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임
- 권성태 한은 조사국 해외조사실 차장 등 연구진들은 “경착륙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은 추정이 아니라 추측에 가깝지만 올해 발표된 한 연구는 연착륙 70%, 경착륙 10%, 중간 정도의 착륙 20% 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조정시기가 늦어질수록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미국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미국은 저축을 늘리고 아시아나 유럽 국가는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권성태 차장 등은 “미국은 재정수지 적자 감축이 중요하며 사상 최저수준의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해 금리인상, 주택가격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투자환경 개선과 환율 유연성 제고, 유럽과 일본은 경제구조 개혁과 비교역제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촉진이 주요 과제이다”라고 지적
- 이들은 또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폭의 미국 달러화 절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라며 “반면 달러화 절하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효과가 미미하고 적자보전만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임

- 한편 권 차장은 “보고서의 내용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은 소비를 하고 중국은 생산을 하는 구도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 것”이라며 “분석 내용이 한국 경제나 한국의 경제정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함

〈edaily 6/22〉

일본, 부동산 거품 후유증 심각

— 실업 증가·파산 충격 여전 —

- 부동산 거품이 전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음. 거품붕괴시 적잖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이 꺼진 지 1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최근 일본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자산시장도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80년대 거품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
-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경제확장기인 60~70년대에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한 후 80년대 들어선 수년 만에 땅값이 3배로 뛰는 광란상태로 바뀌었음

- 당시 은행과 기업들은 주센(住専)이라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을 내놓고 투자자를 유인함
- 그러나 90년대 들어 상황이 급변함. 일본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정부가 자산세율을 인상하는 등 대책이 쏟아져 나오자 니케이 225지수가 4만포인트에서 2만포인트로 폭락하고, 땅값도 동반 급락하기 시작함
- 사쿠라투자관리사의 이코노미스트 히가시노 다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당국의 조치는 가격상승세를 꺾는데 효과를 발휘했는지 모르나 가계경제와 기업의 재정수지를 황폐화시키고 금융회사에 불량자산을 축적시켜 결국 전체 일본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왔다”고 설명
- 주택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은행들은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으며 부실 대출액 규모는 90년대 들어 계속 커져 지난 2001년 34조엔(3,110억 달러)으로 정점에 달함
- 정부 지원만 바라보고 있던 은행들은 새로운 기업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른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음
- 주요 은행들이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거쳐 마침내 건전성을 되찾은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임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최근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오랜 기간 불황을 겪었고 증가하는 실업률과 파산으로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토로함

〈헤럴드경제 6/22〉

중국 지하경제의 5가지 악영향

- 중국국가통계국 치우샤오화(邱曉華) 국장은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국가경제의 약 10%에 달한다고 추정
-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특정 표본을 수집하여 집중 조사하는 표본조사법,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무회계감사법, 노동력 참여비율의 변동을 근거로 하는 노동력통계법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지하경제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해 내기는 어렵지만 중국국가통계국 치우샤오화(邱曉華) 국장은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국가경제의 약 10%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 국가경제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04년 현재 중국의 지하경제는 GDP(13조 6,515억위안; 1조 6,527억달러)의 10%인 1조 3,651억위안(1,653억달러) 규모로 볼 수 있음

◆ 지하경제가 중국에 미치는 악영향 5가지

- 첫째, 금융질서 교란
 - 대량의 지하자금이 국가 금융감독권 밖에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됨
 - 특히, 중국처럼 금융시장이 미성숙한 국가에서는 불법 자금이 은행과 증시,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가 거품(bubble) 경제를 만들기 쉬움
- 둘째, 대량의 세수유실 초래
 - 지하경제는 정부와 공공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가의 막대한 세수유실을 초래하게 됨
 - 또한, 정부가 이를 단속하는 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징세비용이 함께 늘어나게 됨

□ 셋째,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저해

- 지하경제는 투자, 생산, 취업, 저축, 소비지출, 수출입 등 주요 경제변수들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전반적으로 저해
- 중국국가통계국이 3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서만 650여종의 상품이 복제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범위는 490개의 시현(市縣; 한국의 시군에 해당)에 걸쳐 나타남
-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 전략에 큰 짐이 아닐 수 없음

□ 넷째, 사회안정 침해

- 지하경제는 통상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어 사회안정에 위해요소로 작용함
- 심지어 중국 일부 지방에서 있었던 독(毒)분유 사건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생산해 내면서 국민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까지 연결되어 국민정서에도 심각한 충격을 줌

□ 다섯째, 부(富)의 분배 왜곡

- 중국국가통계국은 지하경제의 성장률이 GDP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경제는 GDP의 2~3%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지금은 치우샤오화 국장이 밝힌 것처럼 10%선으로 커졌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GDP의 최고 20%까지 될 것으로 추정
- 지하경제는 사치성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분배 과정을 더욱 왜곡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음

〈KOTRA, 경제무역정보 6/21〉



정책흐름

1.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 '05. 6월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이 자료는 2005년 7월 6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에서 발표한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I.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과 평가

◇ 금년도 40만개 일자리 창출과 5% 성장을 위하여

- ①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 경기관리시책 추진
- ②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으로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③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등 민생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시책을 수립·추진

1. 적극적 경기관리를 위한 시책

□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작년보다 약 13조원 확대(87.5조원→100.2조원)하여 내수경기 회복을 뒷받침

* 주요사업비 집행(1~5월중, 조원) : (04) 67.3(42.3%)→(05) 81.8(48.1%)

○ 특히, 일자리 창출, 서민·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집중 시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

□ 종합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 BTL 사업 대상과 규모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3. 8)하고 05년 사업총한도액 및 사업별 한도액 국회제출(5. 20)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3. 25)하고, 부처별 선도사업은 사업자 모집공고 등 추진

□ 소득세(1%p)·법인세율(2%p)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04년말→05년말) 등 세제상 조치 시행(05. 1. 1)

□ 유가·환율 등 대내외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

○ 저금리 기조를 견지하고 일시적 금리 급등시 국채발행 물량조정 등을 통해 시장금리를 하향 안정

○ 원자재 수급동향을 수시점검하고, 국제 석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 등 구조적 대책 추진

○ 환율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정상적 요인에 의한 급변동에 대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 1/4분기 성장률이 2.7%를 기록하여 양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성장의 내용은 개선

○ 민간소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는 등 내수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 수출도 전년도의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일자리는 5월까지 월평균 23만개 창출(5월 46만개)

- 특히, 재정조기집행의 효과가 일자리 창출에도 점차 반영되는 모습

※ 일자리 지원사업 수혜대상(만명) : (05 계획) 46.2, (상반기) 37.7(80%)

※ 건설수주(%): (04.3/4)△20.8→(4/4)28.8→(05.1/4)24.8→(4)29.1→(5)53.9
(공공) △7.8 43.2 22.8 54.6 244.8

□ 소비자 물가는 6월 현재 3.1%로 안정세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의 저변 확대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중소기업 정책 혁신방안’(1. 17),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 대책’(6. 8),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방안’(6. 23) 마련

□ 외국인투자 촉진 및 해외진출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프라 조성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 내 첨단 외투기업 신증설을 07년까지 허용(5. 26)
- 외환제도 개선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6. 14)

□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금융허브회의(6. 3) 등을 통해 자신운용업 육성, 금융시장 선진화 등 과제를 구체화

□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문화예술·교통·운송·공동주택 등 11개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6. 4)하였고 부처별(15개 부처·청)로 자체 정비계획안을 마련중



□ 제도적 기틀은 점차 갖추어지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가시적인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할 필요

3.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시책

□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3. 23)하는 등 채무재조정 촉진
- 공적보증 방식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가 금년 2학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사전준비
- 임대주택 개편방안(4. 27),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6. 7)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5. 4)을 지속 추진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안을 마련(6. 7)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실시

□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상반기중 집중 실시

- 아울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장·단기 보완대책(1. 28)과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4. 6)하여 추진



□ 서비스업의 완만한 회복세 등 내수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소득 양극화 등 경제 양극화 문제가 완화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

* 서비스업 활동(%) : (04. 3/4) Δ 0.5 \rightarrow (4/4) Δ 0.2 \rightarrow (05. 1/4)0.7 \rightarrow (4)2.0 \rightarrow (5)2.4

* 지니계수(도시근로자가구) : (01)0.319 \rightarrow (02)0.312 \rightarrow (03)0.306 \rightarrow (04)0.310

* 5분위 배율 (04. 2/4) 4.93 \rightarrow (3/4)5.35 \rightarrow (4/4)5.69 \rightarrow (05. 1/4) 5.87

□ 美 달러화는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약세요인과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 정책금리 인상 전망 등 강세요인이 혼재

* 원/달러 : (04말)1,035 \rightarrow (05.3말)1015.5 \rightarrow (4말)997.1 \rightarrow (5말)1,007.7 \rightarrow (6말)1,025.4

〈환율·유가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KDI)〉

○ (실질실효) 환율 5% 하락 \rightarrow GDP Δ 0.3%p, 경상수지 Δ 57억불

○ 국제유가 10% 상승 \rightarrow GDP Δ 0.2%p, 경상수지 Δ 20억불

II. 하반기 대내외 여건

1. 대외경제 여건

□ 세계 경제는 유가상승 등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간 성장불균형은 지속될 전망

○ 미국·중국 경제는 건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유로 경제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성장률(IMF, %) : (02)3.0 \rightarrow (03)4.0 \rightarrow (04)5.1 \rightarrow (05^a)4.3

* 세계교역 증가율(IMF, %) : (02)3.3 \rightarrow (03)4.9 \rightarrow (04)9.9 \rightarrow (05^a)7.4

* 성장률 전망(IMF/OECD, %) : 미국 3.6/3.6, 중국 8.5/9.0, 일본 0.8/1.5, 유로 1.6/1.2

□ 국제유가는 당초 예상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세계수요 증가, 증산여력의 제약,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

* Dubai유(\$/B, 평균) : (04)33.6 \rightarrow (05.3)45.9 \rightarrow (4)47.2 \rightarrow (5)45.4 \rightarrow (6)51.1

* 05년 전망(6월, \$/B) : (美 CERA, 두바이유)43.5, (英 CGES, Brent유)50.8

2. 대내경제 여건

□ 하반기중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조정의 진전 등으로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높은 건설수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 설비투자는 국내기계수주 등 선행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증가세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

* 국내기계수주(%) : (04.3/4) Δ 6.6 \rightarrow (4/4) Δ 5.4 \rightarrow (05.1/4) Δ 6.8 \rightarrow (4) Δ 10.1 \rightarrow (5) Δ 14.7

○ 수출은 환율영향,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지난 2년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물가는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 낮은 총수요 압력, 수입물가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물가 여건은 양호한 상황

□ 시중 여유자금의 부동화로 자산시장 불안 야기 소지

○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활용되지 못

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금흐름 개선 필요

□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소투입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긴요**

- 투자 증가가 미흡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로 노동공급도 줄어드는 등 요소투입이 둔화될 소지
 - 특히, 기업의 투자결정이 신중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 증가에 한계
-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으며, 고급화·다양화되는 소비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면서 해외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
 - ※ 과도한 해외소비 증가는 「소비→국내생산 및 고용유발, 소득증가→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한편, 경기의 조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한 결과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으며**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중 종합투자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나
- 금년중 집행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

- ◇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활력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보다 집중할 필요
- ◇ 상반기 조기집행 결과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보완적 총수요 관리대책 필요

Ⅲ.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기본방향〉

- ◇ 경기의 빠른 회복과 함께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한 시책 마련에 주력
 -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한 투자활성화 조치 추진
 - 특히,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및 고용창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유도
- ◇ 선진경제로의 진입기반 구축과 경제양극화 완화를 위한 동반성장 과제들도 추진을 가속화
 - 금융·세제·공공·노사관계 시스템을 선진화
 -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해외진출·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진 통상국가로의 이행기반 마련
 -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구조조정과 혁신역량 강화
 -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복지 시책의 체감도를 제고
- ◇ 이를 통해 내년 이후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 구축

1. 경기 회복과 거시경제 안정

-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 기금·공기업의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 추가적으로 3.1조원 지출 확대
 - * 기금(8개) 1.1조원, 공기업(5개) 2.0조원 추가확대
 - BTL, BTO 등 종합투자계획과 민자사업을 하반기중 3.3조원 수준 집행하여 경기관리는 물론 새로운 투자방식의 전기 마련
 - * 종합투자계획 2.0조원(IT 등 예산반영분 포함시 2.5조원) 집행 예상
 - * BTO 민자사업(도로, 철도, 항만 등 29건) 1.3조원 집행 예상

○ 추정편성 여부는 향후 경기흐름, 공공부문 지출 확대와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

○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05. 6 말→ 05. 12 말)

□ 대형국책사업은 담당 PM(Project Manager)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조·이해당사자 설득노력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

○ 신도시·철도 등 직접적인 건설투자자과 고용창출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 위주로 20개 대상사업을 선정(4. 29)

* 20개 사업 투자규모 : (전체) 98조원, (05) 7조원 내외

□ 부동산·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

○ 8월 말까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시중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 사모투자펀드 등 자산운용업 활성화, 장기채권 발행 확대 등을 추진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2.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활력 재충전

□ 규제개혁과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

○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개선을 선별적으로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정(6. 24)되었으므로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하여 사안별·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
- 전반적인 허용 여부는 제2차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05. 12)에 포함

○ 각종 애로요인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민관 투자협의회’를 구성(6. 29)하여 구체적인 민간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해결책 마련

○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과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지속 정비

* 골프장 건설규제 등 사례별로 축적한 규제개선 성과를 관광·레저,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영업규제 등 산업별 차원으로 확대하여 개선방안 마련

○ 토지이용규제는 국민불편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

* 하반기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및 토지이용규제 정비계획 마무리(05. 8)

□ 창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투자활력 제고

○ 신용보증제도 개편(6. 23)을 통해 창업,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증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분할, 합병, 업종전환 과정에서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 중소기업자가 업종전환을 위해 보유자산 처분시 양도세 감면 등 세금지원, 중소기업 합병시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 창투자·창투조합의 투자관련 규제완화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 활성화(6. 8)

□ 핵심인력 양성과 기초과학 진흥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05. 8)

□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 국가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계획 마련 등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Connect Korea사업*(06년 시

행)과 함께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에 기업 등 외부자본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기반 마련

*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전국적인 컨소시엄 연계사업

** 산학협력단 현황(04. 9월 현재): 총 333개(전체 대학의 93%), 학교기업 132개

□ 민간투자자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세상 유인제도 연장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 연장
-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시에 적용되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시한(05. 12 말) 연장 추진

3.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

□ 서비스 산업이 성장 및 고용창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방과 혁신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최근 개방화, 고령화, 웰빙 등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고 있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상반기에 마련된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의 큰 틀에서 하반기에는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 * 분기별로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의료, 교육,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

〈사회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제고 방향〉

- (i) 교육은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 강화
 - 초·중·고에 대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및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을 합리적으로

로 설정

* 외국교육기관의 원활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9월 말까지 관련법령을 제정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단계 BK21 사업(06년 시행) 등을 통해 비교우위 분야로 특성화하고, 국립대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을 적극 유도
 - 대학정보 공시강화를 위해 인터넷 공시 의무화를 적극 추진

- 기업도시에 특수목적고 설립 허용과 함께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평가(05. 9월 말) 등을 통해 활용방안 검토

(ii) 의료는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 및 의료광고 제한 완화,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관련 규제 개선

(iii) 보육은 질적 개선을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 및 관련 제도 합리화를 종합 검토

□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하여 해외 여가수요의 국내전환 유도

- 수도권 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여건 마련
 -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규제를 합리화
- 경제자유구역 내 테마파크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광·레저관련 지역특구를 활성화
-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04. 9월 발표)을 조속히 완료

□ 지식기반서비스업(예: 사업지원서비스업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 현재 추진중인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

□ 하반기중 '10대* 서비스 개방종합대책'을 마련하여 DDA·FTA 협상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

*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

□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효과가 큰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금년 말까지 제정 추진

4.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 강화

□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력 강화

○ 금융통합법 1단계 작업으로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통합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

○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을 육성(6. 17)

- 투자펀드의 대형화·장기화를 유도하고 해외 국공채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펀드 운용·영업의 자율성 제고
-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최소출자금액 하향조정*, 부실채권 투자허용 등을 통해 PEF 활성화 도모

* 개인: 20억원 → 10억원, 법인: 50억원 → 20억원

○ 자산운용범위를 외화표시자산, 실물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신탁업을 활성화

□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세개혁을 추진

○ 세계화·정보화·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경제성장기반 확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 방안 마련

* 하반기중 두차례에 걸친 조세개혁 추진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단기-중기과제 개혁방안 확정 계획

○ 조세지출예산 법제화,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

한 시스템 구축 등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 국제거래관련 세제 정비 및 조세조약 개정 추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

○ IT·S/W분야에서 유망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 도입(05. 4/4)

* 구매대기업이 구매상품 특성상 기술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는 제도

○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05. 4/4)하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

□ 공공부문을 혁신하고 국가통계 인프라를 개선

○ 단년도 중심의 재정운영방식을 중장기·성과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 입찰·보증·감리 등 정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05. 9)하고 정부계약관련 정보제공범위를 확대*

* 현행 계약물량·예산액 외에 낙찰내용, 수의계약, 설계변경 등도 포함

○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통계인프라와 정보서비스 개선

□ 노사관계는 노사정 대화체제를 정상화하고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입법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 노사정 간 대화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

○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 관련 특별법 제정(05. 9)

□ 올해 예정되어 있는 FTA·DDA 협상 등을 통해 능동적인 대외개방을 추진

○ 한편, 대외개방에 따라 '무역조정지원법' 및 'FTA 관세특례법' 제정 등 국내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서비

스시장 종합개발계획을 마련

- 동북아 경제중심을 본격화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
 - 인천, 여수,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외국학교·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작업* 마무리
 -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시행령, 외국회사면허기준 제정 등
 - 한·중·일 3국간 동북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 가속화
 - 금융전문대학원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 전문대학원 설립(06년 개원목표)·지원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 외국금융그룹이 지주회사 형태로 아시아-국내 지역본부 설립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추진
 -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 마련(05. 10까지 연구용역 완료)

- 해외진출과 해외투자를 활성화
 - 수출보험기금 확충 등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해외투자 보험상품 개발 및 지원체제를 정비
 - 개인·기업들의 해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외환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외국환거래규정 개정, 05. 7. 1 시행)
 - 조세회피 방지에 치중된 현행 조세피난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반기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 금년도 의장국으로 APEC 정상회의(05. 11, 부산)와 재무장관회의(05. 9, 제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

5.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대비

- 하반기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05. 9)을 계기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본격화

-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05. 9)하고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05. 12)할 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퇴직연금제 조기 정착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교토의정서 발효, EU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친환경경제 구축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방안을 수립(05. 12)하고 환경산업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 기반 구축
 - 자동차, 유류 등 특소세를 환경친화적 세제로 개편 추진

- 고유가 추세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대책 추진
 - IEA를 중심으로 산유국-석유수입국 간 대화채널 등 협력체제 강화
 - 중동지역과 최우선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중동의존도 완화를 위해 비중동지역과도 양자협력 강화
 - * 동시베리아유전개발 및 송유관 건설참여 추진 등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자금지원 등 에너지절약시책 강화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개발 지역별 로드맵 수립 추진

6.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시책의 체감도 제고

- 일자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 시장기능을 통해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의 고용지원서비스 산업 육성
 -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추가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의 추가고용을 적극 지원
 - 청년고용을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중 국제회의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유해성이 없는 업종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 * 청소년의 응시를 불허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뉴스통신사업자 등 영업 및 자격시험의 요건완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에 대응하여 하반기 중 여성 고용촉진 종합대책 마련

□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

○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금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

* '학술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6. 30)

* 정부보증방식으로 4년간 4천만원 한도(전문대학원 6천만원),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

○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통해 근로에 따르는 육아부담을 경감

○ 근로소득보전세제(BITC)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개토론회를 거쳐 도입여부 결정

○ 스톱업선행 우리사주제 도입,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확대 등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05. 12)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관련 인력 확충, 금융기관 파산재단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권 공동추진 프로그램의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강화

□ 빈곤층이 일을 통해 탈빈곤할 수 있는 지원체제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규모를 확대

- 사업내용은 단순한 근로유지형보다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위주로 전환

* 정부지원 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자산형성 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시범도입 추진 검토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매칭펀드 지원(정부+민간기부금)

□ 자활공동체 창업을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 Credit)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자금 지원

○ 은행권이 공동기금을 자율조성하여 취약계층의 자활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Micro Credit 지원자금 등으로 활용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05년 20억원)을 창업초기부터 상담, 교육과 함께 지원함으로써 창업효과 제고

□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영세자영업자의 특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팅과 특례보증 및 Micro Credit과의 연계, 상권정보제공 등 대책을 추진(5. 31)

- 한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 재래시장대책(6. 1)은 재래시장과 인접상권을 동시에 개발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유 등에 대한 단력세율 적용, 운송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에너지 세계개편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5. 2)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추진

□ 경쟁 열위·탈락자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삶의 보장,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배려 강화

○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확대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안 국회제출(6. 9)

□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여 복지시책을 현장감 있게 추진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대하고 통합복지 콜센터 설치 등 복지관련 네트워크를 강화

IV. 2005년 경제운용의 모습

□ 이상의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복귀하면서 연간 4% 내외 성장률과 3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 전망
- 소비자물가는 3% 초반으로 지난해보다 안정
- 실업률은 3% 중반으로 지난해 수준 유지
- 경상수지는 유가상승, 환율하락과 내수회복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40억불 내외 흑자 예상

	04년 실적	05년 모습
· GDP 성장률	4.6%	4% 내외
· 소비자 물가	3.6%	3% 초반
· 실업률	3.5%	3% 중반
· 경상 수지	276억불	140억불 내외

□ 금년 하반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기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 경제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역동성을 살려내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
- 양질의 폭넓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과제

I. 경기회복과 거시경제 안정

1. 경기회복을 위한 경기관리

(1) 하반기 공공부문 투자 확대

□ 하반기중 공공지출과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여 재정이 건속 운용될 소지를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

- 기금·공기업의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분양주택 확대, 신도시 건설 등 성장촉진효과가 높고 추가지출이 긴요한 사업에 공공지출을 3.1조원 확대

* 8개 기금 사업: (당초) 7.2조원→(확대) 8.3조원

* 5개 공기업 투자: (당초) 20.7조원→(확대) 22.7조원

-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획과 민간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 종합투자계획 2조원(IT 등 예산반영분 포함시 2.5조원) 집행 예상

* BTL 민자사업 1조원, 고속도로 조기건설(ABS) 1조원

- BTO 민자사업(도로, 철도, 항만 등 29건) 1.3조원 집행 예상

* 추진중인 2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는 등 민자사업 확대노력 지속

□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추가 확대 여부는 경기흐름, 재정여건, 공공부문 지출 확대 추진의 경과 등을 보아가며 지속 검토

〈공공부문 지출 확대 사업〉

(금년 하반기 집행기준, 억원)

부 문	주요 사업
기금 ¹⁾ (10,731,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양주택 투자 확대 등(국민주택기금) : 5,200 • 실업급여 지급 등(고용보험기금) : 2,756 • 중소기업창업지원 등(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1,500 • 전원개발 용자 확대 등(전력산업기반기금) : 877 • 관광시설 확충(관광진흥기금) 등 기타 : 398
공기업 ²⁾ (2.0조원,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매입, 신도시 건설(주택공사) : 10,000 • 택지개발사업, 비축용 토지매입(토지공사) : 5,700 • 농업기반정비, 대단위 개발(농업기반공사) : 3,000 • 굴포천 방수로 건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수자원공사) : 500 • 배전설비, ERP시스템 구축(한국전력공사) : 800
종합투자계획 (2.0조원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L 민자사업 집행(국방부, 교육부 등) : 1조원 • ABS발행 고속도로 조기건설(도로공사) : 1조원
BTO 민자사업 (1.3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부산, 서울-춘천, 인천대교 등 도로 12건 : 0.7조원 • 부산신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등 항만 9건 : 0.2조원 •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전철 등 철도 5건 : 0.3조원 • 호남복합터미널, 수도권 매립가스자원화 등 기타 3건 : 0.1조원

1) 관광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건강증진기금,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국민주택기금

2) 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3) IT·에너지 투자 등 예산에 기반영된 사업 포함시 2.5조원

(2) 종합투자계획의 본격적 추진

□ BTL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05년 사업 총한도액 및 사업별 한도액* 국회제출(5. 20)

* 국가와 지자체 17개 분야, 128개 단위사업, 6조 1,969억원

○ 국방부(충주비행장 5. 11), 교육부(전북대·전주교대
기숙사 5. 25), 환경부(강진군 5. 31, 아산시 등 6. 1) 사
업공고 등 부처별 선도사업 추진

- 주관부처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실시협약 체결·
착공 등 선도사업 시행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 BTL 사업에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

고, 기존 민자사업 수준의 세제혜택이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 BTL 방식으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BTL 사업시행자
(Special Purpose Company)의 최소자본금 요건 완화
(현행 50억원→10억원)

○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개인출자자
의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 민자사업자가 BTO방식으로 사립대 기숙사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도로건설 적기 추진

○ 고속도로 운영권을 담보로 도로공사가 자산유동화증권
(ABS)을 하반기중 1조원 발행하여 고속도로 투자 확대

* 금년 7~8월중 1조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여 연내 전액 집행

○ 현재 추진중인 2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
하여 적기 완공 추진(부산~울산,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 민간사업자(도로공사·국민연금 컨소시엄)와 실시협약체결
협상 시작(5. 25)

○ 민간제안 도로사업(BTO)의 조기 추진

- 10개 민간제안 도로사업 중 05년중 6개 사업 우선 추
진, 3개 사업은 공고중, 나머지 3개는 10월 공고 예정

* ①평택~시흥, ②송현~불로, ③제2경인연결 : 05. 5. 10 제3
자 제안공고

* ④영천~상주, ⑤수원~광명, ⑥제2영동 : 05. 10월 제3자 제
안공고 예정

□ 사립학교 민자유치 3개 사업*(총사업비 1,023억원) 추진

* 건국대, 경희대, 대전외국인유학생 기숙사

□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8곳으로부터 신청받아 7월중 선정 추진

- 기업도시위원회에서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 도시의 취지, 조기가시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결정
- 선정된 시범사업 중 빠른 지역 1~2개 정도는 금년 말까지 공청회,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업도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3)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대형 국책사업 중 일부 사업이 환경문제, 주민보상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

□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마련·운영중

- 신도시·철도 등 직접적인 건설투자와 고용창출과 관련된 인프라구축 사업 위주로 20개 대상사업*을 선정
 - * 20개 사업 투자규모: (전체) 98조원, (05) 7조원 내외
 - * 인천공항, 경부고속철, 부산신항·광양항 등
- 사업별로 담당 'PM' (Project Manager)을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책사업 지원팀'을 재경부에 설치
- 사업별 현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경제정책조정 회의에 상정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 점검결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

- 재원상 애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 민자 유치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
- 환경문제, 지자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업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이해 당사자 협상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

2. 시장안정노력 지속

(1) 금융시장 안정

□ 거시가격 변수의 안정을 통해 조기 경기회복 여건을 조성

- 국채 분산발행 등 채권시장 수급안정 노력 강화
- 외환유출억제 중심의 외환정책 기조를 완화하여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을 개선
 - 환투기 등으로 환율급변동시 외환시장 안정노력 지속

□ 가계대출은 원활한 만기연장 및 적정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

-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자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제도 및 관행을 개선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실태점검 강화
 - 투기지역에 대한 동일차주의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수를 1회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LTV비율을 하향 조정*
- * 은행·보험: 주택담보대출 투기지역(APT, 10년 초과) 60→40%
- * 상호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투기지역(APT) 70→60%
- * 농협단위조합: 주택담보대출(APT) 70→50%

□ 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 유도 등 자금사정 개선

- 중소기업 전문CB를 활성화하고 신용보증의 만기 확대를 통해 대출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
- 네트워크론 참여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완화를 통해 생산자금 조기지원
-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개발·운용할 예정

(2) 시중자금 흐름 개선

-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다양화 추진
 -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REITs 등
 -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장기채권을 발행
 - 이와 함께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펀드의 조성·운영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
-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장운영기능을 개선
 - 현·선물시장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수료체계를 효율화하여 시장이용자의 거래비용을 절감
 - 장기 시장 소외 종목에 대하여 증권사들로 하여금 증권투자자를 위한 기업분석자료의 공급확대를 유도
 - * 05. 5월 현재 1,565개 상장회사 중 955개(61%)의 기업분석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

II. 성장활력 재충전과 선진경제 진입기반 마련

1. 성장활력 재충전

(1)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애로 해소

-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 등에 대한 규제개선을 선별적으로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05. 6. 24)되었으므로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
 - 전반적인 허용 여부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05. 12)에 포함
- 각종 애로요인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민·관 투자협의회(산자부·전경련 주관)'를 구성(05. 6)하여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해결책 마련
-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
 -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규제개선 방안은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심의·확정
 - 하반기에는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영업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 04. 8월에 출범한 '규제개혁기획단'은 06. 8월까지 물류·유통·환경·건설 등 65개 분야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선정·추진키로 한 총 1,000여건의 부처 개별규제를 하반기까지 정비
 - * 금융세제 179건, 산업통신 160건, 건축교통 151건, 노동환경 132건 등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의 제정(05 하반기 제정, 06 시행)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 6. 4일 국회 제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요내용】

규제의 단순화	- 용도지역·지구와 신설을 제한하고, 5년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추진
규제의 투명화	-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 견청취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정도면 고시 절차 마련
규제의 전산화	-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 안내서를 인터넷상으로 제공

□ 토지이용규제 정비계획의 마무리(05. 8)

○ 부처별로 지역·지구와 행위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을 기본방향으로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계획을 마련·추진

* 05. 4~6월중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7개 부처청의 토지이용규제 정비계획을 상정하여 확정(남은 8개 부처청은 8월중 마무리)

□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역특구제도를 지속 발전

○ 하반기에도 지자체의 요청을 심사하여 지정 확대

* 지역특구단 발족(04. 11) 이후 현재까지 16개 지역특구를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추가 요청사항*을 수렴한「지역특구법」개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 예시 :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2)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 산업은행 등을 통한 투자자금 공급 지속

○ 하반기중 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영자금 등 9조원 공급

□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민간투자가 취약한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 투자

* 연차별 1조원 설립목표에 따라 금년중 1,700억원 우선 조성

□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강화

○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i)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에 대해 15% 소득공제

ii) 개인투자자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시 원천징수하도록 특례 적용

iii) 한국벤처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급산입 허용

○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코스닥·제3시장의 소액주주 범위를 조정

* (현행) 발행주식 총수 3% 미만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확대) 발행주식 총수 5%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시에 적용되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시한(05. 12 말) 연장 추진

*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수입설비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때에는 산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가 감면대상을 지정·고시

(3)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

□ 개방화, 고령화, 웰빙 추세 등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

i)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 등 해외소비가 증가

* 가계소비중 해외소비비 비중(%). 한은: (00년) 2.0→(04년) 2.9

ii) 휴대폰의 급속한 수요확대 등으로 IT 소비지출이 증가

* 가계소비 중 IT지출 비중(% , 한은) : (00년) 8.4 → (04년) 9.2
 iii) 외환위기 이후 50대 이상 연령층의 소비가 위축

* 98~04년간 연평균 실질소비 증가율(% , 통계청)
 : (20대) 1.1 (30대) 1.8 (40대) 1.6 (50대 이상) △0.9

□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의료 및 레저·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교육·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개방 경쟁체제를 구축

*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수요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 모텔, 여관 등을 중저가 관광호텔(1~3급)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시개·보수 자금 지원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등 대책을 마련·추진

○ 체험 관광마을, 자연 휴양림, 어촌 관광단지 등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

* 농산어촌 체험관광 마을 : (04) 152개 → (09년) 687개
 자연휴양림 : 94개 154개

□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효과가 큰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성화 지속 추진

○ 지상파 DMB는 하반기에 수도권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 휴대인터넷(WiBro)은 연말까지 기술개발을 완료

○ 디지털 TV 보급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 가시청권을 금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추진

○ W-CDMA 서비스망을 23개 시까지 확충하여 서비스를 활성화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차세대 성장동력·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

○ 요양·주택·금융·여가 등 중점 8개 산업을 선정(05. 1월) 하여 범정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중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금년 말까지 제정 추진

□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을 6개월 연장(05. 6월→05. 12월)

*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 현황

• 승용차 : 20% 인하(10, 5% → 8, 4%)

• 보석·귀금속 등 기타 물품 : 30% 인하(7~20% → 4.9~14%)

(4) 분야별 서비스산업 경쟁력 대책

□ 상반기에 마련된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의 큰 틀에서 하반기에는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 분기별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의료, 교육,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

○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

- 초·중·고에 대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및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

* 외국교육기관의 원활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9월 말까지 관련법령을 제정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단계 BK21 사업(06년 시행) 등을 통해 비교우위 분야로 특성화하고, 국립대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을 적극 유도

• 대학정보 공시강화를 위해 인터넷 공시의무화를 적극 추진

- 기업도시에 특수목적고 설립 허용과 함께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평가(05. 9월 말) 등을 통해 활용방안 검토

○ 다양화·고급화된 국민의 의료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제고

-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

- 의료광고의 범위·매체 제한 완화,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관련 규제를 개선

* 7월 중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상정 예정

○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유인을 강화

- 보육은 질적 개선을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 및 관련 제도 합리화를 중점 검토

○ 해외 여가수요를 국내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확충

-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수도권 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인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04. 9월 발표)을 조속히 완료

-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레저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관광·레저관련 지역특구*를 보다 활성화

* 예: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여수오션리조트특구 등

○ 컨설팅, 디자인, 유통 등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 2차에 걸쳐 제출한 DDA 서비스업 개방계획(안)*을 토대로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10대 서비스** 개방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

* 03. 3월 1차 개방안 제출, 05. 5월 2차 개방안 제출

**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

(5)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

○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

*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디지털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바이오 신약/장기

○ 공공부문 우선구매 활성화*, 대외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사업화를 촉진

* GS(Good Software) 인증제품 구매시 구매자 면책 등

□ 핵심인력 양성 및 기초과학 진흥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05. 8)

○ 금년에 확정된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05. 4)」*를 차질 없이 추진

* 정규직 300인 이상 정부산하기관(90개)에 대해 05~09년간 매년 이공계 인력 신규채용 비율을 5% 확대

○ 기술혁신의 근간인 수리과학 연구수행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05. 10)

□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및 성과의 확산

○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05 하반기)

* 한국형 고속철도, 자기부상열차, 소형발전용 가스터빈,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퇴행성뇌질환 치료약물, 대형위그선

○ 대덕연구단지를 실리온 벨리와 같은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예관한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05. 7)
-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종합계획」을 수립(05 하반기)
 - 기술평가 역량의 확충 및 기술평가에 기초한 자금조달 활성화
- 성과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 확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5. 30일 국회 제출)하고 평가 시범실시
-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분야로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속 확대
 - * 재정투자 증가율(04~08) : 연구개발 8.7%, 총지출 6.3%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Connect Korea사업*(06년 시행)과 함께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에 기업 등 외부자본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기반 마련
 - *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전국적인 컨소시엄 연계사업
 - ** 산학협력단(04. 9월 현재) : 총 333개(전체 대학의 93%), 학교기업 : 132개
-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장(당초 05. 6. 30일까지 수입되는 분에만 적용)
 -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용대상 품목(현재 283개)을 일부 조정

(6) 부품·소재산업 육성

- 수출과 국내투자 간 연계강화와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 달성을 위해 부품·소재산업 육성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조직정비 및 '10대 전략 부

품·소재 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의 추진 체계 구축

- * 민간기업 중심으로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한 10대 전략 부품·소재를 선정하고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1조 5천억원 투자
- 한·일간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100대 품목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술확보 전략 수립

□ 개발된 기술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핵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급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

-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핵기업에 대해 R&D, 자금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 * 중핵기업 : 모듈부품 생산이 가능한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불 초과기업
-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확산
 - * 업종별 성과공유모델을 개발하고 산업기반기금의 대·중소기업 협력사업비(1,000억원)를 활용하여 R&D·설비투자 자금을 지원
-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수요대기업과 협력약정서를 체결한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 *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범위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을 지원(05. 11월까지 2,800억원 발행)

□ 자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해외로드쇼(미국·일본·싱가포르 05. 4/4)' 등을 통해 부품·소재분야 투자자금 유치 추진

2. 경제시스템 선진화

(1) 금융시스템 선진화

□ 제로 베이스의 금융규제개혁 지속 추진

- 금융규제를 기능별로 재검토하여 업종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
-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규제목록을 DB화하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법령개정 추진
- * 상반기중 규제목록 작성, 3/4분기중 규제 재검토, 9월 이후 법령 개정 등 추진

□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통합을 가속화

- 금융통합법의 1단계 작업으로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통합방안을 마련
-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투자업무와 투자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
- * 금년 말까지 통합법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법안 제출

□ 규제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업 육성

- 투자펀드의 대형화·장기화를 유도하고 해외 국공채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펀드 운용·영업의 자율성 제고
-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펀드 판매권유를 허용하는 등 판매채널 확대
-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최소출자금액 하향조정*, 부실채권(NPL) 투자허용 등을 통해 PEF 활성화 도모
- * 개인: 20억원 → 10억원, 법인: 50억원 → 20억원

□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신용정보 관련 인프라 확충

- 신용평가사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 및 우량정보의 집중과 신용정보 이용범위를 확대

□ 신탁업을 활성화하여 재산관리기능 강화

- 자산운용범위를 외화표시자산, 실물자산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기능을 강화

□ 보험산업의 종합리스크 관리 및 사회보장기능 제고를 위해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강구

- 보험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자산운용 등에 있어서 규제 완화방안 검토
-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국채시장의 선진화

- 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STRIPS) 도입을 위해 하반기에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06년부터 시행)
- 장기채 투자수요 충족 등을 위해 장기채 시장을 육성
- 5년물 이상 장기채 발행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
- 10년 초과만기 국채(물가연동국채를 중심으로)의 06년 발행 검토
- 전자거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장내거래를 활성화시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 미국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미증권감독위(SEC)에 우리 국채에 대한 면제증권 지정 추진(05 하반기)

(2)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개선

-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제조·건설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 실시(05. 7. 1 개정법 시행)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부당한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를 운영
- IT·Software 분야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 도입(05. 4/4)

* 구매 대기업이 구매상품 특성상 기술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는 제도

□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 방송·통신·의료·건설 등 주요 산업부문의 경쟁제한적 고시·예규 개선
-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05. 4/4)하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

□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 광고실증제도 강화, 통합공고제도 도입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장치 확대(표시·광고법 개정 추진)
- 아파트·상가 분양 등 피해빈발 분야에 대해 공시나 정보제공 등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

(3) 공공부문 혁신

□ 새로운 재정운용의 기본 틀 마련

- 단년도·통제 위주의 재정운영방식을 중장기·성과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시행
 - 상반기에 마련된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기국회 제출
- 중장기 관점(3~5년)에서 국가채무 상환실적·상환계획, 향후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담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 정기국회 제출을 통해 예산심의시 중장기 재정건전성 반영
-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가 08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정부회계법 제정과 정부회계기준(안) 마련을 추진(05 하반기)하고 06년부터는 시험운용 대상기관을 전 부처로 확대

* 05. 5월부터 12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시험운용중

□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과 기금관리제도 개선

- 투자기관 경영평가지표를 성과·혁신 지향적으로 개편(06년 평가지표에 반영)
-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을 제작·공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 자산운용의 목표수익률, 허용범위,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기준 등

□ 정부계약제도의 전반적 개선

- 입찰·보증·감리 등 정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
 - * 금년 9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요 개선방향〉

- i)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방지기능 제고,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강화 등 입찰제도 개선
- ii) 덤핑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보증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감리자의 지위·책임을 명확히 규정

- 아울러 정부계약관련 정보제공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도 제고(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5. 7)
 - * 현행 계약물량·예산액 외에 낙찰내용,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 국유지 관리체계 효율화

- 국유지 관리실태 파악과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종합적

- 인 전수실태조사(05~07, 국유잡종지 70만 필지) 추진
- 05년에는 22만필지(예산: 50억원) 조사완료 및 DB 구축
-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민간위탁방식 중심으로 전환
 - 용도폐지되는 재산과 실태조사결과 나타나는 미활용 유희지 및 무단점유지 관리부터 민간 전문기관에 우선 위탁
 - * 하반기중 국유지 위탁관리기준 정비·시행
- 국유지 시범개발사업(남대문세무서 부지 등 3건)을 착실히 추진하여 성공모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유지 개발의 방향 제시
 - 시범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사 선정(05 하반기)

(4) 조세제도 선진화

□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세개혁 추진

-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저출산·고령화, 국가간 조세 경쟁심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성장기반 확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방안 마련
- 하반기중 두차례에 걸친 조세개혁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단기·중기 과제 개혁방안을 확정 예정
 - * 05. 7월: 단기과제 개혁방안 확정,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방향
 - * 05. 12월: 중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확정

□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조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 예산제도 법제화 등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
- 근로자가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 마련
- 기부금 공제제도 단순화 및 적정성 재검토 등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제거래 관련세제 정비 및 조세조약 개정 추진

- 외국계펀드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의 합리적 정비
- 제·개정되는 조세조약에 조세조약 남용방지 장치를 포함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보유세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과세준비

- 과세대상자에게 사전안내(05. 11), 종사직원 교육 및 홍보
 - * 재산세(지방세) : 7월(건물분, 주택분 1/2), 9월(토지분, 주택분 1/2)
 - 종합부동산세(국세) : 12월(토지분, 주택분)

□ 보유세제를 연차적으로 강화하여 실효세율을 08년까지 03년의 2배 수준으로 인상

- * 보유세 실효세율(%): (03) 0.12→(05) 0.15→(08) 0.24→(17) 1.0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시 과표인상 및 실거래가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

□ 양도소득세제를 실거래가 과세체계로 개편

- (1차) 실거래가 과세대상 확대(06년 시행)

- 1세대 2주택자의 비거주주택
- 외지인 소유의 농지·임야·나대지 등 양도시
- (2차) 전면적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07년 시행)
 - *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체계 재조정 등 보완대책 마련

(6)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

- '법과 원칙의 틀 내 노사문제 자율해결'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정착
 - 주요 업종·사업장별 분규예방 및 조정노력을 강화하여 근로손실일수를 최소화
 - * 근로손실일수(6.30기준, 천일): (04) 408.6→(05) 161.2(△60.5%)
 - 교섭·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을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입법 추진
 - 노사정간 대화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정부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
 -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통해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 유연성을 제고
 -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등 임금체계 합리화 추진
 - *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05. 2 설치)를 통해 임금체계 합리화를 지원
- 노사정 대화체제의 정상화 추진
 -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노사정위원회법 개정)
 - * 일부 노동단체의 불참, 공익위원 역할의 한계, 의사결정 지연 등

(7) 국가통계 인프라 개선

-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통계를 신규개발·개선하고 지역통계 기반을 확충
 - 금년중 12종의 신규통계 개발과 11종의 통계 개선을 추진
 - * 경기동향지표(상품군별 판매지수, 전력판매지수), 체감실업지표 등을 개발하고 서비스업 통계 세분화, 인구추계 방식 등을 개선
 - 하반기중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
 - * 재경부 경제통계 개선안(05. 5) 및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의 수요조사(05. 4)를 바탕으로 국민계정, 국제수지, 복지통계 등의 속보성 및 통계품질을 높이고 문화산업 등 신성장산업관련 통계의 개발 및 확충을 추진
 -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계개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수요에 부응한 지역통계 개발을 지원
 - * 현재 4개 시범지역을 선정 : 강원도(관광통계), 전주시(산업활동, 고용, GRDP), 용인시(사회통계), 인천(서비스업동향)
- 통계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 통계정책 및 조정기능 확대를 위하여 통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 * 통계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능 부여
 - 통계목적으로 행정정보 활용방안을 검토·추진
 - * 통계작성에 국세, 연금 등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통계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 통계정보 서비스 개선
 - 국가통계정보 통합 DB를 확대 구축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의 연계 서비스를 연내 추진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8)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

- 05년 하반기중 중장기 소비자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 과제별 Action Plan을 수립

* T/F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소비자정책기능 조정, 단체소송 등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 * 9개 업종 개정, 위생방송 및 유선방송업 등 4개 업종 신설

□ 지방소비자 행정 지원 및 국제소비자 협력 강화

- 지자체 소비자 행정에 대한 비교·평가실시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 제고 및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운영 개선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한국 개최(06. 3) 결정을 계기로 소비자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 증대되는 국제소비자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분쟁처리지침 제정 추진

□ 관계기관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비자안전네트워크 구축, 소비자안전지수 개발 등 소비생활의 안전성 강화 노력

- 전국소비자상담망 내 소비자 교육교재 D/B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 정보제공 기능 확충

3. 선진통상국가 구현

(1) FTA·DDA 협상을 통한 능동적 대외개방 추진

□ 올해 예정된 FTA 협상과 공동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기반 마련

- 한·싱 FTA(05. 4 정부간 협정문 가서명)는 하반기중

국회비준 동의 요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 EFTA·ASEAN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빠른시일 내에 캐나다와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
- 미국과의 FTA 추진가능성을 검토하고 멕시코, 인도, 메르코수르와 공동연구를 진행

□ DDA는 04. 7월 Framework 합의 후 05. 12월 말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Modalities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

- 농업, 비농산물 Modalities를 포함한 협상분야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서비스산업의 경우, DDA 및 FTA 협상을 통한 개방이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 금년중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마련·발표할 계획

□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의 관련법령 정비 추진

- 국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무역조정지원법 제정
- FTA 이행에 필요한 일반법 성격의 FTA 관세특례법 제정
 - * 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특혜관세율 규정,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이행절차 마련 등
- 양자 세이프가드제도 반영을 위한 산업피해구제법령 개정 등

(2) 동북아 경제중심의 본격화

□ 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 본격화

-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주상복합·상업시설 등 총 16.7억불 규모의 사업 착공
 - 영종도 서북측 120만평 수준의 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
 - *美 Gale社가 167만평 부지에 총 127억불 투자 예정
- 관광·레저 hub를 목표로 개발 추진중인 인천 청라지구,

여수 화양지구를 하반기중 착공

-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3선석, 배후부지 2.5만평을 금년말 개장, 일본 등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부산과학산단 외국인투자지역(9.2만평)에는 기계·자동차부품 분야 외국기업 유치
-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투자재원 다각화 강구
 - 인천대교 건설에 금년중 2,86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고 전라선 복선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에 BTL 방식, ABS(자산유동화 채권) 발행 등 활용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외국학교·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유치작업을 가속화하여 금년 말~내년 초까지 착공
 -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시행령·외국지사면허기준 제정 등
- 농지조성비 감면,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분양기회 확대 등 투자 애로사항 해소 추진
-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PM(Project Manager)을 지정, 인허가권 소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 실현

□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우선과제 역량 집중

- 외환제도, 금융규제, 금융감독 및 경영·생활 환경 등 금융인프라를 경쟁국 수준으로 확고하게 구축
-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거나, 우리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는 선도 금융시장과 업종의 성장기반 구축
 - * 선도금융시장 :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
 - * 선도금융업종 :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투자펀드
- 국제금융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금융기관 적극 유치
 - * 외국금융그룹이 지주회사 형태로 아시아-국내 지역본부 설립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추진

-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금융전문대학원을 육성·지원하고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를 설치

□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인프라 확충

- 운송·보관·하역 등 3개 이상 물류업을 영위하는 물류전문기업에 종합물류업 인증 부여(05 하반기 인증기준 등 법령 정비)
 -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운용규정 정비(05 하반기)
-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SCM(Supply Chain Management) 및 해운·항만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하고 네덜란드 등 외국 물류대학 유치
 - * SCM전문대학원은 06년 개원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중 공모
 - ** 해운항만교육기관은 05. 7월중 선정하여 금년 2학기부터 운영
-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각각 물류정책과 물류시설의 총괄법으로 개편
- 한·중·일 3국간 동북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국제물류포럼 개최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협력활동 전개
-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 제정(05. 9)
- “한중일 유통물류정책백서” 발간 및 한중 물류표준화 구축방안 강구(05 하반기)

(3) 내실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SOC 등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최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 효력을 사업개시일 이전의 증가까지 인정(금년 중 조특법 개정)
 - * 현재는 증액투자분에 대해서는 증액투자 신고시마다 조세감면 여부를 새로이 판단

○ 산업구조고도화,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차별적 투자인센티브 개선계획 마련

* 금년중 투자인센티브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05. 5~10월 말)

□ 외국인투자 관련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 04. 1월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과제(161개)의 지속적인 추진(분기별 실적점검)

* 당초 151개 과제였으나 05. 5월 10개의 신규과제 추가

○ EUCCK 무역장벽백서 등 주한 외국상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규과제를 발굴

□ 외국인투자 관련 IR활동 강화

○ APEC 정상회의(05. 11), 세계華商대회(05. 10) 등 금년중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투자 IR 기회로 적극 활용

* APEC 정상회담 기간(05. 11)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CNBC의 한국 주간특집방송 추진

(4)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 활성화

□ 전세계를 5개 거점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수주 확대전략을 추진

* 중동·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중국, 서남아시아, 러시아·CIS, 중남미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수주경쟁력 강화

○ 수출입은행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보험기금을 확충

* 수출중소기업여신지원(조원): (03) 2.3→(04) 2.9→(05 목표) 3.6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재원을 확충하고 사업규모를 확대(04년 2,748억원→05년 3,000억원 이상)

□ 수주확대를 위한 지원여건 개선

○ 정부투자기관과 관련업체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 진출 활성화

○ 플랜트산업협회 등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수주정보 DB 구축

□ 기술능력 제고를 통한 기업역량 강화

○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기술력 제고방안 마련

○ 건설분야 R&D 투자를 확대(05년 1,519억원)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시공능력 배양

□ 수주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실무조사단과 수주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

□ 해외투자 활성화 추진

○ 해외투자를 제약하는 외환규제의 완화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05. 7. 1 시행)

○ 국제개발금융기구(MDB) 발주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조유자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확대하는 등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

○ 기업의 위험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상위험뿐만 아니라 신용위험도 함께 담보하는 해외투자 보험상품 개발 지원

□ 외환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금년 말로 예정된 자본거래의 허가제 폐지*에 대비하여 사후관리방안 마련

* 외환거래법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금년 말에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될 예정

-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02. 4)에 따른 외환자유화 일정*을 조정하여 외환자유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추진

* 외환자유화 일정: 1단계(02~05), 2단계(06~08), 3단계(09~11)

□ 조세회피 방지에 치중된 현행 조세피난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건전한 해외투자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하반기중 ‘국제조세조정예관법률’ 개정안을 입안하여 정기국회에 상정

(5) 양자·다자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 한·미 양국간 정부와 민간경협채널 운영을 활성화하여 통상압력 강화에 사전대비하고, 투자확대를 도모
-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등 주요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도 등 신흥시장과 협력 채널 구축을 추진

□ 개도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EDCF 운용방식 혁신

- 중점지원국가에 대한 「국별 중기원조프로그램」* 도입, 지원절차 간소화 등 EDCF 운용방식 혁신을 통해 경제협력증진, 우리 기업의 시장개척 등 지원효과를 극대화

* 금년중 베트남·인니 등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향후 여타국가로 확대 검토

□ 지역별·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제협력을 추진

- 04. 5월 회원국이 확대(15→25개)되어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증대된 EU와는 투자, 산업·과학기술협력을 강화
- 인도·중남미 등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가의 경우, 공동연구 등을 통해 효과적 협력방안 모색
- 중국-인도 등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 연내 마무리(연내 국회 비준, 내년도 발효 목표)

□ 대외 금융협력 강화

- 금년도 의장국으로서 APEC 재무장관회의(05. 9 제주)의 성공적 개최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
- 내년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 수임에 따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ABMI)** 등 아시아 금융협력 가속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 CMI 계약규모를 05. 4월 말 기준(6건, 140억불) 대비 100%까지 확대(05. 6월 말 현재 7건, 240억불)
- ** ABMI와 관련하여 아시아역 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표준규범 마련 추진
- 미·일·중·아세안 등 주요국 재무당국과의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정책협의 및 정보교류 강화
- * 「한일재무장관회의」 신설 추진

(6) 남북경협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성공단을 남북간 분업생산의 성공모델로 개발

- 1단계 사업(100만평) 본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복핵 등 관련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

로 분양

* 시범단지(2.8만평)는 금년 내 기업입주를 완료하고 본격 가동

□ 남북교류 촉진 및 동북아 물류중심 구축을 위한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공식 개통하고 철도 연결공사를 완료

○ 나아가 대륙철도 연계를 위해 남·북·러 3자 회의를 통한 북한철도 실태조사, 경제성 분석 등 공동연구 추진

□ 민간차원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

- 당국간 협의체널을 통해 청산결제 본격 실시
- 남북교역 활성화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당국간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협회사무소도 조속히 설치
- 대기업계열사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제외 (05. 7 시행)

4.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대비

(1) 저출산·고령화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05. 9)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구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06~10년)을 수립 (05. 12)
- * 저출산 등 인구정책, 건강과 의료, 고용과 소득,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

□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05. 9)

- 자녀양육비 부담경감 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
-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등 검토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이 결정되면 자녀수

에 따른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 확충
- * 산전후휴가급여 국가 전액 지원(06년 중소기업부터 실시)
-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불임부부 지원방안 마련, 유산산후가급여 국가 전액 지원 등

□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05년 35천개)
- 고령자 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령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05 하반기)

□ 05.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 치매, 중풍 등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수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
- 05년 하반기에 「노인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

□ 노후생활 인정을 위한 퇴직연금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세제지원방안 마련

- (불입단계) 근로자는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사업주·기업에는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를 인정
- (수령단계)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방안 마련

□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이전을 통한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사전상속시 세제지원

- 65세 이상 연로자가 30세 이상 성년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 또는 가업재산을 사전증여시

-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
상세율(10~50%)로 정산(05 하반기)

* 일본의 경우 03. 4월부터 상속시 정산제도 도입 시행

(2) 친환경 경제체제 구축

□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발전·정유 등 8개 업종별 대
책반을 중심으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계획 수립

○ 제2차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 산업 및 경제 현실을 반영
한 협상대책 마련(05. 10)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방안 수립(05.
12)

□ EU의 유해물질사용규제, 재활용규제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능력 제고

○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규제 교육에서부터 공정진단, 시험
분석, 기술보급, 수출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 시험 분석방법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에코디자인 보급 및 환경컨설팅 육성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제품잔류수명 예측기법 등 재제조기술 개발 및 재제조
전문연구센터 지정·운영 추진(05. 12)

○ 순환골재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기준 마련(05. 8) 및 친
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환경산업 지원 강
화(05. 11)

□ 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

○ 05. 7~07. 7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소비자 가
격비율을 현행 100:70:53에서 100:85:50으로 조정

□ 자동차, 유류 등에 대한 특소세는 환경친화적 세제로 개
편을 추진

(3) 고유가 대응능력 제고

□ 에너지 분야의 양자·다자간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IEA를 중심으로 산유국-석유수입국 간 대화채널 등 협
력체제 강화

○ 중동지역과 최우선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중동의존도
완화를 위해 비중동지역과도 양자협력 강화

*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 및 송유관 건설 참여 추진, 한·러 자원
협력위원회 개최(05. 7), 남아공 등과 자원협력위 신설 추진 등

○ APEC 에너지·광업장관회의 개최(05. 10) 등 에너지
다소비국간 다자협력 강화

□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05~07)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 연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 의무화 등 관리체계 강화

○ 운수업체의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이행시 절약시설 투
자자금 지원, 고효율기기 구매장려금 지급품목 확대(4
→6개) 등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프로그램 추진

○ 지역특성에 맞도록 차별화하여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역별 로드맵 수립·추진

* 남해안-태양, 서해안-조력, 호남·충청·강원권-바이오매
스 등

○ 연료전지와 태양광·풍력 등을 결합한 Power Park 조성
및 연료전지와 단열재를 활용한 고효율 주택 시범 보급

□ 석유 등 해외자원 개발 확대로 공급 안정성 제고

○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 차세대 에너지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가스 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단」 출범

Ⅲ.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추구

1. 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1)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강화

- 기업혁신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벤처확인제도 개편(05 하반기)
 - * 현행 벤처확인제도 평가 및 개선안 연구용역(05. 3~6)
- 신산업·서비스업 분야의 경영혁신형 또는 성장형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모델 개발(05 하반기)
- 기술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술평가 보증제도 도입*, 기술평가 표준모형 개발·확산** 등 추진
 - * 외부기관의 평가결과를 기보 보증에 활용함으로써 기보 기술 평가단과 외부 평가기관 간 경쟁을 유도
 - ** 표준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등 정책자금 평가 등과 연계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확산을 유도

□ 정책자금 개편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 정책자금 핵심 지원대상을 창업 및 성장초기 단계 혁신형 기업 등으로 재설정하여 정책자금 차별성 강화
-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연계형 정책자금 지원(05년 100억원)
 - * 창업투자회사가 혁신형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연계하여 지원
- 정책자금의 편중·중복지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우량 중

소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원 제한 및 지원한도 하향 조정

- 정책자금 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자금과 컨설팅을 연계하여 지원의 실효성 제고

□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창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

- * 민간 금융시장에서 스스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기업이나 보증에 의해 연명하는 한계기업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보증 이용을 제한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료 인하(0.3%p),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을 통해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
 - * 예시: 기보 기술평가 보증비중 04년 15.2%→09년 60.0%
 - 신보 창업 보증비중 04년 0.1%→09년 10.0%
- 고위험-고수익의 기술기업에 적합한 기술평가투자보증*, 이익공유보증상품** 등 다양한 보증상품 제공
 - * 벤처투자자가 투자시 기보가 일정부분 보증하되 성공시 수익도 공유
 - ** 피보증기업이 사업 성공시 이익의 일정부분을 특별 보증료로 납부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분할, 합병, 업종전환 과정에서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 * 중소기업자가 업종전환을 위해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 감면 등 세금지원, 중소기업 합병시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 지식기반서비스업(예: 사업지원서비스업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 현재 추진중인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

□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공공구매 확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확대를 위하여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시행(05 하반기)
- *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가입제품에 대해 구매담당자 면책

(2)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관련 규제 완화 등

-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목적의 투자 허용
- * 현재는 최초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 인수, 합병을 위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장 5년 동안 허용
- 펀드매니저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펀드운영에 참여하는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을 시범 결성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 창업초기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30%(일반조합)에서 최고 50%까지 우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에 인센티브 부여
- '개발·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연간 1,000억원으로 확대

□ 창업보육센터 지원강화 등 창업보육기능을 활성화

- 05~10년간 자립운영이 가능한 창업보육센터(보육실 면적 1,000평 이상)를 현행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 BT·NT 등 장기보육 필요분야는 보육기간 연장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대학 내 공장등록 허용

□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 우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 대학·출연(연)의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 허용

(3) 영세자영업자 대책

□ 5. 31일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 가운데 하반기 중 시행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

□ 컨설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개별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소상공인 지원센터(전국 60개)에 「지역별 컨설팅본부」 설치 완료(지역신보, 컨설팅트협회 등과 연계)
- 50만원 내에서 컨설팅비용의 80% 정부 지원(사업전환·퇴출시 100%)
- 컨설팅 결과, 성장가능한 점포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 총 5천억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점포당 5천만원 이내)

□ 전국 상권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 상권정보를 DB화하여 밀집도 지수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

□ 기초훈련(2주) 후 3~6개월 무료 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알선 등 자영업자 재취업 프로그램 실시

- 8~9월중 일제구직 등록기간 운영, 직업적성진단 및 심층상담 제공

□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한시적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 실시(05. 9)

(4) 재래시장 대책

□ 재래시장과 인접상권 동시 개발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기능에 부합하는 새로운 다기능 복합상권으로 개발 추진

-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이전상인에게 점포전세금 용

자지원(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활성화

-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05년 1,068억원)
 - * 예: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도로 확충 및 건물 리모델링 등
- 진입도로, 주차장 정비 등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 허용
- 시장주변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비 감면 추진
 - * 하반기중 지방재정법 개정 후 지자체 조례개정 추진

□ 재래시장 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 선정 절차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통합·운영하여 사업기간 단축
-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지 매각을 허용

□ 전국시장상인연합회 설립과 전체 재래시장의 공동사업 추진

- 재래시장 우수상품 온라인거래를 위한 통합쇼핑몰 구축
 - * 온라인 디지털점포를 07년까지 18천개 분양(05년 8천개)
- 전국 또는 지역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05. 10)
 - * 현재 포항죽도시장, 청주·충주시장, 횡성, 화천 등 7곳에서 사용 중

2. 고용창출 노력 강화

(1)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고용기회 확대

□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충원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 * 우리 고용구조를 소득수준이 비슷한 시점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0만~400만개의 일자리 확대 여지가 있음

- 현재 시장에 의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안정적 발전기반 마련
 - 수익구조를 갖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원, 사업모델 구축, 지원법령 제정 등 제도화 방안 검토

□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추가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의 추가고용을 적극 지원

-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등 고용창출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교대제 전환,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대한 무료 컨설팅사업 활성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에 대응하여 금년 중 여성 고용촉진 종합대책 마련

-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여성 친화적 단시간 일자리 모델 개발
-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고학력 여성, 미숙련 여성 등에 대해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실시

□ 청년고용을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 중 국제회의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유해성 없는 업종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 * 청소년의 응시를 불허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뉴스통신사업자 등 영업 및 자격시험의 요건 완화

(2) 인력수요와 공급의 연계기능 강화

□ 고용인프라 개선, 개인특성별 서비스 제공 등 공공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개선

- 고객별 진단결과를 기초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

하고 상담·훈련 등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

- 고용안정센터 프로세스 재설계 및 성과계약제 실시,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고용안정센터 운영을 효율화
- 청소년·고령자·아르바이트 워크넷구축 등 고용정보망 확충

□ 시장기능을 통한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용지원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민간의 고용지원서비스 산업 육성

- 상담, 훈련, 알선, 파견, 전직지원, 채용대행 등을 종합수행하는 종합인력서비스 산업 육성
 - 금년중 민간인력서비스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 추진
- 공공부문 취업지원 서비스의 민간위탁 시범실시(06), 공공-민간부문 정보망 연계(05~07) 등 추진

□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

- 세부 부문별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진로지도·학교교육·직업훈련 등을 통해 적합한 인력양성에 활용

(3) 직업능력 개발체제 강화

□ 차상위계층,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고용기회 및 사회안정망을 제공

- 자활직업훈련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재취업(Re-start) 지원서비스 제공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를 도입하여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워크아웃대상 영세자영업자(15.3만명)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전직과 취업을 적극 지원(05 하

반기 시범실시 후 06년 확대 실시)

□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활성화

- e-learning 수강지원금제도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접근성 제고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확대(04년 30개→05년 40개), 현장출장훈련, 우수훈련과정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참여 촉진
- 실업자 훈련의 내실 있는 실시를 위해 훈련상담 의무제 및 훈련수당 현실화 추진
-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 직종 개발·보급

□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 산업인력공단을 평생학습지원 전문기관으로 기능전환
- 기능대와 직업전문학교의 통합·대형화·분권화 추진

3.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 배양

(1) 교육기회의 확대

□ 학자금대출제도를 신용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금년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

* 신용보증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안(학술진흥법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6. 30)

- 대출한도·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충
 - * 4년간 4천만원 한도(전문대학원 6천만원),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

- 재정부담은 줄면서 수혜인원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1조원을 20년간 대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기존방식보다 재정부담은 1/8 감소, 수혜인원은 약 17만명 증가

〈이차보전방식과 신용보증방식의 비교〉

구 분	이차보전방식(현행)	신용보증방식(개편)
보증방식(보증료,%)	-학부모 보증 -서울보증보험(10~11)	-정부보증(2~3)
대출한도(4년간, 만원)	2,000(등록금)	4,000(등록금+생활비)
대출기간	최장 14년	최장 20년
학생부담금리(%)	4.0	6.5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15개) 지원 사업,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등 저소득층*과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
 - * 만 5세아(8.1만명), 만 3~4세아(3.2만명) 교육비 지원 등
-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한 대안교육,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치료 교육교사 배치의 법적 기반 마련
 - *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 특수교육법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 보육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장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근로를 통한 자활기회를 제공
 - 저소득층·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만명) : (04) 27 → (05) 41
 - * 차상위계층 보육료 지원 수준(%) : (04) 60 → (05) 80 → (06 이후) 100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추진(우체국, 마을회관 등의 유휴공간 활용)
 - 취약계층 여성취업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 우선임대 추진(임대주택관리주체의 내부 관리규정 개정)

(3)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

□ 금년 초부터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타당성을 검토중

- * 재경부, 예산처, 복지부, 국세청, 빈부격차차별시정위 등 관계 부처와 학계,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
- 그동안 외국사례, 소득과약 실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

□ 앞으로 사회복지제도와의 조화,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방안, 도입가능한 모형 등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여부 결정

(4)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마무리

□ 서민경제의 안정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3. 23일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

- 05. 4~6월간 기초수급자 등 총 4.5만여명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채무조정 신청
- 금융권 공동추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5.5만여명이 채무조정을 신청(5. 16~6. 30일)
- 은행들은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규대출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중
 - * 특히, 일부은행에서는 휴면예금의 일부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규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 보다 많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관련 인력확충, 금융기관 파산재단*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등을 통해 법적 절차(개인회생, 개인파산)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 * 파산재단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17.4만명
-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계하여 다중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재조정 지원
 - * 대상채무자 126만명(단독 채무자 21만명, 다중 채무자 105만명)
 - * 참여 금융기관수: 금융권 공동추심프로그램 30개, 신복위 3,586개
- TV 캠페인광고, 공익광고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국 234개 시군구에 순회접수 창구 마련

(5) 우리사주 활성화와 퇴직연금제 도입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확대 등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도모

- 종업원에게 시가가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당해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05. 하반기)
- 비상장 법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상장·등록법인으로 확대
 -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05년 하반기)
 - *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상환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

- 연금이 사외에서 별도 펀드로 관리·운용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05. 12)

- 회사의 도산, 이직에 관계없이 연금수급이 보장되고, 다양한 투자수단 활용을 통해 운용수익 극대화가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노동부, 04. 12)

- 퇴직연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05년 하반기)

(6)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부담 완화

- 음식·숙박업 등의 경기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업종별 부가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조정폭 결정
 - *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부가율은 직전 3년간(02~04)의 평균 부가율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

□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업자와 법인이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납세제도 도입

- 소득세·법인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
- 복잡한 중소기업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특례세율 또는 표준세액공제제도 등으로 전환
- 정부가 전자장부를 개발·무상으로 공급하여 세무행정의 과학화 유도

□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한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

-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05. 7월 인상 예정인 등유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05. 7월 이후에도 현행세율 유지
-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운송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3년간(05. 7~07. 6) 경유세액 인상분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 농어민에 대해서는 비료·농약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시한(05. 12 말) 연장 검토

4. 사회안전망 강화

(1)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조치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추진
 - * 긴급생계·의료지원, 주거·기타 지원 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대상자 확대(약 6만명 추가보호 추정)
 - * (현행)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 (05. 7)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05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 * (04) 기초생활수급자 중 1~2급, 3급 중복장애인(12만명) → (05)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전체(26만명)
-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욕구과약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05. 6~9)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부자 가정의 아동양육비를 인상
 -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만원/월) : (04) 67 → (05) 200
 - *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만원/월) : (04) 2 → (05) 5

(2)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체제 강화

- 자활사업 대상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 1만명(04.상반기)→2만명(04.하반기)→2만(05)→3만명(06)

* 기초수급자(4만명) 포함시 6만명(05)→7만명(06)

- 근로형태에 있어서도 단순한 근로유지정보다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위주로 전환
 - * 정부지원 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 창업을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 Credit)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자금 지원

- 은행권이 공동기금을 자율조성하여 취약계층의 자활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Micro Credit 지원자금 등으로 활용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05년 20억원)을 창업초기부터 상담, 교육과 함께 지원함으로써 창업효과 제고

□ 취약계층의 자활 인센티브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시범도입 추진 검토
 -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매칭펀드 지원(정부 + 민간기부금)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 * 통합급여체계 보완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 광역자활지원센터의 활성화 등 취약계층 자활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급여 확대

□ 범정부적 「공공보건의료확충 5개년(05~09) 종합대책」 마련(05. 7, 총투자액 4.3조원 규모)

* 공공의료비중(OECD, 00년 병상기준, %) : 한국 19(02년), 미국 33, 일본 36, 프랑스 65

* 7월 마련된 공공의료확충중장기대책 및 의료산업육성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발전5개년계획」 발표(05. 9)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고, 지방공사 의료원 등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지방의료원법 제정추진)하는 등 공공의료체제 확립

○ 민간의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확충(05년 8개소, 480병상) 등 노인요양기반 마련

* 민간의 급성병상은 3만병상 과잉인 반면, 요양병상은 7만병상 부족

* 요양병원형 건보수가(일당정액방식) 시범사업 실시(05. 7 28 개기관)

○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 등으로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 의료급여 확충

○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의료급여 범위를 확대

* 차상위계층 중 12세 미만 아동, 국내에 입양된 아동(18세 미만)까지 의료급여 확대(05. 1)

○ 의료급여 지원항목을 확대하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비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를 추가(05. 7)

(4) 4대 사회보험 내실화

□ 국민연금의 인정적·효율적 운영

○ 적정부담-적정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장기 재정안정화 추진

* 연금급여(소득대체율, %) : (현행) 60→(05~07) 55→(08) 50

* 보험료율(%) : (현행) 9→(30) 15.9(2010년부터 5년마다 1.38%p씩 인상)

○ 최저생계비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소득(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 조정

* 현행 등급체계(1등급 22만원~45등급 360만원)

○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추진

* 복지부장관(위원장) 등 위원 21인 →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9인

○ 주식·SOC·해외투자 등 투자대상 다변화를 통해 연금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자영업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고용보험법 개정)

○ 현장요양지원체계 도입·시행(05. 9), 산재보험제도 혁신방안 마련(05. 11) 등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및 재정안정화 방안 수립

○ 적정적립금 규모 설정 및 요율체계 개선 등 고용보험 재정운용합리화 방안 마련(05. 4/4)

□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유지 및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06. 12 말) 이후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국고지원방안 등 제도개선안을 05년 하반기부터 마련

○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고액·중증 질환 위주로 보험급여를 확대(05년 최대 1.5조원)하여 보장성을 개선

* 건강보험누적수지(조원): (01)△1.8→(02)△2.6→(03)△1.5→(04)0.08→(05)e)0.08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실시(05.9, 약 80만세대 0.3조원)

(5)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04. 7~06. 6) 추진상황을 중간평가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총원계획(05년 1,830명)을 차질 없이 추진

* 부산진구 사회복지사무소 등 전국 9개소에서 실시중

-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연계·통합(129번)하고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

- 중앙정부, 지자체별로 기업,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집행 등에 관한 공동실천 사회협약 체결

*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활용

5. 부문간 균형발전

(1) 국가균형발전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6. 24일 발표)에 따라 본격적인 이전작업을 착수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토종합계획 수정

○ 9월 말까지 이전기관, 시·도 및 관계부처간 '이전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시도별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난개발·투기방지 대책, 토지보상·주민 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시행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전반적인 국토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확정(05. 4/4)

- 균형발전 사업간 유사·중복부문을 제거, 사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사업 체계화 방안을 마련·추진

○ 지역산업 진흥, 혁신클러스터 구축, 산학협력 등 균형발

전의 체계적 기반 구축

- 지방이전 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을 완화

○ 법인이 본사 근무인원의 50% 이상을 일시에 이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이전일 이전에 이전한 인원을 포함하여 50% 이상 될 경우에도 조세감면 적용

* (현행) 본사 근무인원이 일시에 50% 이상 이전할 경우에만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도 내국민면세점의 구매한도(현행 300달러) 확대 검토

(2) 농어업의 체질 강화와 농어촌 발전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집중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선방안 마련

○ 농업회계기준 표준안 마련 및 농업경영 CEO대회 개최(05. 12)

- 농업벤처의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 창출

○ 06~07년간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여 농업벤처 활성화 및 투자 촉진

○ 현재 운영중인 289개의 창업보육센터(BI)중 우수 BI를 선정하여 농업벤처기업 보육을 위한 보육실 확장 건립 지원

-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농지법 개정 추진)

○ 농지유동화 정보제공, 수탁관리·매입·비축을 주기능으

로 하는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영농 규모화 추진

□ **쌀산업 체질 강화 및 쌀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 하반기부터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 물량의 미곡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 시행
-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금년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05. 11~12, 고정직불금부터 지급)

□ **고품질 쌀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

- RPC의 경영혁신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 확대를 통하여 수확기 정부매입 부담을 완화
- * RPC(Rice Processing Complex)란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자동화시설

□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및 점검 강화로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및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시범사업 지속 추진
- * GAP : 생산·수확·처리단계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제도
- * Traceability :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종 정보·이력사항을 관리하는 제도

□ **장미·딸기 등 대외 로열티 부담이 큰 원예 육종분야에 대한 인력·예산 지원 강화**

- 원예연구소 및 품목특화시험장 육종인력 보강 및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 * 05~10년간 딸기 4,020백만원, 장미 4,756백만원 투자계획

□ **농어업인 복지여건 향상 및 농외소득 비중 확대를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추진**

- 농림어업인의 건강보험료·안전공제 보상지원 확대,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지속, 농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
- 시·도, 시·군 5개년 계획 수립(05. 8) 및 평가체계 구축(05. 하반기)

'05. 6월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 자료는 2005년 7월 5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05. 6월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05. 7. 5(화), 09: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 지난 6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8개) 공포안과

*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은 김종률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안임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및 종합투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3개)을 심의·의결하였음

□ 금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7. 8일, 잠정)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임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달라진 내용

1) 교육세법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시한 5년간 연장(재정경제위원회 수정사항)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유류 특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 <input type="checkbox"/> 등유·중유·LPG부탄 등의 특별 소비세액의 15% <input type="checkbox"/> 적용시한 : 폐지 ※ 종전 적용시한 : 05. 12. 31	<input type="checkbox"/> 적용시한 : 2010. 12. 31

※ 교육세 과세대상 및 세율(2005년 현재)

과 세 대 상	세 율	적용시한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0.5%		
특별소비세액	등유, 경유, 부탄가스, 석유화학 부산물	15%	2005. 12
	기타	30%	
교통세액	15%	2006. 12	
주세액	주세율 70% 이상	30%	
	기타	10%	

2)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추가(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 내용을 반영)

현 행	의원입법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input type="checkbox"/> 대상업종(28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등 <input type="checkbox"/> 감면내용 -지역·업종기준에 따라 5~15%(소기업은 10~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추가 * 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시한 폐지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 내용을 반영)

종 전	의원입법안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input type="checkbox"/> 재활용 폐자원(고철, 폐지 등) : 취득가액의 8/108 <input type="checkbox"/> 중고자동차 : 10/110 (적용시한 : '05. 6. 30)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중고자동차 : 10/110 (적용시한 폐지)

3)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김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 내용 반영)

* 경정청구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한 후 다시 점검해 본 결과 세액을 과다신고하였거나 과소환급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관청에 감액 경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현 행	의원입법안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기한 : 2년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기한 : 3년

4) 관세법

□ 과오납 환급청구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 내용을 반영)

* 과오납 환급청구권 : 납세자가 국가에 대하여 과다 또는 오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현 행	의원입법안
□ 과오납 환급청구기한: 2년	□ 과오납 환급청구기한: 3년

시행령 개정내용

1.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교통세법시행령·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06. 7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소비자가격 비율을 100:75:60으로 조정중이었으나

○ '05년 경유승용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 방지를 위하여 휘발유, 경유, LPG부탄 소비자가격 비율을 '07.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 유류세율 총액은 동일하게 유지

구 분	종 전		개 정 안		
	법정세율	실행세율	법정세율	실행세율	
휘 발 유	630	545	630(-)	535(△10)	⇒ 주행세율을 인상(21.5→24.0%)하여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
경 유	319	287	365(+46)	323(+36)	
초저황경유	319	277	365(+46)	313(+36)	
LPG부탄	245	223	210(△35)	179(△44)	⇒ LPG판매부과금을 인상(25.3→36원/ℓ)하여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

- 경유 : '05. 7~'07. 7월까지 5%p씩 인상

- LPG부탄 : '05. 7월 3%p 인하

구 분		'04. 7~'05. 6	'05. 7~'06. 6	'06. 7~'07. 6	'07. 7월 이후
경 유 교통세율 (원/ℓ)	현 행	319	362	404	404
	개정안	-	365	404	454
LPG부탄 특별소비세율 (원/kg)	현 행	420	515	612	612
	개정안	-	360	360	360

○ 세율조정에 따른 소비자가격 효과

(단위 : 원/ℓ)

구 분	현 행	개 정 후	증 감
휘 발 유	1,402	1,402	-
경 유	1,035	1,098	+63
LPG부탄	725	681	△44

* 6월 전국 평균가격 기준(한국석유공사)

나.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후속조치 일환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마련

□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과 장애인차량 등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와 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인상하는 한편, 교통세율·특소세율을 단력세율을 적용하여 하향조정

다. 등유·부생연료유의 세율을 '05.6월 수준으로 유지

□ 중산·서민층이 난방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부생연료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탄력세율 적용)되도록 하여 부담 완화**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05. 7월부터 등유 특소세율이 리터당 중전 154원→178원으로, 부생연료유는 중전 112원→130원으로 인상될 예정

현 행		개 정 안	
	법정세율	법정세율*	실행세율
등 유	154원/ℓ	등 유 178원/ℓ	154원/ℓ
부생유	112원/ℓ	부생유 130원/ℓ	112원/ℓ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법정세율임

○ 세율조정에 따른 소비자가격 효과

(단위 : 원/ℓ)

구 분	현 행	탄력세율 미적용시	탄력세율 적용시
등 유	862	892	현행과 동일

* 6월 전국 평균가격 기준(한국석유공사)

2. 종합투자계획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BTL 사업시행자(SPC 형태로 설립)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50억원 → 10억원)하고
- 국민연금이 5% 이상 출자하여 설립된 SPC에 대해서도 (중전까지는 SPC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반드시 5% 이상 출자하도록 하였음)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요건을 갖춘 SPC가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최소자본금 : 50억원 -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 존속기간 2년 이상 등 - 직원, 상근임원이 없을 것 등	○ BTL사업의 경우 요건 완화 - 최소자본금 10억원 - 국민연금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BTL(Build-Transfer-Lease) :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 인정 국가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 인정

BOT(Build-Own-Transfer) :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소유권이 인정, 기간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이 자료는 2005년 6월 28일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기획관실에서 발표한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요약)」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보고서 작성 배경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전반적인 운용 실태에 관한 보고서로서
 - 부담주체인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금 징수실적 및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 효율적인 부담금 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거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II.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 부담금 수 : ('03 말)100개 → ('04 말)102개
 - '04년에는 2개 신설 :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총량 초과부담금(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 '07년부터 징수 예정)
 - '90년대 환경·건설교통관련 부담금 신설로 부담금 수 급증
- '69 '79 '89 '99 '03 '04
 (부담금 수) 7개 14개 34개 95개 100개 102개

□ 부담금 징수규모

- 부담금 징수액은 10조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0.9조원 증)
 - 주요 증가요인은 부과금 단가 환원에 따른 석유수입·판매부과금(2,127억 증), 담배반출량 증가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1,041억 증), 수도권 중대형건축물 증가로 인한 과밀부담금(827억원 증) 등

<2004년도 주요 부담금 증가현황>

(단위: 억원)

부담금명	'03실적	'04실적	증 감	증가사유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8,106	10,233	2,127	부과금 단가 환원(8→14원 / l 당)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7,020	8,061	1,041	부담금 인상(150→354원 /20개비, '04. 12. 30)에 따른 담배반출량 증가
과밀 부담금	434	1,261	827	수도권 중대형 건축물 증가
전력산업기반 기금부담금	9,971	10,652	681	전기 판매량 증가
환경개선부담금	4,829	5,247	418	시설물 등 부과대상 증가
국외여행자 납부금	516	888	372	징수대상 확대(출국내국인→출국인)
합계	91,831	100,415	8,584	9.3% 증가

□ 부담금 사용내역

- 산업·정보/에너지 분야가 25%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환경(18%), 보증·금융(16%) 분야 순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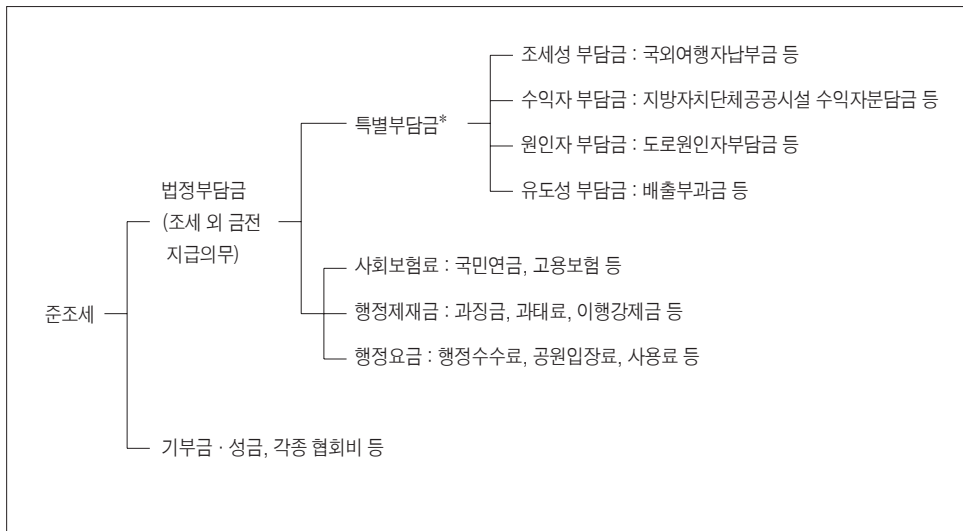
〈2004년도 부담금 사용분야별 세부내역〉

	합 계	산업·정보/에너지	환경	보증·금융	건설교통	보건의료	기타
금액(억원)	100,415	25,094	18,217	15,633	8,164	8,061	25,246
비중(%)	100.0	25.0	18.1	15.6	8.1	8.0	25.1

Ⅲ. 향후 부담금 운용방향

□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

□ 부담금의 분류



*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은 특별부담금만 포함

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노력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하여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확대를 억제
-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요건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부담금 운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정비

〈부담금의 개념 및 분류〉

□ 부담금의 개념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해 관련 원인자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부담

<중앙/지방간 2004년도 부담금 사용비중>

(단위: 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합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 징수금액	54,231	21,086	7,840	5,662	11,596	100,415
• 비율(%)	54.0	21.0	7.8	5.6	11.6	100.0
• 합계(억원, %)	75,317 (75.0)		13,502 (13.4)		11,596 (11.6)	

<중앙정부 2004년도 사용내역>

분 야	금액(억원)	비 중(%)	
산업 · 정보/에너지	산 업	11	0.1
	에너지	21,800	28.9
	정 보	2,232	2.9
	소 계	24,043	31.9
보증 · 금융	보 증	8,542	11.3
	금 융	6,987	9.3
	소 계	15,529	20.6
환 경	11,406	15.2	
보건 · 의료	8,061	10.7	
기 타	16,278	21.6	
합 계	75,317	100.0	

<지방자치단체 2004년도 사용내역>

분 야	금액(억원)	비 중(%)	
상하수도 시설관리	상수도	3,454	25.6
	하수도	4,733	35.0
	소 계	8,187	60.6
교 통	교통시설	1,116	8.3
	지방도시교통사업	1,248	9.2
	소 계	2,364	17.5
학교용지 조성	1,908	14.1	
기 타	1,043	7.8	
합 계	13,502	100.0	

〈공단 등 2004년도 사용내역〉

(단위: 억원)

부담금명		금액(억원)	귀속기관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1,362	대한손해보험협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1,050	개별 집단에너지사업자
연초경작지원등의사업을 위한 출연금		525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252	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181	환경시설관리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105	한국화재보험협회
해양오염방지분담금		58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11	해당 관광단지(보문/중문)
쓰레기유발부담금		11	해당 도매시장(서울, 구리, 강릉)
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7	개별회원제골프장운영자(수수료, 부가세 등)
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6,958	일정기간예치후 대부분 환급
	골재채취복구예치금	595	
	농지복구비용예치금	298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135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43	
	원상회복예치금	5	
합 계		11,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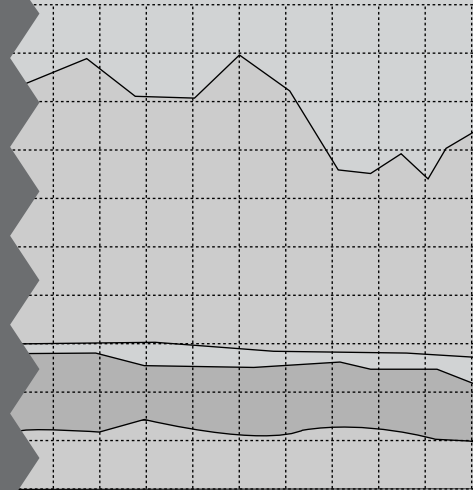
재정통계

• 상속세 Ⅱ편

• 증여세 Ⅰ편

1. 증여세율의 변천
2. 증여세 예산 및 징수
3. 증여세 부과
4. 증여재산가액의 계급별 수증자수, 재산가액 및 증여세 부과
5.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6.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7. 증여세 소송사건

• 기타세 Ⅰ편



1. 증여세율의 변천

(단위: %)

과 세	67. 11. 29 서울	74. 12. 21 서울	79. 12. 28 서울	81. 12. 31 서울	88. 12. 26 서울	90. 12. 31 서울	94. 1. 1 서울	96. 1. 1 서울	97. 1. 1 서울	2001. 1. 1 서울
300천원 이하	10	10								
300천원 초과	15	15								
500천원 이하			7	7						
500천원 초과		20	11	11						
1,000천원 초과	20	25	15	15						
1,500천원 이하					5					
1,500천원 초과										
3,000천원 초과	30	30	19	19	10					
5,000천원 초과		35	23	13	15					
7,000천원 초과	40	40	27	27						
10,000천원 이하						15				
10,000천원 초과		45	32	32	20	25				
13,000천원 초과			37	37						
15,000천원 초과		50								
19,000천원 초과			42	42						
20,000천원 이하							15	10		
20,000천원 초과	50	55					25	20		
25,000천원 초과			47	47						
30,000천원 초과		60			30					
35,000천원 초과			52	52						
50,000천원 초과	60	65	57	57						
60,000천원 초과					40					
90,000천원 초과						35				
100,000천원 이하									10	10
100,000천원 초과		70	62	62	50				20	20
150,000천원 초과							35	30		
200,000천원 초과	70	75	67	67	60					
250,000천원 초과						45				
300,000천원 초과							45	40		
500,000천원 초과						60	55	40	30	30
1,000,000천원 초과									40	40
3,000,000천원 초과										50
5,000,000천원 초과									45	

2. 증여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부과액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51	86	113	73	0	13	170.4	143.9
1966	237	402	522	331	0	71	169.5	139.5
1967	355	383	484	328	0	55	108.0	92.4
1968	417	533	636	417	6	109	127.8	100.1
1969	484	548	633	463	6	79	113.2	95.6
1970	561	826	1,000	631	15	181	147.3	112.4
1971	797	1,104	1,342	931	13	160	138.5	116.8
1972	789	718	919	573	32	113	91.0	72.6
1973	856	1,100	1,237	951	8	141	128.5	111.1
1974	1,087	1,263	1,394	1,224	2	38	116.2	112.6
1975	3,135	6,688	10,221	6,561	4	123	213.3	209.3
1976	3,664	4,372	2,539	4,218	5	150	119.3	115.1
1977	10,605	6,101	7,370	5,824	32	245	57.5	54.9
1978	13,299	5,334	5,755	4,944	27	363	40.1	37.2
1979	9,573	4,585	4,309	4,343	49	193	47.9	45.4
1980	9,311	7,204	7,841	6,710	33	460	77.4	72.1
1981	11,859	17,295	19,884	14,240	299	2,756	145.8	120.1
1982	13,532	21,607	21,004	17,565	396	3,646	159.7	129.8
1983	15,643	32,335	30,976	24,555	438	7,342	206.7	157.0
1984	24,383	35,185	36,465	27,119	498	7,568	144.3	111.2
1985	26,924	42,486	42,873	28,566	1,055	12,865	157.8	106.1
1986	39,305	43,204	43,602	30,987	820	11,396	109.9	78.8
1987	30,818	52,870	54,302	36,971	875	15,024	171.6	120.0
1988	51,411	98,427	107,232	73,253	2,199	22,975	191.5	142.5
1989	69,312	131,313	164,005	103,499	3,451	24,363	189.5	149.3
1990	109,029	267,812	339,682	224,900	1,224	41,688	245.6	206.3
1991	221,437	267,676	293,350	221,829	287	45,560	120.9	100.2
1992	237,698	311,482	398,220	258,243	428	52,811	131.0	108.6
1993	414,447	387,221	370,922	320,830	2,874	63,517	93.4	77.4
1994	342,000	468,874	381,473	383,850	11,747	73,277	137.1	112.2
1995	438,400	533,725	448,147	423,730	14,084	95,911	121.7	96.7
1996	511,900	490,455	430,068	400,757	10,285	79,413	95.8	78.3
1997	542,000	781,631	741,176	556,487	14,714	210,430	144.2	102.7
1998	414,000	514,093	621,983	370,143	32,042	111,908	124.2	89.4
1999	439,166	589,358	539,355	420,506	62,359	106,493	134.2	95.8
2000	481,500	627,706	583,998	540,162	21,042	66,502	130.4	112.2
2001	689,100	670,105	654,135	518,437	45,603	106,065	97.2	75.2
2002	479,300	583,548	656,930	458,344	54,308	70,896	121.8	95.6
2003	441,800	944,877	958,051	829,756	51,027	64,094	213.9	187.8

주: 1979~1981년 예산액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한 것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증여세 부과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인원	증여재 산가액	재차증여가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총결정 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65	8,355	1,531	53	14	8,293	414	8,355	1,131	113	3	-	110
1966	12,390	4,032	76	64	12,291	614	12,390	3,482	522	50	-	471
1967	6,536	3,469	122	414	6,403	320	6,536	3,562	648	164	-	484
1968	6,467	4,391	155	328	6,287	584	6,467	4,135	716	80	-	636
1969	3,702	4,188	159	668	3,450	1,014	3,702	3,841	832	199	-	633
1970	3,652	5,882	146	906	3,379	1,549	3,652	5,239	1,306	306	-	1,000
1971	4,193	7,685	87	476	3,822	1,862	4,193	6,299	1,659	320	-	1,342
1972	3,323	6,564	68	258	2,949	2,077	3,323	4,745	1,102	183	-	919
1973	2,107	6,750	92	1,060	1,839	2,232	2,107	5,578	1,749	153	-	1,237
1974	2,600	8,028	68	395	1,786	2,809	2,600	5,614	1,559	165	-	1,394
1975	8,173	35,077	248	2,206	4,700	6,442	8,173	30,840	11,142	921	-	10,221
1976	6,343	15,971	73	358	4,748	6,455	6,343	9,874	2,682	144	-	2,539
1977	10,929	30,237	137	6,948	7,221	10,261	10,929	26,924	12,105	4,735	-	7,370
1978	14,742	30,544	180	922	7,787	11,369	14,742	20,098	6,414	660	-	5,155
1979	19,536	36,815	64	165	15,175	19,821	19,536	17,160	4,502	193	-	4,309
1980	20,052	37,384	105	1,511	7,279	9,867	20,052	29,027	8,790	948	-	7,841
1981	28,411	77,374	128	2,385	11,520	16,970	28,411	62,790	21,454	1,570	-	19,884
1982	29,489	97,969	110	1,467	16,088	23,182	29,489	76,253	22,122	1,118	-	21,004
1983	38,326	146,292	172	13,693	21,015	42,780	38,326	117,204	40,922	9,946	-	30,976
1984	33,937	137,778	93	16,269	19,256	29,376	33,937	124,672	47,594	12,445	1,317	36,465
1985	27,849	152,395	73	6,894	22,053	29,109	27,849	130,180	46,731	5,749	1,892	42,873
1986	26,156	149,324	152	9,950	19,062	25,892	26,156	133,381	48,931	6,932	1,603	43,602
1987	31,907	164,686	189	22,738	18,838	24,965	31,907	162,459	63,479	12,940	3,764	54,302
1988	22,470	262,584	-	13,191	-	23,959	22,470	252,180	108,916	8,308	6,624	107,232
1989	22,587	412,327	-	42,214	-	27,389	22,587	432,152	192,730	38,043	9,318	164,005
1990	29,120	929,625	-	26,894	-	47,731	29,120	908,788	353,791	28,623	14,514	339,682
1991	28,607	826,056	-	46,344	-	43,805	28,607	828,595	311,063	41,519	23,806	293,350
1992	28,357	1,266,175	-	123,629	-	119,644	28,357	1,270,160	478,198	117,616	37,638	398,220
1993	23,630	1,117,118	-	239,842	-	129,559	23,630	1,227,401	459,236	139,053	50,739	370,922
1994	29,285	1,285,450	-	191,289	-	224,840	29,285	1,251,899	430,606	120,126	70,993	381,473
1995	35,555	1,748,354	-	223,023	-	405,772	35,555	1,565,605	486,517	117,839	79,469	448,147
1996	31,157	1,848,859	-	263,938	-	490,880	31,157	1,621,917	503,149	154,386	81,305	430,068
1997	34,150	3,206,427	-	1,377,397	-	940,095	34,150	3,643,729	1,248,559	646,960	139,577	741,176
1998	48,639	3,975,146	-	818,329	-	1,503,744	48,639	3,289,731	824,024	299,012	96,971	621,983
1999	36,397	2,644,802	-	1,105,320	-	707,347	36,397	3,042,775	819,763	380,289	99,881	539,355
2000	37,165	3,164,580	-	2,583,087	-	808,240	-	4,939,427	1,549,591	1,023,361	57,768	583,998
2001	49,645	3,692,653	-	2,840,573	-	1,000,584	-	5,532,642	1,591,307	1,016,123	78,951	654,135
2002	55,049	4,166,031	-	1,559,594	-	1,290,139	-	4,435,486	1,072,792	504,921	89,059	656,930
2003	54,441	5,383,646	-	2,279,849	-	1,506,662	-	6,156,833	1,586,499	717,718	89,270	958,05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증여재산가액의 계급별 수증자수, 재산가액 및 증여세 부과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계 급	합 계		과 세			과세미달	
		인원	재산가액	인원	재산가액	총결정세액	인원	재산가액
1995	합 계	190,346	3,450,069	35,555	1,971,377	448,147	154,824	1,478,692
	5천만원 이하	180,517	1,960,277	26,428	534,022	64,723	154,089	1,426,255
	5천만원 초과	6,583	466,082	5,871	416,539	66,274	712	49,543
	1억원 초과	2,466	446,484	2,476	443,590	107,289	23	2,894
	3억원 초과	456	181,965	456	181,965	56,653	-	-
	5억원 초과	227	166,267	227	166,267	66,156	-	-
	10억원 초과	70	91,704	70	91,704	35,932	-	-
	20억원 초과	10	23,745	10	23,745	13,462	-	-
	30억원 초과	9	32,741	9	32,741	12,502	-	-
50억원 초과	8	80,804	8	80,804	25,156	-	-	
1996	합 계	134,165	3,381,756	31,157	2,112,797	430,068	103,008	1,268,959
	5천만원 이하	121,858	1,579,407	20,610	434,706	42,298	101,248	1,144,701
	5천만원 초과	8,176	590,965	6,542	484,522	66,252	1,634	106,443
	1억원 초과	2,949	479,869	2,823	462,054	100,924	126	17,815
	3억원 초과	812	253,889	812	253,889	65,696	-	-
	5억원 초과	235	165,201	235	165,201	52,275	-	-
	10억원 초과	87	119,705	87	119,705	44,423	-	-
	20억원 초과	15	37,537	15	37,537	14,133	-	-
	30억원 초과	21	73,318	21	73,318	27,892	-	-
50억원 초과	12	81,865	12	81,865	16,175	-	-	
1997	합 계	169,967	7,334,254	34,150	4,583,824	741,176	135,817	2,750,430
	5천만원 이하	135,139	1,929,499	19,076	482,298	41,808	116,063	1,447,201
	5천만원 초과	24,712	1,507,101	8,576	650,596	76,674	16,136	856,505
	1억원 초과	8,288	1,256,889	4,720	828,404	108,058	3,568	428,485
	3억원 초과	1,107	444,467	1,057	426,228	64,698	50	18,239
	5억원 초과	487	352,443	487	352,443	85,794	-	-
	10억원 초과	120	166,319	120	166,319	44,855	-	-
	20억원 초과	35	84,778	35	84,778	28,583	-	-
	30억원 초과	29	103,160	29	103,160	26,417	-	-
50억원 초과	50	1,489,598	50	1,489,598	264,289	-	-	

4. 증여재산가액의 계급별 수증자수, 재산가액 및 증여세 부과(계속)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계 급	합 계		과 세			과세미달	
		인원	재산가액	인원	재산가액	총결정세액	인원	재산가액
1998	합 계	175,008	8,577,963	48,639	4,793,475	621,983	126,369	3,784,487
	5천만원 이하	140,062	2,351,611	28,983	776,248	57,531	111,079	1,575,362
	5천만원 초과	20,649	1,557,993	11,233	828,454	62,380	9,416	729,539
	1억원 초과	10,722	1,973,538	5,867	1,036,071	119,238	4,855	937,467
	3억원 초과	2,248	1,026,917	1,265	529,225	74,209	983	497,692
	5억원 초과	916	659,228	883	625,997	89,023	33	33,231
	10억원 초과	284	410,961	281	399,765	98,338	3	11,196
	20억원 초과	60	133,770	60	133,770	44,612	-	-
	30억원 초과	33	133,906	33	133,906	26,939	-	-
	50억원 초과	34	330,039	34	330,039	49,713	-	-
1999	합 계	122,736	6,563,379	36,397	3,750,122	539,355	86,339	2,813,257
	5천만원 이하	96,549	1,474,918	24,138	476,723	24,616	72,411	998,195
	5천만원 초과	13,676	957,649	6,156	432,860	30,172	7,520	524,789
	1억원 초과	9,378	1,536,510	4,074	674,143	79,390	5,304	862,367
	3억원 초과	1,853	725,639	764	307,793	54,031	1,089	417,846
	5억원 초과	810	543,994	797	536,456	82,325	13	7,538
	10억원 초과	289	402,124	287	399,602	79,678	2	2,522
	20억원 초과	68	172,308	68	172,308	37,564	-	-
	30억원 초과	62	251,614	62	251,614	57,797	-	-
	50억원 초과	51	498,623	51	498,623	93,782	-	-
2000	합 계	87,175	7,462,210	37,165	5,747,667	583,998	50,010	1,714,543
	5천만원 이하	65,055	1,023,136	23,258	445,582	24,584	41,797	577,554
	5천만원 초과	10,851	771,299	6,524	466,512	30,012	4,327	304,787
	1억원 초과	7,689	1,279,030	4,610	778,480	75,787	3,079	500,550
	3억원 초과	1,848	724,645	1,079	422,584	54,572	769	302,061
	5억원 초과	1,136	784,177	1,104	764,145	89,548	32	20,032
	10억원 초과	372	513,747	367	506,631	80,479	5	7,116
	20억원 초과	76	190,533	75	188,090	39,193	1	2,443
	30억원 초과	73	299,738	73	299,738	51,493	-	-
	50억원 초과	75	1,875,905	75	1,875,905	138,330	-	-

4. 증여재산가액의 계급별 수증자수, 재산가액 및 증여세 부과(계속)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계 급	합 계		과 세			과세미달	
		인원	재산가액	인원	재산가액	총결정세액	인원	재산가액
2001	합 계	102,954	7,869,016	49,645	6,533,226	654,135	53,309	1,335,790
	5천만원 이하	81,356	1,126,918	32,444	574,922	28,553	48,912	551,996
	5천만원 초과	10,360	739,234	8,567	610,972	36,589	1,793	128,262
	1억원 초과	7,318	1,216,357	5,568	912,969	81,962	1,750	303,388
	3억원 초과	2,014	796,508	1,186	466,215	57,269	828	330,293
	5억원 초과	1,180	795,974	1,160	783,100	89,937	20	12,874
	10억원 초과	421	572,219	415	563,242	78,985	6	8,977
	20억원 초과	85	210,353	85	210,353	37,784	-	-
	30억원 초과	76	290,335	76	290,335	44,644	-	-
	50억원 초과	144	2,121,118	144	2,121,118	198,412	-	-
2002	합 계	130,097	7,675,106	55,049	5,725,625	656,930	75,048	1,949,481
	5천만원 이하	103,061	1,578,280	34,551	766,581	34,969	68,510	811,699
	5천만원 초과	13,399	941,527	10,645	746,453	43,168	2,754	195,074
	1억원 초과	9,461	1,548,798	6,871	1,098,440	96,424	2,590	450,358
	3억원 초과	2,401	949,991	1,251	491,684	62,307	1,150	458,307
	5억원 초과	1,221	827,235	1,182	802,524	98,260	39	24,711
	10억원 초과	375	508,367	371	503,075	87,044	4	5,292
	20억원 초과	82	217,856	82	217,856	46,883	-	-
	30억원 초과	44	185,742	43	181,702	45,756	1	4,040
	50억원 초과	53	917,310	53	917,310	142,119	-	-
2003	합 계	101,976	9,728,961	54,441	7,663,495	958,051	47,535	2,065,466
	5천만원 이하	72,120	1,108,646	32,192	594,214	31,675	39,928	514,432
	5천만원 초과	12,293	895,172	9,909	722,736	45,279	2,384	172,436
	1억원 초과	11,171	1,915,103	7,668	1,274,725	118,463	3,503	640,378
	3억원 초과	3,347	1,343,861	1,709	669,575	80,389	1,638	674,286
	5억원 초과	2,077	1,386,678	2,005	1,338,035	142,141	72	48,643
	10억원 초과	651	907,238	645	900,163	141,598	6	7,075
	20억원 초과	147	352,512	143	344,296	80,192	4	8,216
	30억원 초과	67	254,894	67	254,894	60,152	-	-
	50억원 초과	103	1,564,857	103	1,564,857	258,162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5	355	17	338	337	30	172	135	6	18
1966	480	18	462	441	50	257	134	7	39
1967	367	39	328	316	30	183	103	10	51
1968	493	51	442	460	34	292	134	35	33
1969	323	33	290	293	25	170	98	30	30
1970	318	30	288	294	28	193	73	36	24
1971	342	24	318	306	25	191	90	48	36
1972	289	36	253	270	18	223	29	32	19
1973	154	19	135	154	3	110	41	68	-
1974	59	-	59	57	6	25	26	13	2
1975	82	5	77	80	5	46	29	14	2
1976	116	2	114	102	16	60	26	13	14
1977	163	14	149	153	28	68	57	29	10
1978	182	10	172	180	38	76	66	89	2
1979	110	2	108	109	24	57	28	36	1
1980	155	1	154	151	32	55	64	179	4
1981	191	4	187	173	40	86	47	402	18
1982	329	18	311	312	54	161	97	463	17
1983	262	17	245	248	58	131	59	281	14
1984	246	14	232	231	49	137	45	301	15
1985	245	15	230	238	69	149	20	189	7
1986	265	7	258	249	81	150	18	132	16
1987	151	16	135	147	56	82	9	1,069	4
1988	161	4	157	157	44	104	9	127	4
1989	262	4	258	251	56	174	21	2,080	11
1990	205	11	194	195	33	137	25	519	10
1991	254	10	244	242	52	171	19	1,399	12
1992	290	12	278	278	92	157	29	989	12
1993	282	12	270	269	94	154	21	590	13
1994	241	13	228	223	18	167	38	2,270	18
1995	489	18	471	473	67	292	114	3,048	16
1996	379	16	363	364	70	178	116	5,073	15
1997	358	15	343	324	31	148	145	4,634	34
1998	508	34	474	445	17	220	208	2,331	63
1999	406	63	343	363	26	182	155	9,084	43
2000	244	43	201	230	13	121	96	5,629	14
2001	450	14	436	392	15	176	201	7,242	58
2002	421	58	363	372	21	187	164	4,015	49
2003	407	49	358	363	27	188	148	6,700	4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6.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65	9	-	9	9	1	4	4	1	-
1966	25	-	25	24	-	17	7	1	1
1967	28	1	27	27	1	13	13	13	1
1968	80	1	79	69	11	23	35	29	11
1969	48	11	37	40	10	16	14	8	8
1970	48	8	40	44	9	23	12	15	4
1971	38	4	34	36	7	15	14	5	2
1972	80	2	78	77	11	45	21	73	3
1973	40	3	37	37	6	20	11	14	3
1974	38	3	35	36	-	14	22	77	2
1975	322	2	320	309	10	276	23	202	13
1976	86	13	73	77	3	59	15	11	9
1977	100	9	91	87	5	58	24	26	13
1978	220	13	207	207	14	176	17	25	13
1979	97	13	84	85	4	45	36	65	12
1980	102	12	90	80	6	41	33	218	22
1981	184	22	162	134	14	69	51	241	50
1982	273	50	223	230	16	147	67	480	43
1983	318	43	275	278	28	189	61	206	40
1984	264	40	224	233	15	197	21	141	31
1985	359	31	328	319	61	232	26	591	40
1986	414	40	374	376	33	323	20	96	38
1987	295	38	257	269	31	223	15	116	26
1988	450	26	424	362	26	272	64	4,643	88
1989	672	88	584	612	41	521	50	2,551	60
1990	633	60	573	558	31	487	40	1,849	75
1991	766	75	691	702	43	607	52	3,178	64
1992	707	64	643	638	42	518	78	3,373	69
1993	724	69	655	615	54	523	38	1,644	109
1994	874	109	765	790	33	670	87	2,638	84
1995	874	84	790	773	38	668	67	1,790	101
1996	738	101	637	682	36	573	73	1,931	56
1997	647	56	591	574	30	420	124	4,385	73
1998	744	73	671	611	31	358	222	18,148	133
1999	672	133	539	617	17	415	185	18,566	55
2000	200	55	145	182	12	115	55	12,412	18
2001	145	18	127	118	4	71	43	1,698	27
2002	166	27	139	117	2	60	55	5,035	49
2003	166	49	117	143	46	60	37	17,000	2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7. 증여세 소송사건

(단위: 건)

연도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 류 건 수			
	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계	취하	각하	국승	국기일부 패소	국패	기타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973	31	20	11	10	-	-	4	-	2	4	21	-	-	-
1974	32	21	11	13	-	-	4	-	3	6	19	-	-	-
1975	23	19	4	10	-	-	5	-	4	1	13	-	-	-
1976	67	13	54	13	-	-	8	-	4	1	54	-	-	-
1977	80	54	26	36	-	-	6	-	17	13	44	-	-	-
1978	68	44	24	38	-	-	6	-	26	6	30	-	-	-
1979	55	30	25	15	-	-	1	-	12	2	40	-	-	-
1980	43	40	3	29	-	-	5	-	24	-	14	-	-	-
1981	25	14	11	6	-	-	2	-	4	-	19	-	-	-
1982	49	19	30	20	-	-	6	-	13	1	29	-	-	-
1983	74	29	45	33	-	-	12	-	16	5	41	-	-	-
1984	123	41	82	40	-	-	17	-	14	9	83	-	-	-
1985	174	83	91	63	-	-	23	-	35	5	11	-	-	-
1986	231	111	120	53	-	-	17	-	32	4	178	-	-	-
1987	323	178	145	151	-	-	33	-	96	22	172	-	130	42
1988	247	172	75	84	-	-	29	-	33	22	183	-	81	102
1989	356	183	173	128	-	-	62	-	66	-	228	-	178	50
1990	483	228	255	134	-	-	69	-	65	-	349	-	274	75
1991	563	349	214	179	-	-	75	-	104	-	384	-	268	116
1992	635	368	267	277	-	-	97	-	180	-	358	-	252	106
1993	559	365	194	288	-	-	111	-	177	-	272	-	200	72
1994	542	272	270	209	-	-	91	-	118	-	333	-	296	37
1995	596	333	263	242	-	-	114	-	128	-	354	-	282	72
1996	550	354	196	253	-	-	137	-	116	-	297	-	236	61
1997	452	297	155	246	-	-	161	-	85	-	206	-	162	44
1998	342	206	136	172	-	-	138	-	34	-	170	79	70	21
1999	328	170	158	116	-	-	101	-	15	-	212	143	42	27
2000	387	212	175	125	-	-	115	-	10	-	262	162	64	36
2001	407	262	145	139	42	3	78	7	9	-	268	160	82	26
2002	383	268	115	152	45	2	86	9	10	-	231	102	94	35
2003	364	231	133	149	50	3	76	7	13	-	215	111	73	3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집값 대책, 보유세제부터 바로잡아라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탓도 크다. 보유세제가 제대로만 댔어도 주택 가수요는 한층 줄었을 터이다.

보유세 강화는 종부세 도입과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두 축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종부세는 지난해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 당정협의를 입법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 주택을 보면, 과세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물러섰고,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로 조정됐으며, 세금이 전년보다 50% 넘게 늘어나지는 못하게 하는 상한선도 씌워졌다. 사람별로 과세하다 보니, 부부가 나눠 가지면 18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피해간다. 재산세 역시 조세저항을 감안해 인상 상한선을 50%

로 정해줬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율을 50% 더 낮춰 과표 현실화란 말이 무색해졌다. 여당뿐 아니라 경제관료 책임도 크다. 당정협의에서 당을 설득하기보다 기다렸다는 듯 물러선 것은 속내를 의심케 하는 행태였다. 지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것도 안이했다.

정부가 종부세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누더기가 되기 전 애초 안을 되살리길 촉구한다. 정치권도 더는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 누가 자신들을 국회로 보내줬는지 생각해야 한다. 대다수가 서민·중산층이지 일부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아니잖은가. 물론 보유세 강화가 집값 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 동기를 줄이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주는 등 서민의 조세저항을 빙자한 반대를 잠재울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1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부담금 과감히 정비해야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가짓수도 102개로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담금 천국'임을 말해준다.

부담금은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지만 액수가 조세수입의 10%를 육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준수세 성격의 부담금이 문제가 될 때마다 정부는 이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담금에 집착하는 것은 우선 조세저항이 없기 때문이다. 관계 기업은 사업을 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설과 폐지가 비교적 자유롭고 징수가 쉬워 필요한 때는 언제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부담금도 징수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된다지만 중복 부과나 모호한

산정기준 등 시정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

요즘 기업들은 부담금이 아니라도 각종 기부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좋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금은 기업의 투자 및 개인의 소비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부담금 증가에 대해 불멘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이제 부담금은 더 이상 '정비하겠다'는 립 서비스만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부담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까지 제정했으나 부담금 징수액과 가지는 거꾸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도 정부가 부담금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 신설을 억제하고 가능한 한 조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합리한 것은 없애고 기업과 개인이 납득할 수 있는 부담금만 남겨야 한다. 징수요율 등 부과요건도 법률로 규정하고 징수한 재원도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2005년 6월 29일자 서울경제신문 사설

健保확대도 좋지만 국민부담도 생각해야

정부·여당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크게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암과 중증의 심장·뇌질환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9~10개의 질병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이고 내년부터 식사와 3~4인용 병실에도 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낮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평가한다. 각종 암과 심장·뇌질환 등은 병의 성격상 대부분 큰 수술을 하거나 오랫동안 입원·요양해야 하는 등 장기치료를 요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런 환자가 있는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가정생활이 파탄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병을 더 키우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진다. 중증 질환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이 늘어난다면 이런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원조달 문제다. 건강보험 흑자를 활용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난 속에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증가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건보료 인상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과잉진료 증가 부작용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꼭 받지않아도 될 진료나 치료를 받으려는 욕구가 커지고 병원 측도 수익성을 감안해 과다진료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려되는 것이다. 과잉진료는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과잉의료·부담청구 방지, 지역건보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과약과 보험료 징수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이 보험료 인상에 선행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 징수가 쉽다는 점에 끌려 직장인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 직장 가입자들을 다시 '병'으로 만들어서는 건강보험 개혁안의 취지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2005년 6월 28일자 서울경제신문 사설

부동산 대책, 또 세금 규제인가

정부가 또다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참여정부 들어 굵직한 대책으로는 벌써 여섯 번째다. 하지만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기준시가 재조정,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당국자들이 들먹이는 대책은 모두 한 차례 이상 써먹었다가 실패한 것들이다. 명분은 투기성 가수요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수요 억제보다 공급 위축만 초래했다. 가수요에 실수요가 추격 매수하면서 집값 폭등세를 확산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래허가제와 부동산관련 대출총액제 도입, 공영개발 확대 등 또다른 강경책이 거론되고 있으니 우려가 앞선다.

정부도 공급 확대야말로 최상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며 서울 강남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신도시를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로 대응하되 단기적으로 세금과 규제를 통해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강남에 대해서는 재건축 규제라는 기본틀을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심 끝에 정한 정책 방향이겠지만 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잡히지 않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 같다. 최근의 집값 폭등은 정부의 규제책이 입지조건

과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식칼 대신 도끼를 휘둘렀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이다.

처방의 단위가 높을수록 부작용도 크다는 사실은 지난 2년여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D+'를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강남에 대한 발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재건축을 통해 자체 공급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되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2005년 6월 13일자 서울신문 사설

방만한 기금 운영 바로 잡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등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허탈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한푼이 아쉬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걷어 간 돈을 쓰지도 않고 재어 놓거나, 눈먼 돈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다.

대량실업 등 고용상대 불안에 대비해 근로자와 기업으로부터 걷는 고용보험기금은 9조원 가까이 공간에 쌓여 있다. 지난해 지출액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외환위기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해 보험료를 크게 올려놓고 그대로 유지한 때문이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고용보험료도 낮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외면한 것이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런데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자 대상에서 누락돼 제때 혜택을 보지 못한 근로자가 236만명에 이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산재보험의 맹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환자의 요양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산재환자의 23%가 2년 이상 요양하는 등 장기환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간 내내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므로 구태여 무리하면서 일하려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노동부가 5대 기금의 관리를 맡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운용위원회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감사원 지적대로 기금이 턱없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보험료를 결정방식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아주는 소중한 기금이다. 자기 돈

처럼 투명하고 철저한 운용과 관리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더불어 필요한 만큼 거둬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게 기금운용의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5년 6월 9일자 한국일보 사설

세금 같은 기금운용이 방만해서야

노동부 소관의 다섯 가지 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과다하게 거두어 노동자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매년 1조여원씩 남아 2004년 말 적립액이 8조 5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 지출액의 3.6배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방치해 기금이 새 나가는 문제가 주로 제기됐다. 산재환자의 23%가 2년 넘는 장기 환자라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언론에서도 셀 수 없이 제기했다. 그런데도 별반 고쳐지지 않았다면, 노동부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금 재원은 노동자 급여나 기업에서 거둔, 세금 같은 돈이다. 너무 많이 걷히거나, 도덕적 해이를 내버려 뒀 낭비했다면 심각한 일이다. 물론 이런 지적들에 피상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고용보험기금이

쌓였다고 반드시 많이 건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도 시행 초기엔 적립금이 쌓이게 마련이고, 실업급여 수준이 선진국보다 열악해 지출이 적었던 탓도 있다. 건강보험 환자에 건위 산재환자의 요양 기간이 길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운용이 허술했던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를 고치겠다고 한 것은 뒤늦었지만 옳은 자세다. 다만 시늬이나 뺨질에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부 소관 기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제도로서, 더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부담도 커져야 하는데,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조세저항에 버금가는 반발을 산다.

2005년 6월 9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마구 거둬 펄펄 쓴 고용보험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노동부 소관 5대 보험의 운영 실태를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기업이나 근로자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거둬들여 마치 눈 먼 돈처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돕거나 직업능

력개발, 고용안정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성격상 실업률에 따라 보험료율을 탄력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외환위기 직후 실업률이 6%를 웃돌던 시기에 책정된 보험료율을 실업률이 3%대로 떨어진 현재까지 낮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금 적립액이 지난해 말 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지출 규모 2조 3,741억원의 4배에 육박해 적정 규모로 여겨지는 2배 수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가 됐다.

돈이 남아돌다 보니 직업체험전 시관 건립이나 모성보호사업 등 고용보험 취지와 직접 관련없는 사업에 수천억원의 돈이 물쓰듯 쓰여졌다. 그러면서도 정작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쓰지 않아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않음으로써 필요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한 근로자가 23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산재보험도 흥청망청 쓰여지는 마찬가지다. 산재요양 환자의 23%인 1만 4,000여명이 2년 이상 장기 요양자이며, 이들 중 10년 이상 장기환자도 2,000여명에 달할 만큼 운영이 방만하다. 이렇고도 적자를 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내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몫이 훨씬 더 크다. 가뜰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 상

황에서 기업에는 큰 부담이지만 국제나 다름없어 안 낼 도리가 없다. 그런데도 과다징수가 방치되고 쓸 데 안 쓸 데 가리지 않고 마구 쓰여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적자가 발생하면 그대로 기업부담을 늘려 메울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은 지난해 1,418억원 적자를 보았으며 지난해 전체 임금 총액의 1.48%이던 산재보험료율이 올해 1.62%로 높아졌다.

그러잖아도 기업과 근로자는 조세와 각종 사회부담금에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다. 고용보험 등의 마구잡이 징수와 방만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운영체계를 관할하는 조직의 일대 쇄신이 시급하다고 본다.

2005년 6월 10일자 매일경제신문 사설

무너지는 공적연금 지켜만 볼 건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434조원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을 미래에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야 하는 돈으로, 434조원은 4대 연금이 향후 19년간 가입자에게 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를 받기만 해야 메울 수 있는 규모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부족액이 52조원이나 늘었다는 것은 공적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사회보험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연금개혁의 당위성뿐 아니라 연금간의 형평성도 제기했다.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연간 보험료 수입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2배, 공무원연금은 26배, 사학연금은 22배로, 17배인 국민연금보다 더 심하다.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의 연금을 보장받는 공무원연금 등의 적지분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다. 각 연금간의 형평성부터 확보해야 할 이유다.

공적연금의 부실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채를 떠넘긴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는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급여 수준은 5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여야의 입장 차이로 3년째 걸돌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에 대해 유권자 표를 의식한 여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금개혁은 선진국에서도 정권이 뒤바뀌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인기 없는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연금개혁이 임기응변식의 땀질 처방이어서는

안된다. 정부나 여당안보다 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 후년에는 대선이 있으므로 올해가 공적연금 개혁의 적기이다.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들의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때이다.

2005년 6월 27일자 국민일보 사설